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횡단·융합·창신의 동아시아 개념사

# 2023 학술 심포지엄

## 경계에 선 여성들

일시\_ 2023년 6월 30일 (금) 14:00~18:00

장소\_ 한림대학교 산학협력관 3층 22301호

주최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아시아문화연구소

후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횡단·융합·창신의 동아시아 개념사

## 2023 학술 심포지엄

# 경계에 선 여성들

주최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아시아문화연구소

후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일정

|             |                                                                         |                          |
|-------------|-------------------------------------------------------------------------|--------------------------|
| 14:00~14:10 | · <b>개회 및 주제 발표</b>                                                     | <b>사회 :</b> 이경구(한림대)     |
| 14:10~14:50 | · <b>제1발표</b><br><br>식민지, 연애 그리고 환대 받을 권리<br>: 전후 재한 일본인 처의 삶과 재현을 중심으로 | 장세진(한림대)                 |
|             | — 토론                                                                    | 조은애(동국대)                 |
| 14:50~15:30 | · <b>제2발표</b><br><br>전후 일본의 여성노동과 사회적 인식<br>: 다니노 세쓰의 기록을 중심으로          | 김경옥(한림대)                 |
|             | — 토론                                                                    | 예지숙(숙명여대)                |
| 15:30~15:40 | · <b>휴식</b>                                                             |                          |
| 15:40~16:20 | · <b>제3발표</b><br><br>중국 첫 번째 여성 대사(大使) 덩쉬에송(丁雪松)<br>의 삶과 중국 혁명의 일면      | 장수지(이화여대)                |
|             | — 토론                                                                    | 윤숙현(전남대)                 |
| 16:20~17:00 | · <b>제4발표</b><br><br>납북귀환어부 가족에게 씌워진 굴레와<br>긴 헤어내기                      | 김아람(한림대)                 |
|             | — 토론                                                                    | 이준희(연세대)                 |
| 17:00~17:10 | · <b>휴식</b>                                                             |                          |
| 17:10~17:20 | · <b>연구윤리교육</b>                                                         | 학술지 편집위원장                |
| 17:20~18:00 | · <b>종합토론</b>                                                           | <b>사회 :</b> 장미현(여성인권진흥원)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목 차

---

|        |                                                    |                                      |    |
|--------|----------------------------------------------------|--------------------------------------|----|
| · 제1발표 | 식민지, 연애 그리고 환대 받을 권리<br>: 전후 재한 일본인 처의 삶과 재현을 중심으로 | 장세진(한림대)                             | 01 |
| · 제2발표 | 전후 일본의 여성노동과 사회적 인식<br>: 다니노 세쓰의 기록을 중심으로          | 김경옥(한림대)                             | 19 |
| · 제3발표 | 중국 첫 번째 여성 대사(大使) 덩쉬에송(丁雪松)의<br>삶과 중국 혁명의 일면       | 한림과학원<br>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br>장수지(이화여대) | 35 |
| · 제4발표 | 납북귀환어부 가족에게 씌워진 굴레와 긴 헤어내기                         | 김아람(한림대)                             | 49 |
| · 토론문  |                                                    |                                      | 67 |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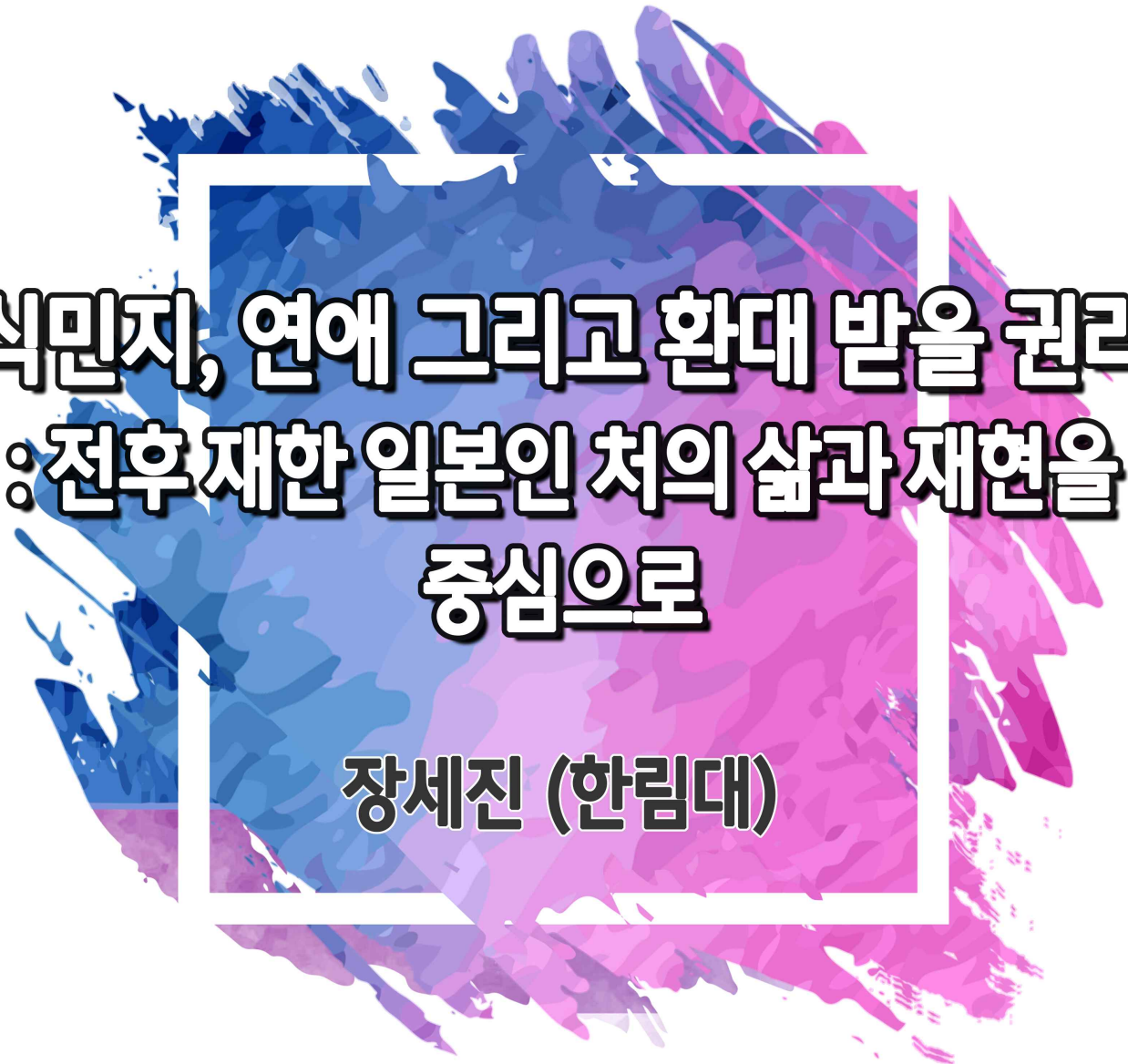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제1발표



**식민지, 연애 그리고 환대 받을 권리  
: 전후 재한 일본인 처의 삶과 재현을  
중심으로**

**장세진 (한림대)**



# 식민지, 연애 그리고 환대받을 권리

## - 전후 재한 일본인 처의 삶과 재현을 중심으로 -

장세진(한림대)

### 1. 제국의 붕괴와 일본인 처의 잔류

식민지 시기 조선인과 결혼한 ‘일본인 처’라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이 주제를 한국의 대표 화가 이중섭(1916~1956)의 개인사로부터 시작해보자. 이중섭의 아내 야마모토 마사코(山本方子)가 한국전쟁의 와중에 두 아들과 도일한 이후, 평생 서로를 그리워해야 했던 이 유명한 생별(生別)의 이야기는 한 천재 예술가의 불우했던 가족사 정도로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이중섭 가족의 강제 이산은 일본 제국의 패망 이후 발생한 동아시아 차원의 전후사 영역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구(舊)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관계사 혹은 동아시아 특유의 ‘탈식민화’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제국 출신자의 귀환(ひきあげ, 히키아게)에 관한 문제인 셈이다. 그러나 귀환과 잔류 사이에서 끊임없이 유동했던 전후 일본인 처의 존재는 패전 직후 일본 정부가 개입해야 할 정책적 사안으로 애초 인식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제국 일본의 시선에서 ‘일본인 처(日本人妻)’로 명명된 이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여성들이었을까. 일단, 이 어휘는 1890년 제국헌법 시행 당시의 일본 영토를 넘어 제국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획득한 지역, 예컨대 대만, 화태(樺太, 사할린 남부), 조선과 같이 이른바 ‘외지(外地)’로 불린 식민지 출신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다.<sup>1)</sup> 제국의 붕괴를 전후하여 이 여성들은 식민지에 거주하던 일본인 일반과는 역방향으로 이동했으며 혹은 이동 시기를 뒤로 좀 더 유예하거나 아예 포기한 바 있다. 가령, 식민지에서 남편 및 자녀들과 이미 상당 기간 정착 생활을 영위했던 일본 여성들의 경우, 동포 일본인들의 필사적인 귀환 행렬에서 이탈하여 가족과 함께 잔류했다. 한편, 패전을 즈음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또 다른 유형의 아내들은 이제 ‘해방된’ 고국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남편을 따라 구(舊) 식민지 행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요컨대, 쇄도하는 귀환자들의 행렬을 거슬러, 그녀들은 패전 국민으로서 당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열도 밖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이제는 별개의 나라가 된 구(舊) 식민지 영토에 잔류했다.

알려진 대로, 2차대전 패배 직후 일본 정부는 점령지나 식민지에 거주하고 있던 민간 일본인의 송환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귀환이 아니라 가능

1) 이에 반하여 ‘내지’는 혼슈(本州), 시코쿠(四國), 규슈(九州), 홋카이도(北海島), 오키나와(沖縄), 오가사와라(小笠原) 군도를 가리켰다. ‘내지’와 ‘외지’는 당시에 단순히 제국의 영토를 지시하는 기능을 넘어 위계에 따른 차별적 의미를 함축했다. 이정선, 『동화와 배제: 일제의 동화정책과 내선결혼』, 역사비평사, 2017, 17쪽.

한 ‘그 곳에서 버티라’는 취지의 현지 정착을 요구한 바 있다.<sup>2)</sup> 열도 밖 현지 상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러한 판단은 일시적 착오라기보다는 실은 일관된 태도에 가까웠다. 전후 폐허로 피폐해진 일본 본토에 약 350만 명에 달했던 해외 일본인들의 유입을 가능한 최소화시키려는 방침이었던 셈이다. 물론, 이 조치는 일본을 점령한 미군(GHQ)의 동아시아 정세 판단에 의해 이내 수정되기는 했지만, 귀환자들이 본토 재정착 이후에도 국가로부터 버려졌다는 강렬한 기민(棄民)의 기억과 위화감을 계속 간직하게 만든 원천이기도 했다.<sup>3)</sup>

전후 일본인 처의 문제를 일본 정부의 탈식민화 정책 속에서 포착한 현무암(玄武岩)에 따르면, 일본인 아내들이 어떤 사유에서든 다시 모국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면, 그것은 응당 ‘자연된 귀환(引上げ)’이라는 틀 속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했는데, 일본 정부는 고국행을 간절히 바라는 여성들 모두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며,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패전 후 일본 국적에서 일괄적으로 이탈된 구 식민지 출신 남편을 따라 일본인 아내들 역시 국적을 함께 박탈당한 결과였다. 가령, 조선인과 결혼한 여성들은 이른바 ‘조선적(籍) 전(前) 일본부인’이라는 생소한 신분으로 분류되었는데, 이 단어가 행정적으로 뜻하는 바는 과거에는 일본 여성이었지만 현재는 조선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는 의미였다. 따라서 일본인 아내들의 경우,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설령 입국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녀들은 전혀 다른 처우를 받게 될 처지였다. 일본 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귀환자=국민>이 아닌,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귀국자=외국인>이라는, 엄연한 차등적 위계 속에 놓였던 까닭이다.<sup>4)</sup>

이 글에서는 식민지 청년과의 연애 및 결혼으로 인해 모국 귀환이 구조적으로 봉쇄되었던 일본인 아내들, 그리하여 한반도 그 중에서도 특히 남한 지역에 잔류하게 된 여성들을 주요한 논의의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 글은 북한 지역 거주 일본인 아내들의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하겠지만, 이들의 발생적 기원은 남한 지역 아내들의 그것과는 다소 구별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일본인 아내를 둔 조선인 남성이 38선 이북을 거주지로 선택했다면, 그는 항일 무장 투쟁이 체제 정당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신생 공화국에서 아내의 출신을 가능한 숨길 수밖에 없을 터였다. 실제로, 현재 북한 지역에 남아 있는 일본인 처(로 알려진 여성들)의 절대 다수는 식민지 시기 이래의 거주자가 아니다. 그녀들은 1959년 이후 북한과 일본 사이에서 시작된 이른바 ‘귀국 사업’의 일환으로 재일조선인 남편을 따라 북한에 건너간 경우였다. 일본과의 수교가 이루어져 왕래가 곧 자유로와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속에 이주한 그들이었지만, 고국의 부모 형제들을 재회할 수 있을 때까지 북한의 일본인 아내들은 그야말로 장구한 시간을 인내하게 된다.<sup>5)</sup>

2) 이연식, 『조선을 떠나며-1945년 패전을 맞은 일본인들의 최후』, 역사비평사, 2016.

3) 가토 기요후미, 『‘해외인양’ 연구와 포스트제국: 잊혀진 대일본제국의 역사와 만들어진 기억』, 김경옥·김남은·김현아·김혜숙·박신영·서정완·송석원·전성곤 옮김, 소명출판, 2022, 53~54쪽, 88~90쪽.

4) 玄武岩, 「在韓日本人女性の引上げ, 歸国, 残留: 戦後日本歸国者政策の誕生」, 〈ポスト帝国〉の東アジア: 言説・表象・記憶, 青土社, 2022, 2장 참조.

5) 최근 일본에서 발간된 사진작가 하야시 노리코(林典子)의 포토 다큐멘타리 ‘朝鮮に渡った日本人妻: 60年の記憶’는 저자가 2013년 이후 11차례 북한을 방문하여 아직 생존해 있는 고령의 일본



이 글은 일본인 아내들에 관한 일본 측 선행 연구들의 성과를 이어받는 한편, 그녀들이 결국 오랜 세월 거주해온 한국에서의 삶의 양태 및 한국 사회와의 관계성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일본인 처들이 해방 이후 한국의 공론장에서 소환되어 온 다양한 재현의 방식들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기저에 놓인 인식과 시선(frame)의 정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관심사이다. 남북한 일본인 처의 존재를 동시에 거론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에서 생산된 재현의 계보를 선구적으로 제시했던 조은애·박광현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그녀들의 존재를 가장 특징적으로 요약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비/가시화’이다.<sup>6)</sup> 1945년 이후 동아시아 각국에 수립된 민족/국민국가의 성격상 ‘일본인 처’라는 소재 자체는 구 식민지나 전후 일본 어디에서도 ‘내셔널 히스토리’의 수면 위로 부상하는 일이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흥미로운 대목은 잠행했던 그녀들의 존재가 때에 따라서는 매우 예외적으로, 심지어 소란스럽게 ‘가시화’되는 국면 역시 존재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패전 직후와 한국전쟁 시기 일본인 아내들의 존재는 한국 사회에서 어렴풋이 감지되는 수준이었던 반면,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를 전후하여 그녀들은 한국인의 집단적 대일(對日) 정념을 배경으로 공론장에 빈번하게 소환된다. 일본과의 우호 증진이든 식민 잔재(殘滓)의 청산이든 그 어느 쪽을 강조한다 해도, 그녀들은 의도된 정치적 효과 속에서 해당 맥락으로 전유(appropriation)될 수 있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재한 일본인 처의 재현과 관련하여 기존 논의의 대략적 하한선이었던 1965년의 국면 너머로 시기를 확장하여, 탈냉전 이후 재현의 정치까지를 전반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한편, 재한 일본인 처의 존재를 논할 때, ‘네이션’과 ‘젠더’의 층위가 두드러지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지만, ‘계급’ 역시 중요한 범주가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본인 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역사학이나 인류학 계통의 생활사·구술사 연구에 따르면<sup>7)</sup>, 재한 일본인 처의 대다수는 내내 빈곤층 내지 극빈층으로 생활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돌이켜보면, 그들이 결혼한 조선 남성들의 계급적 스펙트럼은 중·상류층 이상 출신의 유학생에서부터 징용공까지 다양했지만,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이라는 결합 자체는 실은 1937년 중일전쟁의 국면을 시작으로, 특히 일본에서 급증하기 시작한 유형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하층 계급의 조선인 청년이 새로운 일자리와 삶의 기회를 찾아 대거 제국의 도시로 이동하면서 맺어진 남녀들이었다.<sup>8)</sup> 물론, 식민 통치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조선에서 태어난 재조(在朝) 일본인 여성,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 ‘외지’ 조선으로 건너오는 중·하류층 일본 여성들의 숫자도 차츰 늘어났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조

---

인 아내들을 직접 카메라에 담고 인터뷰한 기록이다. 『조선으로 간 일본인 아내』(정수운 옮김, 정은문고)라는 제목으로 2020년 한국어로도 번역되었다.

6) 조은애·박광현, 「일본인 ‘처’라는 기호: 남북일 국민 서사에서의 비/가시화와 이동의 현재성」, 동악어문화회, 『동악어문학』, Vol 87, 2022.

7) 가세타니 도모오의 연구 「在韓日本人妻의 形成과 生活適應에 關한 研究: 生活史研究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논문, 1994)와 김응렬의 논문 「在韓 日本人妻의 生活史」(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1996)을 필두로 이후 재한 일본인 처에 관한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연구 성과들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8) 물론, 개중에는 식민자 2세인 재조 일본인 여성이 상류층 조선인 남성과 결혼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

선인 남성-일본인 여성>의 결합이 그간 정책적으로 장려되어 온 내선결혼(內鮮結婚)의 일반적 패턴인 <일본인 남성-조선인 여성>의 성혼 수를, 내지는 물론이거니와 조선에서도 뚜렷한 추세로 추월하게 된다.<sup>9)</sup>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다시 서두의 이중섭과 야마모토 부부로 돌아가 보자. 전시 중이었던 1945년 4월, 도쿄에서 부산을 거쳐 원산으로 단신 이동하여 우여곡절 끝에 이중섭과 혼인했던 야마모토 마사코는 당시 미츠이(三井) 계열사 사장의 셋째 딸로 상당한 재력이 집안 출신이었다.<sup>10)</sup> 그녀의 존재는 일본인 처가 ‘통념’과는 달리 내지(內地) 사회의 상층부 까지도 분포했음을 보여주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일본인 아내들의 향후 거취와 관련된 결정적 분기의 장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래 기억될 만하다. 말하자면, 그녀는 패전 직전의 조선행이나 이후 조선 거주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던 일본인 아내들이 한국전쟁을 거치며 마주해야 했던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전란의 조선 땅에 여전히 남거나 혹은 일본인 수용소에 들어가 일본행을 기다리거나. 이중섭의 아내 야마모토는 결국 한국전쟁이 끝나기 전 수용소를 거쳐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자의든 타의든 이 땅에 남게 된 여성들이야말로 이후 재한 일본인 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존재들이었다.

## 2. 편재하는 민족, 부재하는 남편/국가

재한 일본인 처의 규모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조선 내 일본인들의 귀환을 지원했던 ‘일본인세화회(日本人世話會)’ 부산 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1948년 남한 전체에 1677명의 일본인 처가 거주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후대 연구자들은 당시 재한 일본인 처의 숫자를 이보다 훨씬 많은 3000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한다.<sup>11)</sup> 앞서 언급한 ‘비가시화’라는 특징 그대로, 패전/해방 직후 일본인 처에 대한 기사나 공식 기록은 찾아보기 거의 어렵지만, 그럼에도 문학적 재현의 경우에는 알려진 몇몇 사례가 존재한다.

우선, 이들 사례의 특징은 제국의 패전이라는 사태에 직면하여, 조선과 일본 중 향후 거취를 결단해야 하는 조선인 남편들의 존재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처의 존재가 흐릿

9)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 巖南堂書店, 1964. 일본에서 내선결혼 부부는 1938년에서 1942년까지 5458쌍이었는데, 그 중 조선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합이 3964쌍으로 72.6%에 달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일본 남성과 조선 여성의 결혼이 많았던 조선에서도 1935년을 기점으로 비율이 역전된다. 1940년에는 조선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합이 3배 이상 많아진다. 오오야 치히로, 「잡지 『內鮮一體』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52쪽, 63쪽에서 재인용.

10) 최열, 『이중섭 평전』, 돌베개, 2014, 321~322쪽.

11) 현무암은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의 『朝鮮終戦の記録』을 인용하며 3000여명의 숫자를 거론한다. 위의 책, 이 숫자는 재일 한국인 학자 윤건차가 제시한 규모와도 근접해 있다. 그에 따르면, 1945년 일본에 거주한 조선인 남성-일본인 여성 부부는 대략 5000쌍이며 이 중 2000여명의 일본인 아내가 남편과 함께 조선으로 건너왔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식민지 시기 이래 조선에 거주하며 해방/패전 이후에 조선에 잔류했던 일본인 처는 1948년 시점에서 841명이었던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이 숫자를 더하면 도합 2841명 가량의 일본인 아내가 존재했던 셈이 된다.

한 원경으로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구슈(九州)의 탄광에 징용되어 갔던 특이한 이력의 소설가 안희남은 단편 「섬」(1946)에서, 울며 불며 매달리는 일본인 처와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홀로 귀환선에 오른 탄광 노동자 “박서방”을 그려낸 바 있다. 이 서사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조선으로 향하는 바닷길, 심한 풍랑을 만난 그가 처자식을 버린 죄의 대가로 이 재난을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결말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희남의 분신인 듯한 초점 화자는 “박서방”이 조선 생활에 적응해나가는 모습을 마치 “섬”처럼 외롭지만, 어디까지나 씩씩한 조선 남아의 모습으로 그려내며 그를 격려하고 응원한다. 해방된 조선의 품으로 귀환하는 박서방의 서사 속에서, 그의 일본인 처는 결코 조선행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로 상정되었으며 그 결과 그녀는 남편과 강제 이산당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민족이라는 심급으로 최종 수렴하는 해방기 귀환 서사의 경향성이란 당시로선 어느 정도 불가피했던 것도 사실이다. 식민지 시기부터 이미 일본인 처의 목소리를 작품 속에 직접 형상화한 적이 있으며, 그 자신 해방 직후 만주로부터 귀환해온 작가 염상섭은 좀 더 선명한 민족적 의도를 내보인 경우였다. 제목부터 의미심장한 「해방의 아들」(1946)<sup>12)</sup>은 조선과 일본 양쪽을 저울질해야 하는 또 한 사람의 남성을 포착한다. 이 남성은 ‘순수한’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 모친(역시 일본인 처에 해당된다)을 둔 이른바 내선 ‘혼혈’로서, 자신의 일본인 아내와 함께 이제껏 내지(內地) 식으로만 살면서 일신의 안위와 풍요를 누리던 청년이다. 그러나 해방 직후, 각종 신변의 위협을 받던 그가 대단히 현실적인 이유로 조선을 향후 조국으로 선택하게 되자, 염상섭의 모습이 많은 부분 투영된 작중 화자는 그의 선택을 치하하며 태극기를 선사하는 결말로 끝이 난다. 이때, 「해방의 아들」 속에 등장하는 일본인 처는 패전 이전부터의 잔류자 유형에 속하며, 남편이 조선을 선택한 이후가 되면 민족적으로 이질적인 존재인 그녀의 역할은 서사에서 확연하게 축소된다. 이처럼, 이 시기 문학 작품 속에 포착된 일본인 처들은 오랫동안 식민지에 거주해온 유형이거나 혹은 「섬」에서와 같이 그대로 일본에 남은 여성들 쪽이었다. 그러나 패전/해방 직후 실존했던 재한 일본인 처들의 압도적 다수가 주로 이 시기 현해탄을 건너는 결단을 내린, 새로운 ‘유입자’ 유형이었던 상황을 환기해 본다면 이와 같은 재현의 방향성이란 다소 의아한 대목이기도 하다. 추측컨대, 일본인 아내가 부각되는 일 자체가 ‘시대정신(Zeitgeist)’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서사적 판단이 저자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 사회 일반에 공유되어 (무)의식적인 배제의 기제로 작동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건 당시 조선행을 선택한 일본인 아내들의, 고스란히 누락된 이 서사는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후대의 생애사나 생활사 연구의 성과에 힘입어 말하자면, 그녀들이 조선 땅을 밟는 그 순간부터 ‘환멸의 서사’ 혹은 파란만장한 ‘여성 수난 서사’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하나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알려진 문구와는 반대로, 그녀들의 불행은 오히려 대체로 엇비슷했다. 우선, 내지에서의 성혼 당시만 해도 국제결혼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sup>13)</sup> 결혼 이후에도

12) 「해방의 아들」의 발표 당시 원제는 「첫 걸음」이었으나 염상섭이 이후 작품의 제목을 변경했다.

13) 가세타니 도모오, 위의 논문, 51쪽.

일본에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그녀들에게 처음 대면한 조선 땅은 문화적 충격 그 이상이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한 위생 상태나 경제 수준은 물론이거니와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녀들을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더욱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舊) 식민 본국 출신의 며느리는 시댁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그녀들로서 가장 절망적이었을 지점은 바로 남편의 변심이었다. 특히, 본가에서 비로소 맞닥뜨린 본처와 아이들의 존재는 그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자연히, 그녀들은 남편의 호적에 오르지 못했으며 자신이 직접 낳은 아이들 역시 본처 소생으로 입적시켜야 하는 처지가 된다. 다행히, 본처나 자녀 문제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선인 남편들은 일본에서와는 달리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기나긴 실업은 결국 도박과 외도 등으로 이어지거나 아내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쉽게 옮겨갔다.<sup>14)</sup> 실제로, 남한에서의 일본인 귀환(引き上げ)이 대략 종료되는 1946년 봄 이후, ‘일선 결혼’이 파국을 맞아 귀국을 원하는 일본인 아내들은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부산의 ‘귀환 일본인 수용소’로 집결하게 된다.<sup>15)</sup> 부모와 친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감행한 결혼과 조선행이었기에 일본 귀환을 쉽게 결심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숫자도 여전히 상당했지만, 그러나 일본인 수용소가 한도 인원을 훌쩍 초과하게 된 결정적 계기란 다름 아닌 한국전쟁이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조선인 남편들이 다수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됨으로써, 모욕과 비참 속에서도 한국에 거주하도록 그녀들을 붙잡았던 최종 사유와 근거가 이제 사라진 셈이었다.

이미 언급한 바대로, 고국 행 이외 달리 삶의 방도가 없는 그녀들이 부산에서 장기간 수용소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은 일본 정부의 국적 관련된 방침 때문이었다. 패전 이후 도선(渡鮮)한 일본인 아내들은 말할 것도 없고, 패전 전부터 조선에 거주한 여성들에 대해서까지도 일본의 인양 원호청은 “순수한 일본인의 히키아게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일본인 처에 대한 모든 정책의 기저에는 이처럼 그녀들의 조선행이 ‘자발적’이었다는 것, 그러나 “전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결과 이제 와서 돌아가겠다”는 인식이 놓여 있었다.<sup>16)</sup> 입국을 원하는 그녀들 앞에는 일본 정부가 부과한 번다한 진입 장벽이 세워졌는데, 그것은 조선인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서류상으로 완전히 정리할 것, 일본의 가족들로부터 자신이 기재되어 있는 호적 등본을 송부받아 한국과 일본 양국 외무 부처의 교차 승인을 각각 받을 것 등이었다. 자연히, 조선인 남편이 행불자가 되었다거나 일본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없거나 혹은 본인 자신이 알고 보니 무국적 상태라거나 등등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사유들이 속출했다. 더욱이, 그녀들을 받아 줄 신원 인수인의 유무도 일본 외무성이 내건 까다로운 입국 허가 조건 중 하나였다.<sup>17)</sup>

14) 강민혜·박상연 외, 『일본 여자의 한국현대사-재한 일본인처 인생 이야기』, 팩트스토리, 2020.

15) 현무암, 위의 글.

16) 가토 기요후미, 위의 책.

17) 일본인 아내들의 복잡한 국적 문제는 그녀들의 소림사 생활이 길어지는 이유가 되었다. 한국인 남편의 호적에 오른 경우에는 물론 한국 국적이었지만, 시집의 반대나 본처의 존재 등으로 호적에 오르지 못했던 일본인 아내들은 일본 국적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 물론, 이 경우는 본국 송환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했지만, 본인이 낳은 아이들과의 국적이 달라 다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한편, 일본인 처들의 이처럼 기약 없는 소림사 생활은 단신 기사로 한국 언론에 간헐적으로 소개되는 정도였지만, 예외적으로 소림사의 이 여성들을 직접 인터뷰하여 일본어로 단편 소설을 잇달아 발표한 작가는 바로 재일조선인 장혁주였다. 1951년 7월, GHQ의 배려 속에 한국전을 취재하는 종군기자로 방한한 그는 전시체제기의 노골적인 친일 전력과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 사회와의 불화로 인해 한국 문단으로부터 경멸과 배척을 받는 상황이었다. 몹시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조선/조선적인 것’으로터 가장 멀리 이탈되어 있는 그의 특이한 작가적 위치, 그 자신 일본인 처를 두고 있으며 일본 국적으로의 귀화를 목전에 둔 조선인 남편이라는 사실이 이 소재를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게 만든 계기였던 셈이다. 현장 취재를 기반으로 한 장혁주의 일본어 소설들에는 일본 국적의 선박(유엔 원조 물자를 나르는 용도)에서 낮에는 허드렛일을 한다든지 굶주림과 향수(nostalgia) 속에서 매춘과 범죄의 유혹에 놓인 일본인 아내들의 참담한 소림사 생활이 여실히 묘사된다.<sup>18)</sup>

그런데 시야를 동아시아 차원으로 확장해보면, 구 식민지 영토에서 벌어진 전란과 그로 인한 남편의 부재, 일본 정부의 방기(放棄) 내지 기민(棄民)으로 이어지는 그녀들의 수난 서사가 비단 재한 일본인 처에게만 오롯이 해당되는 일은 아니었다. 단적으로, 일본의 패전 이후 조선과 더불어 식민 상태에서부터 벗어난 대만에서도 유사한 처지에 놓인 일본인 아내들이 발생하게 된다. 내선결혼과 마찬가지로, 정책적으로 장려된 내대(內臺)결혼으로 인하여 패전 이전부터 대만에 거주했던 일본 부인들이 있는가 하면, 패전 직후 일본 국적에서 이탈된 남편과 함께 낯선 대만행을 선택한 여성들 역시 다수 존재했다. 조선행을 감행한 여성들이 한국전쟁이라는 내전과 조우했다면, 대만의 일본인 아내들은 국공내전의 맥락 속에서 2.28 사건(1947)의 격랑에 휩쓸렸다. 알려진 대로, 대만을 점령한 장제스 정부가 대만 현지인들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만 사회에 미만한 일본적 잔재는 대륙 외성인들의 정치적 명분과 표적이 되기 쉬웠다. 실제로, 일본 유학의 경험이 있는 현지의 많은 대만 엘리트들이 체포당하거나 공개 처형을 당했고, 대만인 남편과 함께 일본 국적을 박탈당한 일본인 아내들은 국민당의 단속 대상이 되거나 자신이 일본인임을 감춘 채 대만 사회에 숨죽이며 적응해야 했다. 이처럼 전후 일본인 처가 발생하게 된 시초의 자리에는 전전의 식민주의적 아시아와 전후 냉전 아시아의 단절적이면서도 연속된 패러다임이 서로 겹쳐 있었고, 이는 비단 한반도만의 일은 아니었던 셈이다.<sup>19)</sup>

18) 소림사에 수용된 일본인 처를 소재로 한 장혁주의 일본어 단편 소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장세진, 「마이너리티로의 변전과 그녀들의 한국전쟁: 장혁주 소설에 나타난 일본인 처(妻)의 재현을 중심으로」, 『사이間SAI』,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33, 2022 흥미로운 것은 한국어 재현의 계보에 드물게 포착된 1950년대 일본인 처의 모습은 장혁주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뉘앙스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손창섭의 「생활적」에 등장하는 춘자(春子, 하루코)라는 이름의 여성은 귀환을 위해 소림사에 집단 거주를 한 경우가 아니다. 소설의 화자를 비롯해 남자들을 전전하는 그녀의 모습은 ‘생활적’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뉘앙스와 더불어 다소 회화화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19) 王美滿, 「日台國際結婚的研究以跨越兩個時代台灣南部的日本女性配偶為對象」, 長榮大學應用日語學系, 碩士學位論文, 2014.

### 3. 연대와 헌신, 그리고 정치적 적대의 선(線)들

#### 3-1. 인정투쟁의 (불)가능성

1961년 9월, 한 신문의 사회 면에는 목포에서 ‘공생원(共生園)’이라는 이름의 고아원을 경영하는 일본인 처 다우치 치즈코(田内千鶴子)의 삶이 자세히 소개된다.<sup>20)</sup> 윤학자(尹鶴子)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이 여인은 한국전쟁 중 남편의 행방불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업을 이어받아 이후 3000여명의 원아를 길러내 ‘목포의 어머니’로 불리게 될 인망 높은 인물이었다.<sup>21)</sup> 다우치 치즈코의 지극한 인간애와 봉사 활동은 이미 식민지 시기부터 시작된 바 있지만, 그녀의 사연이 “한일 친선의 다리”라는 제하에 크게 다루어진 것, 더욱이 1963년 광복절에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그녀가 문화훈장 국민장을 수상하게 된 것은 한국 사회의 달라진 분위기를 여실히 반영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군부정권은 집권과 거의 동시에 이승만의 대일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일본과의 국교 수립을 구상했고, 한일 우호와 친선의 분위기를 장려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고아들을 돌보는 이 헌신적 선행이 윤학자만의 독특한 업적이라기보다는 다른 일본인 처나 유사한 처지의 일본 여성에게서도 발견되는, 일정한 행위 유형이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또 다른 ‘고아의 어머니’로 불리웠으며 1962년 국가재건운동본부로부터 역시 표창을 받았던 나가마쓰 가즈(永松和, 한국명 김화金和)는 이 발사 영업으로 8명의 한국 고아를 직접 길러내고 상급 학교에 진학시킨 여성이었다.<sup>22)</sup> 일본인 처와는 조금 다른, 만주 지역의 잔류 고아였던 나가마쓰는 종전 직후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일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만주로 가기 위해 이듬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대로 정착한 드문 경우였다.<sup>23)</sup> 이후 다시 언급하겠지만, 재한 일본인 부인들의 모임에서

20) 「여기 또 하나 “한일 친선의 다리” 한국 고아의 어머니 된 일본 여인」, 『경향신문』, 1961.9.6

21) 다우치 치즈코는 1912년 생으로 총독부 관료였던 아버지가 목포에 부임하면서 1919년 가족들과 함께 조선에 왔다. 목포의 여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일하던 그녀는 윤치호(1909~1951?)라는 청년 전도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일본어와 음악을 가르치는 자원 봉사 활동을 했다. 그녀는 ‘거지대장’으로 불리울 정도로 버려진 고아들을 남김없이 거두는 윤치호의 열정에 이끌려 그와 결혼했다. 패전 직후 일본인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남편과 고아원 아이들을 잊지 못해 이듬해 다시 되돌아왔다. 1951년 한국전쟁의 와중에, 전남도청이 있는 광주로 구호 요청을 하러 간 남편이 그 길로 행방불명이 된 이래, 남편을 기다리며 이후 공생원 운영을 도맡았다. 공생원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기 위해 1964년 일본에 건너가 도움을 청했고, 당시 일본인 경제 연합회 부회장 우에무라 고오고로(植村甲午郎)의 지원 아래 일본에서 공생원후원회가 만들어졌다. 과로로 인해 1968년 56세의 나이로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3만 명에 달하는 목포 시민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목포시의 시민장으로 장례가 치루어졌다. 「윤학자 여사 별세, 고아 사업 이바지」, 『경향신문』, 1968.11.2. 윤학자의 삶에 대해서는 1995년 한일합작으로 제작되고, 김수용 감독이 연출한 『사랑의 묵시록』이 자세하다.

22) 「국경을 넘어서 인간애」, 『조선일보』, 1962.7.15.

23) 만주 지역의 일본인 잔류 고아는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일본 정부의 귀환 사업에 의해 일본에 돌아온 경우도 있지만, 돌아오지 못하거나 북한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 그 곳에서 조선인 가정에 입양되어 정착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하야시 노리코, 정수운 옮김, 『조선으로 간 일본인 아내』, 정은문고, 2020. 이 책에 따르면 한반도 북위 38도 위쪽에 살던 일본인은 약 30만명으로 추산된다. 패전 후 해외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일본인 아이들이 부모와 가

도 윤학자나 나가마쓰의 경우처럼 한국의 고아를 보살피는 회원들이 꾸준히 존재했다.<sup>24)</sup>

그렇다면, 한국 고아에 대한 일본인 아내들의 이 돌봄과 헌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사회적 갈등을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으로 재구성한 철학자 악셀 호네트에 따르면, ‘인정’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건으로서, 상대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주관성의 영역이다. 호네트의 설명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지점은 세 가지 인정의 형태(사랑, 권리, 연대)가 실현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세 가지 무시의 형태(신체에 대한 폭행, 권리의 부정, 가치의 부정)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은 사회적 투쟁과 저항을 추진하는 주된 심리적 원천이 된다는 대목이다.<sup>25)</sup> 확실히, 당시 일본인 아내들의 경우 한국 사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주장도 내세우지 못한 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일종의 비가시적 낙인(stigma)이 찍혀진 집단이 분명했다. 어떤 식으로든 ‘인정투쟁’이 발생할 만한 이 대목에서, 그러나 다우치나 나가마쓰와 같은 유형의 여성들은 한국 고아들을 돌보고 헌신하는 지극히 이타적인 행위를 선택한 셈이다. 윤학자의 회고처럼, 이러한 행위의 배경에는 일본 식민 통치의 과오로부터 한국의 무수한 빈민 고아와 전쟁고아들이 생겨났다는 인과적 인식<sup>26)</sup>, 일본인인 자신이 다만 그 일부라도 짊어지고자 했던 일종의 ‘속죄 의식’이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만주의 잔류 고아였던 나가마쓰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 행위에는 가족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버려졌다는 자신의 원체험에 기인하여, 고아라는 존재의 고통에 공감하며 타자와의 연대(solidarity)를 시도하는, 사회적 인정 추구의 한 방식이 결합된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고아에 대한 연대와 헌신이 구(舊) 식민지 한국이라는 특수한 장소(성)으로부터 연유했을 것이라는 점은 일본인 처들이 소위 ‘귀국(歸國)’한 이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행위의 성격들을 환기해 보면 한층 선명해진다. 앞서 언급한 현무암의 연구를 참조하자면, 1969년 이후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귀국’ 사업의 대상이 된 일본인 처들은 한국에서와는 사뭇 달랐다. 그녀들은 ‘한국 인양자 동포 친목회’를 결성하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실제로, 남편과 성인 자녀의 동반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일본 정부의 규정에 대하여 그녀들은 가족 전체의 귀국을 요구했다.<sup>27)</sup> 또한, 한국 국적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귀환자 숙소의 확충과 완비를, 일자리의 기회가 있는 도시로의 이동이 가능한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무엇보다 동반 자녀의 일본어 교육 기회 등등을 당당히 요구했다.<sup>28)</sup> 한국에서의 일본인 아내들이 자국의 식민 통치를 ‘부당하게’ 과잉 대속(代贖)하거나 혹은 한사코 일본인임을 감추며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살아왔다면, 일본에

족을 놓쳐 현지에 남겨진 잔류 고아가 되었다. 이 책의 4장에는 잔류 고아로서 함흥 지역에 입양되어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유금(아라이 루리코)씨의 사연이 소개되어 있다.

24) 강민혜·박상연 외, 위의 책.

25) 악셀 호네트, 문성훈·이현재 옮김, 『인정투쟁』, 사월의 책, 2011, 15~17쪽, 250~263쪽.

26) 윤기·윤문지, 『어머니는 바보야』, 홍성사, 1985, 105~112쪽.

27) 「한국인 남편과 함께 살게 해주오, 일 여성 대표 14명 사또 수상에 호소」, 『동아일보』, 1971. 6.26. 기사에 따르면, 1971년 6월 25일 한국에서 돌아와 도쿄의 귀환자(引き上げ者) 숙소에 묵고 있던 마에지마 등 14명의 대표는 온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일본에 보내달라는 어린 아이들이 한국말로 적은 일기장을 제시하면서 남편을 일본에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기사가 났을 당시 한국에서 돌아온 일본인 가족은 모두 140가구, 416명이었다.

28) 현무암, 위의 책.

서의 그녀들은 달랐고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인지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은 채 본인들의 국적이 바뀌면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항의했으며, 자신들의 존재가 일본 제국의 이른바 식민 이후(Post Colonial) 정책의, 의도적인 누락 지점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 3-2. 한일국교 수립 시기의 그녀들: 어긋난 기대와 배가된 적대

재한 일본인 아내들에게 한일 국교 수립이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삶을 바꾸는 획기적인 분수령이 되리라 열렬한 기대를 모은 일대 사건이었다. 그녀들은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으로 박탈되었던 국적 문제가 해결되어 귀환이 마침내 실현되기를 바랐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단기 고향 방문이나 곧 건립될 일본 영사관으로부터의 복지 혜택 및 지원 등을 고대했다. 한국 사회의 발 빠른 변화 역시 이러한 낙관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비록 정부 기구는 아니지만 대한 적십자사와 일본 적십자사의 공동 후원 아래, 재한 일본인 처들의 영주귀국은 이전에 비해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게 된다.<sup>29)</sup> 자연히, 각지에 흩어져 있던 재한 일본인 여성들이 모임을 결성하게 되고 1962년에는 드디어 ‘재한일본부인회(在韓日本婦人會)’가 발족된다.<sup>30)</sup>

한 걸음 더 나아가, 재한 일본 여성들은 이제 대중문화 차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가령, 1965년에는 앞서 언급한 나가마쓰 가즈가 자신의 만주 체험 및 고아들과의 생활 사연을 직접 쓴 수기(手記) 「이 땅에 저 별빛을」이 호평 속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리고 수기의 성공에 힘입어, 김기덕 감독이 동명의 제목으로 연출한 영화가 국내 개봉되기에 이른다.<sup>31)</sup> 물론, 원작의 수기와는 달리 영화 버전은 한국의 대중들이 좀 더 받아들이기 쉽도록, 일본 여성이 조선을 선택한 사유를 보다 극적으로 각색한 채였다. 즉, 영화는 만주에서 고아로 떠돌던 일본 소녀 ‘가즈’가 패전 직후 고용주였던 조선인 일가의 도움으로, 중국군과 소련군의 ‘만행’을 헤쳐 나왔다는 식의 허구적 사연을 첨가했다. 1960년대 한국의 대중영화는 출판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검열을 통과해야 했기에, 영화는 이처럼 각색 과정에서 반공 코드를 강조했으며, 원작이 보여준 수평적인 고아 공동체로서의 빈민 가족이라는 서사보다는 일본 여성 가즈의 헌신적인 어머니 상을 시종 부각시켰다.<sup>32)</sup> ‘반공’과 ‘모성’은 남한 사회에서 결정적인 반감 없이 일본 여성에 대한 서사를 널리 수용할 수 있게 만든 핵심 키워드였던 셈이다. 더욱이, 이 영화는 이듬해인 1966년 「사랑은 국경을 넘어 愛は国境を越えて」라는 제목으로 도쿄에서 일본어판으로 재편집되어 개봉되었는데, 이

29) 현무암, 위의 책.

30) 임회록, 위의 글.

31) 이 영화는 극동흥업주식회사의 차태진이 제작했고, 각본은 서윤성이 집필했다. 주인공 가즈 역에 당시 인기 배우였던 황정순이 분했고, 허장강이나 박노식 등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배우들도 출연했다. 「이 땅에 저 별빛을」은 한국영상자료원(KOFA)에 심의용 전체 시나리오가 남아 있다.

32) 나가마쓰 가즈, 『이 땅에 저 별빛을』, 창우사, 1965, 원작과 영화 시나리오의 차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박소영, 「1960~70년대 수기문학의 영화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는 해방 이후 일본 시장에 한국산 영화를 판매한 첫 사례이기도 했다.<sup>33)</sup>

그러나 이 대목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 정부가 한일국교 정상화와 함께 이울배반적인 일본 문화 금수 조치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어째서일까. “굴욕적” 협정의 조건을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전국적 시위로 확산되자, 군부정권이 대중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반일 민족주의의 감정을 오히려 ‘대반격’의 카드로 활용해 역공한 것이었다. “민족정신과 인화의 전통에 영향을 끼칠 일체의 퇴폐적인 외래 풍조와 사대사상을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이른바 7.13 조치란, 박정희 정권에 쏟아진 ‘반(反)민족과 매국/매판(買辦)’이라는 비판의 시선을 대중들 스스로에게 되돌려주는 일종의 분산 전략인 셈이었다.<sup>34)</sup> 실제로, 한일협정 조인 이후에는 국가 권력 기구인 경찰이 외래풍조(=왜색문화)를 단속하는 주체로 발 벗고 나서게 된다. “왜음반”, “왜음식”, “왜색 간판”등의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평범한 서민들의 일상이 단속의 표적이 되었으며 심지어 “일본어 강습소의 교과 내용”까지 경찰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sup>35)</sup> 한일 간 자본의 이동에 대해서는 빗장이 활짝 열린 데 비해, 뿌리 깊은 ‘내(우리) 안의 일본’에 관해 서라면, ‘식민 이후(Post Colonial)적’ 상황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조롱과 비난, 심지어 법적 조치가 가해졌다. 무엇보다, 정권의 이 자기모순적인 왜색 일소 열풍의 흐름은 뜻밖에도 ‘재한일본부인회’를 직격하게 된다.

실제로, 친일 단체에 관한 경찰의 일제 조사가 행해지는 가운데<sup>36)</sup>, ‘재한일본부인회’ 역시 ‘एं터리 일인 단체’로 지목되기에 이른다.<sup>37)</sup> 당시 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녀들이 한국국적, 한일 이중국적, 무국적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어 애초 규정처럼 ‘일본인 부인회’가 될 수 없다는 것, 한국 국적을 가지고도 공공연히 일본 이름을 사용하는 등 “몰지각한 행동”을 보인 것이 경찰 해산 요청의 근거가 되었다.<sup>38)</sup> 잘 알려진 대로, 과거 식민 통치라는 과오에 대하여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국민적 공분은 일차적으로는 한국의 통치 권력을 향해 폭발했지만, 정부는 계엄령으로 강경대응하는 한편

33) 「일본에서 상영 영화 <이 땅에 저 별빛을>」, 『경향신문』, 1966.12.17.

34) 7.13 공약은 한일국교 정상화를 대비해 정일권 국무총리를 위시하여 국무위원 전체가 5개 항목을 약속한 것을 가리킨다. 「7.13 공약 실천 요강 발표」, 『동아일보』, 1965.8.6.

35) 「왜색문화의 침투를 경계하자」, 『경향신문』, 1965.6.24. 「일본 무드에 중형(重刑)」, 한일협정이 조인된 1965년 6월 22일을 전후로 해서 이른바 왜색 풍조를 비판하는 신문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경찰서 왜색 막기 운동」, 『경향신문』, 1965.7.2., 「왜색 가요 일소는 용두사미격」, 『동아일보』, 1965.10.26., 「왜색 풍조 없애라」, 『조선일보』, 1965.8.28., 「일본 무드에 중형」, 『동아일보』, 1965.8.21.

36) 「친일단체 일제 조사」, 『동아일보』, 1965.7.14.

37) “그토록 일본 경계를 외치고 경찰조차도 왜색 일소에 앞장을 서고 있는 이즈음, 왜색 붉은 비준을 계기로 거리낌없다는 듯 활개치고 있다 …… 서울 시경이 …… 등록을 취소하고 해체를 명하도록 보사부 당국에 요청한 이 단체는 63년 5월에 인가를 받을 때,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부녀자들만이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6백 26명의 회원 중 일본 여인은 별로 없고, 이미 한국에 귀화, 한국 국적의 여인들이 대부분이라는 데서 경찰의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된 「एं터리단체 일인부인회」, 『경향신문』, 1965.8.18.

38) 재한 일본인 아내들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례는, 1) 남편의 호적에 입적한 경우 2) 한국전쟁 중 이북의 피난민들에게 한국 정부가 가호적을 발급해줄 당시, 시민권이 간절했던 일본인 아내들이 피난민으로 가장해 획득한 경우 3) 주변 지인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사망했으나 서류상 아직 살아 있는 한국인의 호적을 얻었을 경우였다.

우리 안의 ‘왜색문화’를 재빨리 대중적 분노의 새로운 표적으로 제시했다. 식민 통치에 대한 해소할 길 없는, 오랜 세월을 걸친 적대와 원한의 집단적 정념(affect)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대중들이 영위하는 스스로의 일상적 삶 바로 그것으로, 혹은 재한일본인 처와 같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잔류 일본인에게로 쏟아진 셈이었다.

한일국교 수립 직후 발표된 박연희의 단편 「피」(1966)는 이처럼 보상받지 못하는 분노로 들끓는 한국 사회에서 예전보다 한층 두려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된 일본인 처 “기요꼬”의 삶을 잘 보여준다. 일본인 처가 주인공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이 텍스트는 한국어 재현의 역사에서 몹시 이례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한일협정 국면에서 가장 열성적인 정부 비판의 진지였던 잡지 『사상계』에 실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한 일본인 처라는 소재는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가상적 ‘화해’의 국가 서사가 내장한 균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39)</sup> 작품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주인공인 “기요꼬”는 홋카이도 출신으로, 탄광에 끌려왔던 조선인 학생을 만나 사랑에 빠져 도선(渡鮮)한 이래, 한국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전형적인 일본인 처의 유형으로 설정되어 있다. 홀로 생선 행상을 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그녀는 자신이 일본에서 태어났을 뿐, 한사코 일본인은 아니라고 손님들에게 주장하는 영리한 생활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일협정이 마침내 성사된다는 소식에 그녀는 눈에 띄게 동요할 뿐만 아니라 “살얼음이 돋도록 긴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어째서일까. 추측컨대, 그것은 현실로 나타난 귀환의 가능성 앞에, 영영 갈 수 없으리라 봉인해두었던 고향 홋카이도 그리고 일본의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새삼 솟구치는 향수(鄉愁)일 터였다. 그러나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결코 이 땅을 떠날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잡는 그녀가 정작 마주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에게서조차 한층 짙어진 ‘일본·일본인’에 대한 적대감이다.

기요꼬는 새삼스럽게 의식했다. 일본의 어느 땅에 묻힐 몸이 아니라 한국 땅에 묻혀 죽어야 한다는—. 기요꼬는 부릅 몸을 떨었다. 더욱이 섭이 놈이 들먹거리던 기억이 떠올랐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또 한국에 오게 됐으니 …… 기가 막혀서” 어머니인 기요꼬가 들으라는 듯이 섭은 며칠 전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다…중략…“어머니한테는 미안해요. 그렇지만, 일본 사람이 두려워요.” 뜻밖에도 섭은 딱 잘라 이렇게 말했다. 기요꼬는 가슴 속이 섬뚱함을 느꼈다. ……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기요꼬는 꿈에도 생각 못 하였던 것이다.<sup>40)</sup>

재한 일본인 아내들에게 한일 국교 수립이 열어보였던 기대의 지평과 현실의 낙차를 잘 보여주는 이 텍스트는 결국 행상에 나선 “기요꼬”가 일본이 있을 먼 동쪽 하늘로부터 얼른 시선을 거두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렇다면, 1965년, 해산 요청까지를 받았던 현실 속의

39) 정창훈은 박연희의 「피」를 비롯해, 한일협정 시기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를 제재로 한 한국어 재현의 유형과 계보를 비판적으로 종합 정리했다. 정창훈, 「한일관계의 65년체제와 한국문학: 한일 국교 정상화를 둘러싼 국가적 서사의 구성과 균열」,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2020, 67~71쪽.

40) 박연희, 「피」, 『사상계』, 1966.2.

‘재한일본부인회’는 어떠했을까. 한일국교 정상화 국면에서 그녀들은 결국 무엇을 얻었고, 어떤 것을 잃었을까. 일단, 경찰의 요청대로 회원들의 국적 규정을 새로 정비한 ‘재한일본 부인회’가 다시금 맞닥뜨린 것은 그녀들을 지켜주리라 고대했던 일본 대사관이 설치(1966) 되고 나서 그로부터 통보받은 명칭 변경 요청이었다. “재한 일본 부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을 위한 명칭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sup>41)</sup> 재한일본인 부인들의 모임의 이름이 향후 그저 무난한 꽃 이름으로, 한국의 ‘무궁화’나 일본의 ‘사쿠라’를 피해 지어진 연꽃을 상징하는 ‘부용회(芙蓉會)’가 된 소이었다. 널리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부용회의 초대 회장은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梨本宮方子) 즉,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이은)의 아내 이방자(李方子)였다. 그러나 한일합방을 상징하는 조선과 일본 황실 간 정략결혼의 당사자였던 그녀는 식민지 청년과의 연애 이후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선으로 건너온, 다수의 빈궁한 일본인 처들과는 실은 너무나 이질적인 존재였다.<sup>42)</sup>

결국, 재한 일본인 처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한일 국교 수립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다. 물론, 신원 확인 절차가 다소 간소화되고 고향 방문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분명한 진전이었다. 그러나 귀환을 원할 경우 일본인 아내들은 여전히 자신이 일본인임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스스로 증명해야만 하는 존재였다. 오히려, 한일간 국교가 정식 수립되면서 적십자사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귀국 지원이 종료됨으로써, 빈곤층이었던 일본인 아내들의 경비 마련은 한층 더 어려워지기조차 했다.<sup>43)</sup>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당시 재한 일본인 아내들은 일본 내 마이네리티 집단 중 가장 규모가 큰 재일조선인들의 상황과도 실은 대조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일협정을 계기로 재일조선인들의 법적 지위가 영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단 명확해진 것과는 달리,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그녀들을 위한 자리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채였다.<sup>44)</sup>

### 3-3. ‘북송 일본인 처’에 가리워지다

한국의 언론 매체에서 일본인 처가 가장 많은 분량으로 언급된 시기가 예의 한일 국교 수립 국면이 아니라 1970년대와 1990년대라는 것은 일견 의외의 일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어 공론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노출되었던 두 시기의 일본인 처란 한국에 거주하는 그녀들이 아니라, 이른바 북송된 (재일조선인의) 일본인 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알려진 대로, “일본 정부가 북한 정부와 재일조선인 사회 양측의 압력에 응하는 형식으로” 재일조선인들의 북한행 즉, ‘귀국’을 허가해준 것은 1959년 2월의 일이었다. 일본 사회 내

41) 현무암, 위의 책,

42) 임회록, 위의 논문.

43) 현무암, 위의 책.

44)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여러 쟁점과 독소 조항, 그리고 이러한 차이들을 만드는 한일 양국 간의 궁극적인 인식 차이에 관해서는 이성, 「한일회담에서의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교섭」,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253~257쪽.

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민족 차별과 그로 인한 빈곤, 그보다 더 절망적인 ‘전망 없음’의 상태에 놓인 재일조선인들에게 북한 측의 ‘약속’은 분명 매력적인 제안일 터였다.<sup>45)</sup> 주거와 직장, 복지의 보장, 무엇보다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모욕받지 않는 세상이 거기 있으리라는 절박한 희망이 그들을 기꺼이 움직인 힘이었다. 실제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니이가타 항(港)에서 출발하는 북송선을 탄 ‘귀국자’는 93,340명에 달했고, 그중 일본인 처는 1831명으로 추산되고 있다.<sup>46)</sup>

그렇다면, 정작 사업이 가장 활발했던 초기의 2년(1959~1961년)간을 포함하여, 북송 일본인 처의 존재에 대해 내내 잠잠했던 남한의 언론이 1974년, 갑작스레 태세를 전환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1974년은 도쿄에 위치한 ‘일본인 처 자유왕래 실현 운동 본부(이하 자유왕래 운동본부)’에 의해 초기 북송사업 당시 북한에 건너간 일본인 아내들이 보내온 8통의 편지가 최초 공개된 해였다. 그녀들 편지의 내용은 기대했던 것과는 판이한 북한의 곤궁한 생활상이 주를 이루었다. 가령, 산모가 쌀밥을 구경 못 해 젖이 나오지 않으며, 본국(일본)에서 보내준 조미료를 받고 뿔 듯이 기뻐했다는 이야기, 부모 형제의 만류를 뿌리치고 떠난 데 대한 사무치는 회한에도 불구하고, 염치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류의 딱한 사연들이었다.<sup>47)</sup> 그녀들의 편지가 일본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자, 이후 ‘자유왕래운동본부’에 의해 또 다른 편지들이 차례로 공개되는데, 사상 통제뿐만 아니라 통행증 없이 주거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엄격한 감시 하의 북한 생활 상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sup>48)</sup> 달리 말해, 이 서신들은 체제 경쟁에서 이제 북한을 앞섰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1970년대의 남한 사회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 내용을, 일본인이라는 제3자의 ‘객관적’ 목소리로 발화하고 있는 셈이었다. 덧붙이자면, 일본인 처의 존재는 인도주의라는 명분 하에 북송사업을 홍보하고 장려했던 일본 정부까지도 함께 비난할 수 있는 소재이기도 했다. 실제로, 남한의 언론은 “일본 정부와 언론이 뻔한 북송 교포의 참상을 짐작하면서 외면하고 언급을 회피하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해괴한 일”이라는 것, 더욱이 “같은 핏줄인 일본인 처에 대하여조차 그토록 냉담”한 일본 정부의 비(非) 인도성을 공공연히 질타했다. ‘자유왕래운동본부’의 대표 이케다 후미코(池田文子)가 일본의 언론을 원망하며 방한, 남한 매체에 감사를 표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였다.<sup>49)</sup> 같은 해인 1974년, 국제승공연합이라는 기관 주도 하에, 『北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으로 북송 일본인 처의 사연들이 발 빠르게 한국어로 번역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다.<sup>50)</sup>

따라서 이 시기 눈여겨 보아야 할 지점은 재한 일본인 처의 경우, 북송 일본인 아내들의

45) 테사 모리스 스즈키, 한철호 옮김, 『북한행 엑서더스』, 책과함께, 2008. 45쪽.

46) 福良義昭, 「北送 日本人妻 問題 研究 : 그 實態와 意味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통일정책학과, 1999, 22쪽.

47) 「후회에 찬 비참한 나날, 북송 일본인 처들 편지로 참상 폭로」, 『매일경제』, 1974.5.6.

48) 「‘자유왕래 본부’ 니이가타 집회서 통행증 없이는 주거지 못 벗어나」, 『동아일보』, 1974.5.31.

49) 「송북 일본인 처 자유왕래 본부장 이케다 여사 내한」, 『동아일보』, 1974.6.20. 「“북송, 국제 인도 역행”, 일인 처 자유왕래 추진 이케다 여사 회견」, 『경향신문』, 1974.6.21.

50) 池田文子 編, 『北에서 온 편지 : 北送 日本人妻로 부터 온 便紙』. 國際勝共聯合 譯, 成和社, 1974, 日本人妻自由往來實現運動會 編, 盧元根 譯, 「北韓에서 온 便紙 : 北送된 日本人妻들이 體驗한 北韓의 眞相」, 삼성출판사, 1977.

압도적인 비중에 가리워지거나 혹은 동일한 프레임 속에 활용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존재가 포착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자유왕래운동본부’가 과거 북송사업의 또다른 핵심 주체였던 국제적십자를 겨냥해 탄원서를 보내고, 조총련과 대치하는 가운데 도쿄, 니이가타, 오사카 등지에서 집회를 주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재한 일본인 처의 모습이 겨우 지면에 등장하게 된 것이었다.<sup>51)</sup> 다시 말해, 13명의 ‘부용회’ 회원들이 일본을 일시 방문, 마치 한일협정 이전의 자신들처럼 이동의 권리가 일체 보장되지 않는 북송 일본인 처를 위하여 자유 왕래 실현 집회 활동에 적극 협력할 때, 그때 비로소 그녀들의 모습은 가시화될 수 있었다.<sup>52)</sup>

이후 다시 언급하겠지만, 1970년대 초반은 재한일본인 아내들의 한국 생활에서 일종의 전환점이 된 무렵이었다. 바로, 그녀들을 위한 임시 수용소인 ‘나자레원’이 설립(1972)된 시기로, 이 곳은 애초 도쿄의 ‘귀국자 기숙사’와 유사한 기능으로 만들어진 시설이었다. 또한, 나자레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녀들의 호적 문제를 재판을 통해 해결하고, 빈곤한 그녀들을 위해 배편과 여행 경비를 마련해주는 등 귀국과 관련된 수속 절차들을 도와주는 기관이기도 했다. 그러나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나자레원이 공식 국가 지원 기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인에 의한 민간 복지 시설이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우리가 왜 일본인을 도와야 하느냐는 식의, 한국 사회에 여전히 팽배한 반일 감정을 의식해 미디어 노출의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던 듯하다. 1970년대에 이르러 일본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북송 일본인처들이 오히려 일본인 처의 대명사가 되다시피한 사정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다.

그렇다면,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 방문이 마침내 실현된 것은 언제였을까. 그것은 세계적 냉전이 해체되면서 북한과 일본 사이에 수교 가능성이 타진된 시기와 정확히 겹치는 1997년 11월의 일로, 그녀들이 일본을 떠난 지 38년 만이었다. 그녀들이 일본으로 떠날 때의 약 3분의 1가량 규모인 538명이 북한에 아직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 중에서 15명의 제1진이 도쿄를 먼저 방문했다. 그러나 그녀들의 지연된 가족 상봉을 전하는 남한 주류 언론들의 논조는 다소 간의 인도주의적 동정과 훨씬 더 강렬한 냉전적 히스테리가 배가된 비율로 결합된 기묘한 것이었다. 물론, “코미디 일본인 처”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낸 『조선일보』의 비판은 도쿄 도착 직후 북한 체제를 아낌없이 찬양하는 그녀들의 회견 당시 의례를 일차적으로 겨냥한 것이기는 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본인 처라는 매개를 통해 회유의 제스처를 보이는 북한과 일본 사이의 국교 수립 자체를 반기지 않는, 여전히 냉전적 정세 판단이 확실히 개입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탈냉전의 흐름과 관련된 또 한 그룹의 일본인 처에 대해 잠깐 언급하기로 하자. 그들은 누구인가. 그녀들은 다름 아닌 사할린 한인의 일본인 아내들로, 과거 제국의 팽창적 식민주의 정책 하에 사할린 개발에 투입되거나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과 결혼한 여성들이었다. 물론, 그녀들 역시 재한 일본인 아내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국가 간 수교 전까지는 일본으로 귀환할 수 없었지만, 일본과 소련 사이의 수교는 글로벌 데탕트의 기운보다 훨씬 빠른 1956년의 일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사할린 거주 일본인 아내들은 국교 수립을

51) 「송북 일본인 처 자유왕래 실현 운동」, 『동아일보』, 1974.6.17.

52) 「북송 일인처 귀환, 조총련 방해 불구, 범국민운동으로 관철」, 『매일경제』, 1974.5.23.

계기로 마침내 일본 국적을 회복하여 (외국인 신분의) 조선인 남편과 함께 일본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이들이었다.<sup>53)</sup>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인 처를 두지 않은 사할린 한인들의 경우는 과연 어떠했을까? 일본으로든, 한국으로든 그들의 귀환은 가능했을까. 그러나 예상대로, 일본과 한국 정부 모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예의 패전과 함께 조치한 조선인들의 국적 이탈을 이유로 들었으며, 한국 정부의 경우 소련이 냉전의 핵심 적성국이자 미수교국이라는 근거에서였다. 결국, 사할린 한인들의 한국 방문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 것은 세월이 훨씬 흐른 뒤 한·러 수교가 성립된 1990년의 일로, 그들은 적어도 일본의 패전 이후 40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던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새삼 기억해 두어야 할 대목이 있다면, 그것은 사할린으로부터 귀환한 일본인 아내들의 ‘그 후’가 아닐까. 놀랍게도, 그녀들에게 일본 귀환은 ‘에필로그’가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 그녀들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자신들과 함께 귀환할 수 없었던 사할린 잔류자들을 잊지 않았고,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외국인 신분인 한인 남편들과 함께 일본과 한국 양국 정부를 상대로, 쉽게 끝나지 않을 사회 운동의 여정에 나서게 된 것이다.<sup>54)</sup> 과거의 그녀들 자신이었던 잔류자들의 온당한 자리를 마련하고 환대하기 위한, 또 다른 ‘연대’의 시작이었다.

#### **4. 결론: 재한 일본인 처의 재발견 혹은 ‘위안부 vs 일본인 처’라는 구도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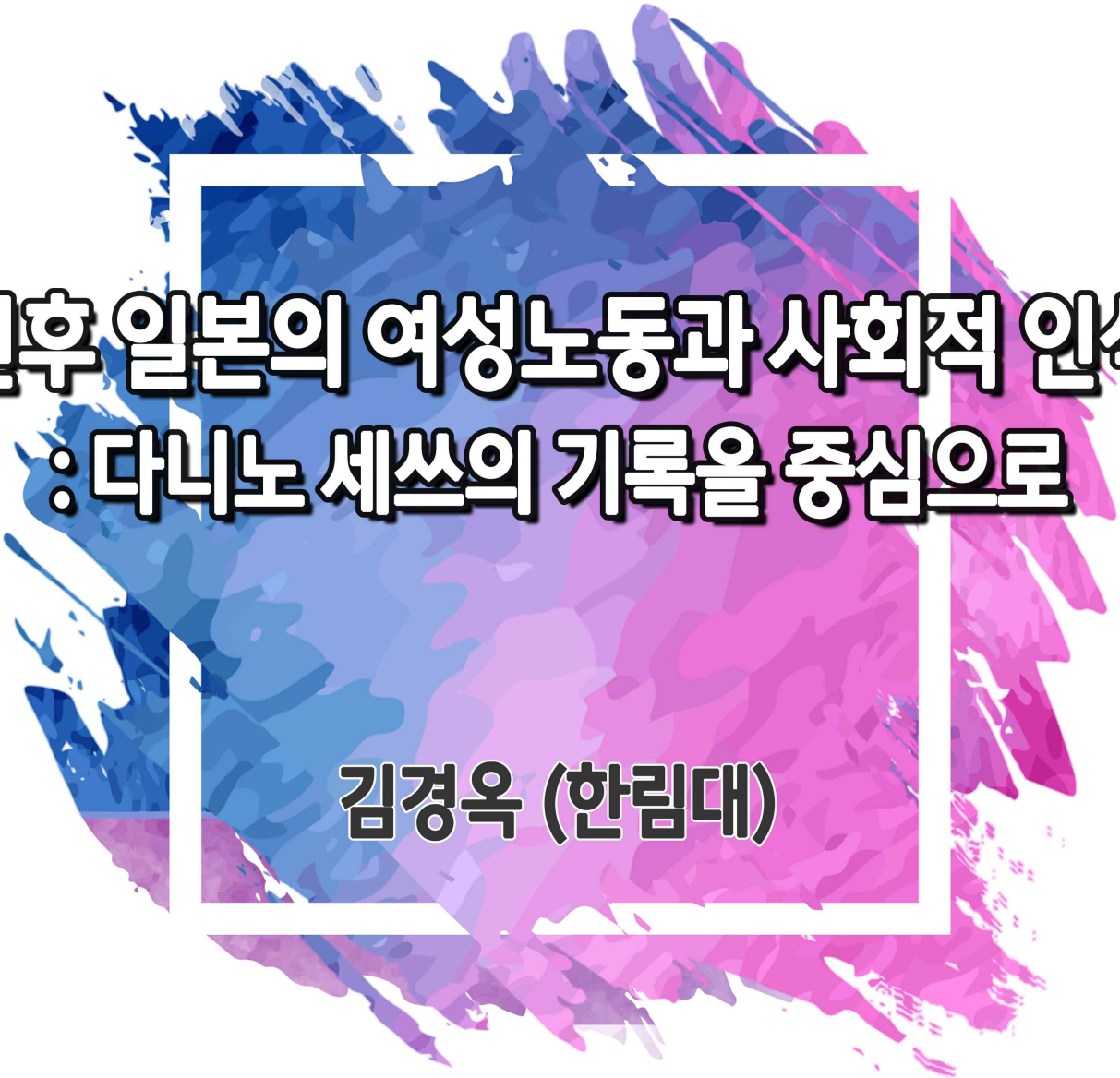
(미완)

---

53) 전후 사할린이 소련 영토로 귀속되면서, 그 곳 탄광에 보내졌던 6만여명의 한인 중 약 4만 3천 명이 1987년 현재 사할린에 잔류하고 있었다. 1956년, 일본인 처를 둔 한인 남편과 그 자녀 등 2307명이 귀환했고, 이 밖에 3명이 개인적으로 귀환에 성공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인들은 세계적 탈냉전이 도래하기까지 불가피하게 사할린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할린 귀환 일본에 책임 있다」, 『동아일보』, 1987.11.26.

54) 임성숙, 「포스트제국 공간 속의 이동: 사할린 한인과 일본인 처의 갈등」, 『인문사회 21』, 13집 1호, 2022.

## 제2발표



# 전후 일본의 여성노동과 사회적 인식 : 다니노 세쓰의 기록을 중심으로

김경옥 (한림대)





# 전후 일본의 여성노동과 사회적 인식

## - 다니노 세쓰(谷野せつ)의 기록을 중심으로 -

김경옥(한림대 일본학연구소)

### 1. 들어가기

본고는 일본 여성노동 전문행정관료인 다니노 세쓰(谷野せつ, 1903~1999)의 기록을 통해 전후 일본의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니노는 전전에는 일본 최초의 여성 공장감독관보로, 일본 정부에서 유일한 여성 직원으로 후생성 노동국에서 근무하고<sup>1)</sup>, 전후에는 노동성 부인소년국장으로<sup>2)</sup> 퇴임 이후에는 UN인권위원회와 ILO(국제노동기관) 위원으로 활동한 일본의 여성노동문제 전문가이다. 『부인지우』, 『직업문제』, 『노동문제총서』 등 전후 다니노가 남긴 다수의 기록은 여성노동자가 처한 상황과 노동 환경,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다니노가 전후에 근무한 노동성 부인소년국은 패전 직후 1947년 8월에 설치된 행정기관으로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국장으로 임명하여 여성노동자와 연소자를 대상으로 한 독립 정부기관이다. 초대 부인소년국장은 여성운동가인 야마카와 기쿠에(山川菊枝1890~1980)이며, 다니노 세쓰는 1955년부터 제3대 부인소년국장을 역임하였다.

1947년 9월에 작성된 부인소년국 리플렛 「부인소년국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에 의하면 노동성 부인소년국은 노동기준법의 보호규정의 시행과 더불어 연소노동자와 부인노동과의 업무를 논하고, 노동조합에 조직되어 있어도 “힘이 약한 부인과 연소자”를 위해 노동기준법이 엄격히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그 설치목적이 명시되어 있다.<sup>3)</sup> 점령기의 여성

1)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다니노는 일본에서도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녀는 1926년 일본여자대학 사회사업부 여공보전(女工保全)과를 졸업하고 4월 내무성에 입사하여 이후 노동부 감독과에서 공장감독관보로 근무 후, 1939년부터는 후생성 노동국 감독과 겸 지도과에서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공장감독관보로 활동했다. 공장감독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공장법의 시행(1916년)과 함께 등장하여 일본의 공업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한 새로운 분야였지만, 그중에서도 다니노가 일본 최초의, 유일한 여성공장감독관보였다는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高頭麻子, 「女性のライフコースの質的調査-谷野せつの戦中調査をヒントに-」, 『女性の多様なキャリア開発のための基礎的研究: 「助成とキャリアアーカイブ」構築に向けて」, 日本女子大学現代女性キャリア研究所, 2011, 121頁.

2) 노동성 부인소년국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모치즈키 마사카즈의 논문을 들 수 있다. 望月雅和, 「戦後日本における働く女性と子育てをめぐる一考察-労働省婦人少年局の展開を契機として」, 『日本経営倫理学会誌』第18号, 2011. 점령기 GHQ는 원래 부인국을 설치하려 했으나 다니노 세쓰는 각 성에서 여성에 관한 소관 업무를 볼 수 없으며 부인국이 설치된다고 해도 성청 밖에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다니노의 의견대로 노동성 부인소년국은 독립 행정기구로 부인노동과, 연소노동과, 부인과 3과로 나누어 설치되었다. 豊田真穂, 「女性労働行政の原点-アメリカ占領下日本における労働省婦人少年局の設立-」, 『アメリカ研究』(38), 2004, 165~166頁.

3) 労働省婦人少年局, 「婦人少年局は何をすところか?」(1947年9月), GHQ/SCAP Records,

노동정책 연구자인 도요다 마호는 부인소년국의 설치 배경에는 여성노동자는 “조직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호자 대신이 될 행정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부인소년국 설치의 사상적인 배경은 “여성은 약하고 가정에서 어머니와 주부로서 역할을 갖고 있으므로 행정이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과, 부인소년국은 여성과 연소자라는 2개의 다른 카테고리를 특별하게 보호해야 할 존재로서 동일시하고 여성노동자가 가정에서 가진 역할과 모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기능으로 하였다”고 지적한다.<sup>4)</sup> 이것은 전전의 일본이 공장법(1911년 제정, 1916년 시행)에서 여성노동자와 연소자를 위해 제정한 ‘보호규정’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일명 ‘노동자보호입법’으로 불린 공장법은 “수동적이고 의지가 박약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므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연소자와 여성노동자를 보호직공으로 규정”하였다.<sup>5)</sup>

본 연구는 도요다 마호의 연구를 토대로 패전 직후부터 노동성 부인소년국에서 활동한 다니노 세쓰의 기록을 통해서 보호와 평등의 경계에 서 있는 여성노동자의 실태를 통해 전후 일본의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패전 직후부터 1950년대 중반은 여성참정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 등 고도 경제성장으로 나아가기 바로 전 단계로서, 전전과는 다른 정치체제 및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확립된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 인구 감소와 저출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여성노동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점령기를 포함한 패전 후 10년간의 일본의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된 고찰이 충분히 진행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예를 들면, 본 연구의 시대적 배경인 패전 직후의 점령기에 한정된 관련 연구를 살펴보더라도 방대한 축적이 있는 점령기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에 관한 것은 “놀라울 정도로 적은”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sup>6)</sup>

본 연구의 다니노의 기록을 통한 전후 일본의 여성노동에 대한 접근은 패전 직후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이 주창되던 시기에 보호와 평등의 경계에서 중심과 주변을 오가며 결국 남성의 그림자로 머물게 된 전후 일본의 여성노동자의 실태를 조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후 일본의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현대 일본의 여성노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SS(H)02455: 豊田真穂, 「女性労働行政の原点—アメリカ占領下日本における労働省婦人少年局の設立—」, 『アメリカ研究』(38), 2004, 172頁.

4) 豊田真穂, 「女性労働行政の原点—アメリカ占領下日本における労働省婦人少年局の設立—」, 『アメリカ研究』(38), 2004, 172頁.

5) 김경옥, 「일본의 여성노동자의 동원과 보호에 관한 연구-‘보호직공’으로 동원된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50, 2019년, 97쪽.

6) 연합국 점령기(1945~1952)의 여성노동정책과 개혁을 젠더적 관점에서 연구한 도요다 마호는 점령기 관련 연구가 꽤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 관련 연구는 그다지 진행되지 않은 것을 언급하고 있다. 豊田真穂, 『占領下の女性労働改革』, 勁草書房, 2007년, 4頁.

## 2. 전후 신헌법과 여성해방

패전 직후 실시된 점령기(1945~1952)의 사회적인 변화는 법제, 교육, 문화, 가족과 윤리적 규범 등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중에서도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 아래의 사회변혁 중 가장 큰 변화는 일본여성에게 주어진 부인참정권이다. 그것은 바로 신헌법에 명확하게 여성의 인권이 규정되어 ‘여성의 권리’가 국가에 의해 명시됨으로써 여성은 전전의 봉건주의에서 벗어나 부인참정권을 통해 남성과 동등한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지위를 점하게 되어 여성해방을 달성할 수 있었다.<sup>7)</sup> 다니노는 헌법에 명시된 남녀평등이 일으킨 사회변혁에 대해 “신헌법은 부인을 모든 봉건성으로부터 해방해서 남자와 동등의 지위를 부여하였고, 그 후 제정된 제법제는 모두 이것을 증명함으로써 부인해방을 실현하는 조건 중 하나로 부인의 경제적 자각이 현저하게 높아지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오랜 기간 직업부인이나 노동부인에 대한 비난이나 반대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학교를 졸업하면 일단 밖에 나가 일하는 것이 여자의 상식이 되고 …… (중략) …… 부인의 직업에 관한 이러한 사회관의 변화는 당연히 부인의 직업에 대한 지향을 촉구하고 직업활동의 의욕을 강화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전후 신헌법 아래 여성해방이 여성의 직업에 대한 사회관의 변화로 발전하였음을 지적했다.<sup>8)</sup>

태평양전쟁 이후 정치적 자유와 함께 경제적 자유가 주어져 직업에 대한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그 전제조건으로서 교육적 기회도 균등하게 주어져 여성의 직업은 점차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국립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이 1946년 4월부터 여성에게 개방되어 전전의 여성에 대한 차별적 교육정책이 종언을 고하였다. 다니노는 이미 1934년에 「부인노동자보호에 관한 문제」에서 여성해방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여성이 직업을 통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생활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다니노가 주장하는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은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상이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여자의 직업교육에서는 여자의 노동과 직업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과 관련해서 여성에게는 여성 특유의 배려가 필요하고 또 남자보다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다니노는 “남자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직업에 대한 적응 능력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부인의 직업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sup>10)</sup>

7) 문예평론가 가와카미 데쓰타로는 1945년 10월 배급된 자유(「配給された自由」)라는 평론을 통해 GHQ에 의해 돌연히 주어진 ‘자유’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가와카미는 식량부족과 빈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불안감이 가중된 상황 속에서 일본인은 GHQ의 점령 하에 ‘자유’라는 양식을 배급품으로 부여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河上徹太郎, 「配給された自由」, 宇野重規編, 『民主主義と市民社会』リーディングス戦後日本の思想水脈3, 岩波書店, 2016년, 2頁. 이에 대해 여성운동가 하니 세쓰코는 ‘배급된 자유’ 혹은 ‘주어진 자유’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자유를 암시장이나 어딘가에서 비싼 금액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여성을 향해 ‘주어진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유를 위해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 이 자유를 액살(扼殺)하려는 사람들과 한 편”이라고 일갈하였다. 羽仁説子, 「女性と自由」, 『世界』創刊号, 岩波書店, 1946.1, 129~130頁.

8) 谷野せつ, 「最近における婦人職業の進出について」, 『職業研究』6(12), 1952년, 16頁.

9) 谷野せつ, 「婦人労働者保護に関する問題」, 『社会事業研究』, 1934.9. (北川信編, 『婦人工場監督官の記録(上) 谷野せつ論文集』, 291頁.)

전후 신헌법은 기본적 인권과 남녀평등을 보장하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했다. 이후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어 단체협약을 맺거나 노동자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도 형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만약 쟁의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분쟁을 처리할 권리 등이 보장되었다. 그 결과 여성노동자도 조합활동의 참가가 증가하여 전전에는 고작 1만 명 내외였던 여성조합원이 전후에는 약 150만 명으로 증가했다. 노동조합법과 함께 여성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노동기준법이다. 노동기준법은 노동조합법이 제정된 후 1947년 9월 1일에 시행되었다. 노동기준법은 전후의 노동관계에서 보았을 때 여성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sup>11)</sup>

첫째, 노동기준법 제정으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가 전전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확대되었다.<sup>12)</sup> 전전에는 여성노동자와 연소자를 ‘보호직공’으로 규정한 공장법이 1916년부터 실시되었지만, 여성노동자가 약 80%를 점했던 섬유산업에서는 1929년부터 실시되었다. 그러나 공장법 자체가 “공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정비하여 재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법률이었고, “노동자의 목소리 없이” 시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공장법에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명시된 것과 그것의 실행은 별개의 문제였다.<sup>13)</sup> 그런데 노동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여성노동자는 1950년 말에 적용 신고가 된 사업장만 보아도 260만 명을 넘고 있다. 310만 명의 여성노동자 중 85%에 해당하는 여성이 노동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둘째, 노동기준법을 시행하는 감독관 중에 상당수의 여성공장감독관이 등장했다. 일본의 여성노동자는 전전에는 식산흥업과 부국강병을 위한 산업전사로서, 전시기에는 전장의 남성을 대신한 대체노동력으로서 군수산업 등 다방면으로 진출하였지만, 그럼에도 여성공장감독관은 1명에 그쳤다.<sup>14)</sup> 바로 그 전전과 전시의 유일한 여성공장감독관이 다니노였다. 1949년 여성감독관 수는 남성 2,057명에 대해 57명이라는 숫자로 증가했다. 전전에는 여성에게 부적합하다고 인식되어온 공장감독관이라는 직책이 노동기준법 시행을 통해 여성감독관을 채용하게 된 것이었다.

셋째, 노동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노동자가 양적으로 증가한 것과 비례해서 노동환경이 질적으로 개선되었다. 전전과 전시에 행해진 여성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환경과 장시간 노동 등 극심한 노동착취로 인해 다수의 질환자가 발생하고 건강이 파괴되어 여성노동은 그 자체가 ‘저주의 대상’으로 여겨질 정도였다.<sup>15)</sup> 그러나 전후 신헌법 하에서 노동기준법이 시행되면서 노동 환경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제조업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전시기였던 1943년에 휴게시간을 포함해 1일 1인 평균 10~12시간이었지만 전후

10) 谷野せつ, 「婦人を対象とした職業教育」, 『社会教育』6(3), 1951年, 21頁.

11) 谷野せつ, 「婦人の労働保護五年間の歩み」, 『労働基準』4(4), 1952年, 18頁.

12) 이와 관련하여 줄고를 참고할 수 있다. 김경옥, 「일본의 여성노동자의 동원과 보호에 관한 연구-‘보호직공’으로 동원된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50, 2019年.

13) 北川信, 『婦人工場監督官の記録 (上)谷野せつ論文集』, ドメス出版, 1985年, 24頁.

14) 이와 관련하여 줄고를 참고할 수 있다. 김경옥, 「일본의 근대화와 여성노동자 ‘보호’-다니노 세쓰의 기록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59, 2022年.

15) 谷野せつ, 「婦人の労働保護五年間の歩み」, 『労働基準』4(4), 1952年, 18頁.

1948년에는 7~8시간으로 감소하였다. 노동기준법이 시행되며 여성노동자의 갱내노동이나 심야업의 폐지와 함께 시간외노동, 휴일노동, 생리휴가, 산전산후에 관한 여성노동자 보호 규정이 실시된 것이다.

태평양전쟁 중에 일본여성의 직업은 질적 변화를 경험하며 섬유산업과 같은 경공업에서 군수산업과 같은 중화학공업으로 확대, 진출하였다. 그러나 패전 이후 격변한 산업과 경제의 변화로 중화학공업은 전장에서 돌아온 남성으로 전환되었다. 동시에 기업정비로 인해 전시생산에 종사하던 여성노동자는 가장 먼저 직장에서 쫓겨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의 특수로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1952년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1952년 5월 노동력조사에서 남녀 구성을 보면 일본의 14세 이상의 생산연령인구에 속하는 여성의 총수는 3,012만 명, 그중 1,603만 명, 즉 약 53%에 해당하는 여성이 직업을 갖고 있었다. 남자는 14세 이상의 생산연령인구가 여자보다 훨씬 적은 2,732만 명, 그중 84%에 해당하는 2,298만 명이 직업을 갖고 있다.<sup>16)</sup>

그런데 여성의 고용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 여성 취업자 중에서 접하는 가족종업자<sup>17)</sup>의 비율을 보면 1947년 11월 여성 취업자 총수 3,556만 명 가운데 가족종업자는 1,346만 명으로 37.9%에 상당하였다. 그 후 1950년부터 여성의 가족종업자 수는 감소하여 1952년 5월에 986만 명으로 떨어지고 이것은 1947년에 비하면 360만 명이 넘게 감소한 것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여성의 고용이 증가하고 이에 동반해 여성의 가족종업자도 감소하기 시작한다. 결국 여성 노동력 안에서 접하는 가족종업자는 여성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가족종업자가 접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거꾸로 여성의 고용이 감소하면 가족종업자로서 여성의 고용이 급격히 팽창한다. 가족종업자에서 보이는 여성고용의 특징에 대해 다니노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가정이나 사회에서 아직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농촌이나 가정에서 가족노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여성이 가족노동에서 사실상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족노동은 노동법규상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임금으로 거의 환산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sup>18)</sup>

도시에서도 이와 관련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1952년 시점에 23만 명에 가까운 여성이 개인 가정에서 머물며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사용인으로 종사하고 있었다. 가사사용인은 패전 직후 일시적으로 격감하여 1949년 국세조사에 의하면 7만 5천 명에 머물

16) 일본은 점령기에 전쟁으로 인해 다수의 남성 사망자가 발생하여 남녀인구 비율이 현저하게 불균형을 이루었다.

17) 가족종업자란, 농가와 상공업 등의 자영업자의 가족으로 자신의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가족종업자는 정부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노동자)로 간주되지만, 그중에는 고용기회를 얻기 위해 대기 중인 잠재실업자도 포함된다. 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일본에서는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가족종업자의 비중이 컸지만, 전후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농민층의 분해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가족종업자 수는 급감하였다.  
<https://kotobank.jp/word/%E5%AE%B6%E6%97%8F%E5%BE%93%E6%A5%AD%E8%80%85-159923> (검색일 2023.06.25.)

18) GHQ는 부인소년국을 설치함에 있어 노동기준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농업자와 가족종사자 등을 노동자로서 규정하고 노동자가 아닌 일반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와 권고도 부인소년국의 사무로 규정하였다. 豊田真穂, 「女性労働行政の原点—アメリカ占領下日本における労働省婦人少年局の設立—」, 『アメリカ研究』(38), 2004, 168頁.

고 있다. 그러나 1950년 다시 증가하여 23만 명으로 증가한다. 가사사용인으로 종사하는 여성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는 수요에 비해 사람을 구하기 힘든 직업군으로 특히 도회지에서는 더 심화되었다. 그러나 가사사용인은 노동기준법의 미적용 대상으로 노동관계에서도 봉건적 잔재가 남아 신시대의 근대적 사상에 눈을 뜬 젊은 여성이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었다. 하지만 여성이 “오랜 기간 가사노동의 현장에서 공헌해 온 경험에서 보았을 때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장래에는 노동관계의 근대화” 발전해 갈 수 있는 직업으로 다니노는 가사사용인이라는 직업의 의의를 설명하였다.<sup>19)</sup>

여성공장감독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전후에 여성이 진출한 분야로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여성공무원이다. 1940년 국세조사에 의하면 여성공무원은 600명으로 전체의 7.6%에 불과했지만, 1947년에는 18만 명으로 전체의 19.8%로 급증했다. 특히 노동자, 연소자의 복지를 피하기 위한 계몽지도를 담당할 아동복지사, 노동기준감독관 등 여성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이 대거 등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전후 여성에게 열린 공무원 중 여성경찰관의 등장도 주목되는 바다. 그 시작은 1946년 도쿄경시청에서 채용한 것을 계기로, 그 후 국가와 지방경찰을 포함해 1952년에 약 70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었다. 전전에는 책임 있는 지도적, 관리적인 지위에 여성이 앉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 수가 매우 적었지만, 전후 신헌법 하에서 노동기준법과 여성에 대한 고등교육의 개방과 함께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의 바람을 타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점차 증가하게 된 것이다.<sup>20)</sup>

### 3. 다니노 세쓰의 기록으로 본 전후 여성노동자의 실태

본 장에서는 다니노 세쓰의 기록을 통해서 여성노동자 보호와 남녀평등의 경계에 서 있는 전후 여성노동자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후 신시대에 제정된 신헌법과 노동기준법, 노동조합법 하에서 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사회적 지위, 남녀동일임금 등을 중심으로 보호와 평등의 경계에서 여성노동자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그 실태를 살펴보자.

#### 1) 노동기준법, 노동조합법, 그리고 여성노동

여성고용에 관한 조사를 보면 1952년 5월 여성고용자 수는 389만 명으로 전체 고용자의 27.9%에 해당한다. 이것은 1951년 전체의 26.8%인 359만 명에서 30만 명이 증가한 것이고, 1950년 전체의 24.4%인 310만 명에서 79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의 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sup>21)</sup>

여기서는 노동기준법이 섬유산업의 기숙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자. 신

19) 谷野せつ, 「最近における婦人職業の進出について」, 『職業研究』6(12), 1952年, 15~16頁.

20) 谷野せつ, 위 논문, 18~19頁.

21) 谷野せつ, 「婦人労働と職業補導」, 『職業指導』25(12), 1952年, 714頁.

헌법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노동기준법은 이 헌법의 취지를 기초로 해서 전전의 공장법이 정한 안전 위생에 관한 보호규정 외에도 근로시간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강제노동이나 노동착취의 폐해를 제거하였다. 노동기준법은 근로수칙과 근로시간에 대한 영향도 컸지만, 무엇보다 기숙 노동자의 사생활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치원칙을 확립한 부분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1953년 일본의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약 70만 명 가운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 여성노동자는 약 28만 명이다. 기숙사에서 여성노동자의 생활을 규율하는 것은 노동기준법에 의거한 자치 원칙이었다. 노동기준법은 제94조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의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숙사 생활에서 자치원칙을 강조하였다.<sup>22)</sup> 자치생활에 필요한 자치위원 선임은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기숙 노동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거를 통해 임명된 대표자가 기숙사의 생활을 운영할 수 있었다.<sup>23)</sup> 1947년 노동기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섬유공장의 기숙사에는 기숙사 담당계원이나 사감이 있어 회사가 원하는 대로 기숙사에서의 여성노동자의 생활지도와 생활통제를 담당하였다. 하지만 그 생활지도의 이면에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 사용자가 기숙 노동자의 생활에 개입하거나 간섭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노동기준법이 시행되고 자치원칙이 강조되면서 기숙사 담당계원이나 사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며 무용론이 대두되었다. 동시에 노동기준법의 적용 대상 공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자치조직이 설치되었고 기숙사의 집단생활과 사생활 통제를 기숙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sup>24)</sup>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공장기숙사에 자치회가 조직된 그 자체가 기숙 노동자의 요망과 스스로의 자각에 근거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장기숙사의 자치조직은 노동기준법, 즉 밖으로부터의 강제력에 의해 설치된 것이었다. 문제는 “이 자치조직이 발족되어도 많은 기숙 노동자는 왜 자치조직이 필요한 것인지, 자치조직의 활동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자치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기숙 노동자의 다수를 점한 여성노동자 간에 “자치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두려워” 자치위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자치회에서는 임원 선거에서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어떠한 사정이 있어도 사퇴는 인정할 수 없다고 결의하기도 하였다.<sup>25)</sup>

기숙사 생활을 하는 여성노동자가 자치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그들의 연령과도 관계가 있었다. 전전부터 섬유공장의 기숙사제도는 대부분의 노동력을 농촌에 의존하고 있었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성노동자의 50%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자였다, 그들은 공장기숙사에서 사감이나 기숙사 담당계원의 지나친 사생활 간섭이나 통제로 자주적인 생활이 위협받는 상태가 되어도 자치회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연소한 여

22) 노동기준법 제94조(기숙사생활의 자치) 사용자는 사업의 부속기숙사에 기숙하는 노동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https://www.rodod.co.jp/laws/116894/> (검색일 2023.06.25.)

23) 노동기준법 제94조(기숙사생활의 자치) 2, 사용자는 기숙사장, 실장 그 외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의 선임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https://www.rodod.co.jp/laws/116894/> (검색일 2023.06.25.)

24) 谷野せつ, 「工場附属寄宿舎の生活」, 『青年心理』4(2), 1953년, 152頁.

25) 谷野せつ, 위의 책, 153頁.

성노동자가 많은 기숙사에서는 자치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예상 이상으로 곤란하여 사실상 일부 기숙사에서는 기숙사 담당자의 도움이나 지도가 없으면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1953년에는 “회사 측의 통제가 점차 부활하기”에 이르고 있었다. 다니노는 연소의 여성노동자가 “집단생활과 개인생활과의 관계에서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발언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sup>26)</sup>

다음으로 노동조합법의 시행과 여성노동자의 조합활동에 관해서도 살펴보자.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것은 1946년이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노동자는 단결권이 보장되어 전전에는 10만도 되지 않았던 조합노동자가 1949년에 600만에 이르렀다. 여성노동자도 전전에는 겨우 1만도 되지 않았지만 1949년에 150만으로 증가하여 전체 290만의 여성노동자 중 약 절반에 가까운 수가 조합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여성노동자의 조합 가입률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만큼 여성노동자는 조합활동에도 적극 참가하고 있었을까. 이에 다니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근 조합의 문제는 임금이든, 노동시간이든 인원정리든 문제의 뿌리가 너무 깊고 커서 어렵다. 그래서 부인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조합에서 의논을 해도 부인들에게는 소화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부인들은 결국 따돌림을 당해 조합활동에서도 점점 떠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조합에서 판단해야만 하는 문제가 어렵고, 부인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인노동자에게는 부인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합활동이 저조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로 인해 부인에 대해 일할 의욕이 부족하고 무비평이고, 노동 문제에 대한 의식을 기르기 힘들다고 말한다. 한편으로 부인들이 조합에 들어와서 활동하면 사용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나, 사회 일반에서도 여자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는 오랜 관념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화가 되어 용감하게 싸울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sup>27)</sup>

다니노는 전후 여성노동자의 문제가 임금이나 노동시간, 인원정리 등 복잡 다변화되어 여성노동자들이 조합 안에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조합활동을 떠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할 의욕이 부족’하다거나 ‘무비평’이라는 여성노동자를 향한 질타는 무엇보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부정적인 인식의 반영이며 사회 일반이 가진 ‘여자의 본질’이라는 오랜 관념에 의거한 인식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2) 남녀동일임금의 원칙과 여성노동

신헌법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과 더불어 주목되는 것이 남녀동일임금의 원칙이다.<sup>28)</sup> 현대

26) 谷野せつ, 「工場附属寄宿舎の生活」, 『青年心理』4(2), 1953年, 153~154頁.

27) 谷野せつ, 「働く婦人の福祉増進運動について」, 『官業労働』3(7), 1949年, 19頁.

28) 노동기준법 제4조(남녀동일임금의 원칙) 사용자는 노동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이유로 임금에 대해 남성과 차별적 취급해서는 안 된다. <https://www.rodod.co.jp/laws/116875/> (검색일 2023.06.25.)



일본 사회에서도 남녀동일임금은 여전히 시정되지 못한 채 문제의 중심에 있다. 1947년부터 시행된 노동기준법 제4조 남녀동일임금의 원칙은 ‘사용자는 노동자가 여자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임금에 대해 남자와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물론 그 취지는 남녀가 같은 일에 종사하는 경우 같은 임금이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sup>29)</sup> 여기서는 남녀 동일임금의 원칙과 여성노동의 관계를 살펴보고 평등의 경계에 서 있는 여성노동자를 고찰한다.

노동기준법이 규정하는 ‘남녀동일임금의 원칙’은 회사나 사업장 등이 임금 규칙을 정하는 경우 남성과 여성의 일이 동일함에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초임급을 차별하거나, 고정급에 차별을 두고 혹은 장려금의 분배율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니노는 옥외 화물을 운반하는 남녀노동자를 예로 들며 남녀동일임금의 원칙을 설명한다.

옥외에서 화차에 화물을 운반하는 운반부로서 그곳에서 20~30미터의 거리를 남자와 여자가 함께 똑같은 목재와 석탄을 짊어지고 화차에 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임금은 20세의 남자의 고정급이 1일 37엔이고 같은 20세의 여자는 30엔 40전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출하장려금이 붙는데 이것은 남자가 항상 55%를 받는 것에 비해 여자는 45%의 비율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고정급을 정하는 경우, 남자는 연령에 따른 가급제가 설정되어 있고 연령과 근속년수가 상승함에 따라 고정급이 자연적으로 인상되는 것에 반해, 여자는 연령 가급이 전혀 붙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정급의 평균임금을 그 자체도 20세 미만의 남자, 즉 연소자의 취급 수준을 따르고 있어서, 몇 년을 근속해도 연소자 평균임금을 이상으로 고정급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30세가 넘는 10년의 경력을 가진 여성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20세 미만의 연소노동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모순이 있습니다.<sup>30)</sup>

위의 사례를 보면 같은 20세라 할지라도 남자 1일 37엔, 여자 30엔 40전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다. 출하장려금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무엇보다 남자는 연령과 근속년수에 따라 고정급에 가급제가 적용되었지만, 여자는 가급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경력이 10년이 되어도 임금이 20세 미만의 남자 연소노동자에도 못 미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남녀동일임금의 원칙은 각종 수당과 장려금에 대한 분배 등 복잡한 임금 지불체제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니노는 노동성 부인소년국에 접수된 도쿄 근교의 어느 방적공장의 여자직원이 겪고 있는 유사한 사례를 설명한다.

이 공장에서는 임금규칙은 일단 남녀동일 임금률로 계산하지만, 여자는 동일연령으로 동일학교를 졸업하고 동일한 일에 종사해도 항상 채용의 경우 공장고용으로 되는 것에 반해, 남자는 본사고용으로 됩니다. 그리고 본사고용과 공장고용 사이에는 큰 임금 차이가 있습니다. 남녀의 차별적 대우는 임금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정년제에 남녀 차를 둔다거나 채용 시

29) 「座談会婦人と労働法」, 『婦人の世紀』7, 1948年, 26頁.

30) 谷野せつ, 「感想 婦人と賃金」, 『労働時報』1(6), 1948年, 7頁.

신분상에 차별을 두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취직 기회에서도 남녀 차별을 두는 것이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습니다.<sup>31)</sup>

남녀의 차별적 대우는 임금만이 아니라 정년제, 채용 신분, 취직 기회 등 다방면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여성의 임금이 낮은 것은 복잡한 임금 분배 방법과 더불어 이미 뿌리 깊게 단단히 박힌 사회적 통념으로 간단히 개선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임금 결정의 모순을 자각한 여성노동자가 조합에서 이것을 문제로 제기하고 임금규칙을 정하는 경우 그 문제점을 지적해도, “여자는 평균적으로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과 “남자조합원의 강력한 단결 앞에서 결국 진압되어 단념해” 버린다는 것이다.<sup>32)</sup> 그런데 도대체 어떠한 이유에서 여성노동자의 임금을 이렇게 낮게 평가하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해 다니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남녀간의 임금 차를 긍정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능력과 능률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 가장 오해 하기 쉬운 설명이 남자와 여자는 실제로 완전히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계, 공구, 공정, 능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여성의 임금이 싸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말해서 여자는 남자에 비해 능력이나 능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를 위해 평가한 평균임금에서 약간 빼고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능력이나 능률을 낮게 평가하는 두 번째 의견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노무관리비가 여분의 실비(失費)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자가 남자처럼 빠르고 능률적으로 일을 해도 여자에게는 그 임금을 보다 낮게 지불해야만 여분의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기에 특별한 배려와 보호에 필요한 제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당면대상은 노동보호법이지만, 그것은 확실히 여성노동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특히 다양한 부담과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sup>33)</sup>

‘노동보호법’이란 노동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휴게시간, 생리휴가, 산전산후에 관한 여성노동자 보호규정을 뜻한다.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남성노동자에 비해 여분의 실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부담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여성의 능력과 능률을 남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인식하여 평균임금의 기준을 남성에 두고 거기에서 차감하여 여성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인식도 엿볼 수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과 능률이 떨어지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 아래에 남녀동일임금의 원칙은 점차 실효성이 떨어져 남녀평등의 경계에서 여성노동자는 주변부로 밀리고 있다.

31) 谷野せつ, 「働く婦人の福祉増進運動について」, 『官業労働』3(7), 1949年, 19頁.

32) 谷野せつ, 「感想 婦人と賃金」, 『労働時報』1(6), 1948年, 7頁.

33) 谷野せつ, 위 논문, 7~8頁.

#### 4.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여기서는 전후 신헌법 하에서 시행된 노동기본법과 노동조합법, 남녀동일임금의 원칙 등이 원활하게 준수되지 못한 이유를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전과 달리 민주주의 체제에서 남녀평등이 실현되었음에도 사회와 직장에서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시각은 전전과 큰 차이가 없다. 여성노동에서 고착화된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여성노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행과 인식의 근거를 살펴보자.

전후 일본사회에서 여성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산업의 발달이 남녀 노동력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1952년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162만 명으로 노동자 총수의 32%이다. 하지만 메이지부터 쇼와 초기까지 섬유산업이 일본의 주된 산업이었던 시대에는 여성이 공장노동자 총수의 절반을 차지했다.<sup>34)</sup> 이처럼 여성의 고용은 경제와 사회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편 여성고용 문제는 경제적 상황만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사고방식과 생활 등 상당히 뿌리 깊은 문제가 작용하였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3년부터 디플레이션의 여파가 가장 먼저 덮친 것은 여성노동자였다. 1953년부터 일본 정부의 금융 긴축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의 도산이 속출하였고 대기업에서도 기업정비를 비롯해 기업의 합리화가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저임금정책이 되면서 비교적 봉급에 비해 능률이 낮은 여성부터 먼저 고용기회를 박탈하였다. 결혼한 여성은 신분상 독신으로 처리하고 수당을 주지 않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 여성이 신규 입사하는 경우 결혼 전까지만 임시고용으로 근무하는 형태로 처리하고 퇴직연령은 25세, 30세, 35세, 40세 등으로 정하는 것을 고용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하며 노동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공공연히 삽입하기도 하였다.<sup>35)</sup>

입사 시에 결혼퇴직을 강요하고, 결혼하면 바로 회사를 그만두게 하거나 임시공으로 채용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고 맞벌이일 경우 여성을 우선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사항을 취업규칙에 삽입하였다. 예를 들면 1952년 3월 니가타현의 어느 공장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출산하면 그만두는 것을 노동협약 안에 삽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노사 간에 2년 넘는 다툼 끝에 1954년 결국 조합 전체회의 석상에서 다수결로 가결 승인되었다.<sup>36)</sup> 여성조합원이 적은 조합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의 노동을 결혼이나 출산 전까지의 것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일반화되어 결혼한 여성을 기피하는 것이 인식의 근거에 있었다. 다음은 여성전문직업안정소로 1954년 가을 발족한 도쿄 간다바시(神田橋) 여자공공직업안정소장 아라이 이와오(新井巖)와 다니노가 1955년 나눈 대담의 일부이다. 당시의 여성노동자 고용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다니노 세쓰: 패전 직후, 여성이 남녀동권, 절대평등이라는 여성해방의 목소리가 강했을 때는 사용자 측도 참가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동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률상 큰

34) 谷野せつ, 「最近における婦人職業の進出について」, 『職業研究』6(12), 1952년, 17頁.

35) 谷野せつ, 「昭和29年労働問題の回顧」, 『職業研究』8(12), 1954년, 13頁.

36) 谷野せつ, 위 논문, 13頁.

문제가 없다면 괜찮다는 식으로 직장의 문을 여성에게만 단단히 닫으려고 합니다. 아라이 이와오: …… 사업주 중에는 최근 ‘가정의 착한 아가씨를 가능한 한 채용하고 싶다. 가정 형편이 곤란한 사람은 일단 거부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금전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보험업 등의 경우에 실수가 많은 것은 생활 곤궁자 쪽이 역시 많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가정적으로 유복한 사람은 시집갈 확률이 높아서 바로 회사를 그만둘 수 있고, 그러면 새로운 싼 노동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sup>37)</sup>

이 담화는 1955년이라는 시점에 이미 남녀동권, 절대평등은 경제적인 영향으로 실효성이 낮아져 공공연히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가정적으로 유복하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생계를 위해 일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인식은 가정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결혼할 확률도 높아 결혼하면 바로 결혼퇴직으로 이어져 새로운 싼 노동력으로 대체할 수 있기에 가정형편이 곤란한 사람은 거부하고 있었다. 산업이 발전하고 노동력의 수요가 증대되어도 여성의 사회 진출과 노동시장을 제한하는 것은 여성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그 근저에 있었다. 그래서 여성노동자는 물론이고 “노동자도 사용자도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부인의 고용과 노동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의식에도 불철저한 경향이 있고 직업에 대해서 필요한 지도와 원조가 결여되어 그 결과 부인의 능력과 능률 향상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았다.<sup>38)</sup>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오랜 기간 부인이 일하는 것을 멸시하는 경향”이 뿌리 깊게 남아있었고 이러한 잘못된 사회관은 여전히 “가정이나 사회의 한편에 남아 부인노동자 자신도 그 영향으로 인해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노자관계에 대한 이해에도 무관심”한 경향이 있었다.<sup>39)</sup>

## 5. 나가기: 보호와 평등의 경계에서

본 연구는 패전 직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였다. 이 시기는 1945년 8월 패전 직후부터 점령기를 거쳐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발효와 한국전쟁특수 등 굵직한 이슈와 함께 전후 신헌법 아래에서 여성참정권과 노동기본법, 노동조합법, 남녀동일임금의 원칙 등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이 주창된 시기이다. 한편, 전전과는 다른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확립되었다. 하지만, 여성노동에 관한 다년간 축적된 사고방식이나 직장의 관행이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니었다.

전후 10년이 지난 1956년 다니노는 여성노동자의 위치에 대해 “급하게 기세 좋게 개방되어서 부인이 실력을 기를 여유가 없었고, 현재 어느 정도 안정되고 보니 결국은 남자의 실력이 눈에 띄게 성장해서 부인은 그 그림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한다.<sup>40)</sup> 남녀동일임금의 원칙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지만, 가정을 벗어난 여성의 노동을 ‘여자

37) 谷野せつ, 「昭和29年労働問題の回顧」, 『職業研究』8(12), 1954年, 42頁.

38) 谷野せつ, 「婦人と職業」, 『職業指導』25(2), 1952年, 71頁.

39) 谷野せつ, 위 논문, 71頁.

40) 谷野せつ, 「働く婦人のために」, 『職業研究』679, 1956年, 24頁.

의 본질’로 보지 않는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이 남녀 임금차별과 여성의 결혼퇴직, 조기퇴직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이미 사회에서 “신앙의 상태까지 단단해져 버려서 그것이 미치는 결과를 실증하거나 반추하거나 할 수도 없을 만큼 강한 사회의 통념”이 되어 있었고,<sup>41)</sup> 한편으로는 남성과 여성의 능력과 생활상의 차이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관례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는 것을 의미했다.<sup>42)</sup>

나아가 이러한 사회의 통념은 전후 일본의 여성노동자 스스로도 내재화하여 노동기본법에서 보장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생활 개입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된 기숙사의 자치조직에서도 여성노동자는 스스로 자치위원으로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사생활이 침해당해도 문제로서 제기하지 못했다. 노동조합법이 성립되어 여성노동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해도 조합의 안건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합의 활동에서 멀어져 주변화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일본 여성은 패전 직후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의 바람을 타고 노동시장의 중심에 기세 좋게 등장했다. 그러나 이후 산업 경제적 변화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남성의 그림자로 밀려나 평등의 경계에서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남성노동자보다 능력과 능률이 떨어져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가 아닌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고 그래서 연소자와 함께 ‘보호’의 경계 안에 가두어두고자 하였다. 그것은 여성의 영역을 어머니와 주부라는 가정의 영역으로 국한하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의 단면으로 동시에 여성노동의 한계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현대 일본에서 젊은 여성들이 자주 인용하는 죠시료쿠(女子力)<sup>43)</sup>라는 표현이야말로 ‘여자의 본질’을 한마디로 대변해주는 용어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동 전문가인 다니노 세쓰의 기록을 중심으로 전후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 한계를 살펴보았다. 금후의 과제는 다니노 세쓰의 전전 기록과 전후 기록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보호와 평등의 관점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전전과 전후의 연속과 단절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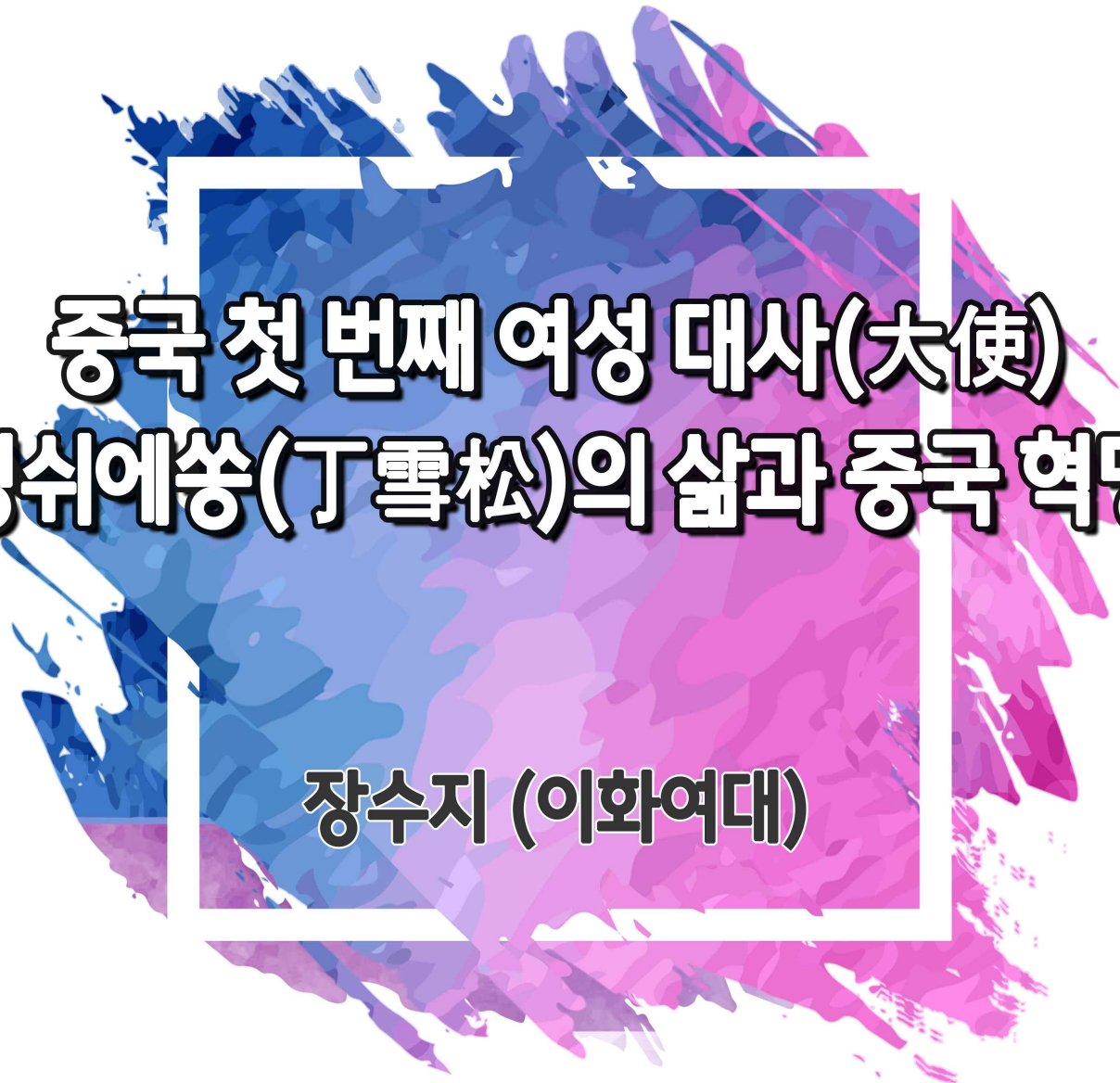
41) 谷野せつ, 「感想 婦人と賃金」, 『労働時報』1(6), 1948年, 7頁.

42) 「座談会婦人と労働法」, 『婦人の世紀』7, 1948年, 26頁.

43) 죠시료쿠(女子力)란, 여성스러움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여성이라는 것을 자신의 아이덴티티로 해서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힘을 개념적으로 이렇게 부른다. 주로 여성스러운 태도와 용모, 여성만의 감각이나 능력을 살리는 것을 가리킨다. 남성판으로 단시료쿠(男子力)라는 단어도 있다. <https://ja.wikipedia.org/wiki/%E5%A5%B3%E5%AD%90%E5%8A%9B> (검색일 2023.06.25.)



## 제3발표



# 중국 첫 번째 여성 대사(大使) 딩쉬에송(丁雪松)의 삶과 중국 혁명

장수지 (이화여대)





# 중국 첫 번째 여성 대사(大使) 덩쉬에송(丁雪松)의 삶과 중국 혁명의 일면

장수지(이화여대)

## 1. 들어가며

덩쉬에송(丁雪松, 1918-2011)은 중화민국 초기, 오사운동의 전야에 충칭의 작은 도시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중일전쟁시기 공산당원으로 청년기를 보내고, 60세가 넘어 중국의 첫 번째 여성 대사로 네덜란드와 덴마크에 부임하였다. 덩쉬에송이 옌안(延安)에서 만나 결혼한 정율성(鄭律成)은 전라도 광주 출신의 작곡가로 한국에서는 이미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그를 기념하는 음악회가 개최되는 등,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sup>1)</sup> 광주에는 정율성 생가 주변으로 정율성 거리도 조성되어 있다.<sup>2)</sup> 북한과 중국 양국의 군가를 작곡한 정율성의 업적에 대해서는 특히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의 곡도 중요한 행사에서는 항상 연주되는데,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그의 음악 및 사상, 생애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sup>3)</sup>

- 1) 상세한 언론보도 기사로는 하성봉의 『미디어오늘』에 실린 2012년 시리즈 기사가 대표적이다. 하성봉, 「조선인 음악가 '정율성' 중국 또 하나의 보물 - 중국·북한 2개국 군가 작곡」, 『미디어 오늘』, 2012.1.13.; 하성봉, 「정율성이 고향 광주로 못하고 북으로 간 까닭은」, 『미디어 오늘』, 2012.1.27. 등. KBS에서는 2012년 1월 15일 <13억 대륙을 흔들다, 음악가 정율성>이라는 제목을 정율성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는데, 애초에 2011년 8월 14일 <KBS 스페셜>로 방송되려다가 KBS이사회에서 '친북'이라는 이유로 편성되지 못했다가 해를 넘겨 방송되었다.(관련 기사 - 김원정, 「KBS '정율성 다큐' 심의, 방송학회 이관 - 방통심의위 "공정성 위반 여부 방송학회 의견 물어 결정"」, 『뉴스토마토』, 2012.4.6.; 김수정 「정율성·이승만·백선엽·박정희...KBS역사프로 '논란의 역사」, 『미디어스』, 2015.9.17.). 정율성 관련 방송으로는 광주MBC의 <정율성, 항일운동에 가담한 형들을 따라 중국으로 이주한 음악가> (2019.10.14.); <배우 장현성이 들려주는 정율성 이야기: 조선인 음악가 정율성, 그가 조선에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 [특집다큐 정율성의 인생극장] 제1부>(2019.3.17.); <배우 장현성이 들려주는 정율성 이야기: 중국인인가 조선인인가? 음악으로 조국의 독립을 추구했던 정율성[특집다큐 정율성의 인생극장] 제2부>(2019.3.17.)이 있다. 이들 다큐멘터리에는 덩쉬에송과 그의 딸 덩샤오티(鄭小提)가 직접 인터뷰에 등장하여 정율성에 대해 회고하였다.
- 2) 이에 대해 공산당원이자 북한 노동당원을 기리는 것이라는 국내의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박종인, 「광주 '정율성로'에는 왜 정율성이 지은 '북한 군가'가 없는가 - 공과 과 모두 있어야 하는 역사의 평가」, 『조선일보』, 2022.10.30.; 박희석, 「'6·25 남침' 때 '중·북 군가 작곡자'를 추앙하는 光州- 민주·평화·인권 도시가 남침독려, 독재자 찬양 인사 기리는 '모순'」 『월간조선』 2022.8.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2208100034>) 등.
- 3) 김성준, 「작곡가 정율성의 출생지에 대한 고증」, 『한국음악사학보』, 2006; 양희석, 「정율성 오페라 <望夫雲>의 내적 의미」, 『중국인문과학』39, 2008; 노기욱, 「정율성 음악의 사상적 지향」, 『역사학연구』37호, 2009; 김주용, 「정율성(鄭律成)의 생애와 항일민족운동」, 『동국사학』51, 2011 등.

정율성과의 인연으로 덩쉬에쑹은 한때 평양에서도 생활했고, 1990년대 후반에는 정율성 음악회와 기념 거리 조성 등을 계기로 한국에도 방문하였다. 광주시와 자주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덩쉬에쑹이 타계했을 때, 광주시에서는 직접 찾아가 조문하였다.<sup>4)</sup> 한국(남한)에서는 보통 정율성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과의 직접적인 접점은 남편이 광주출신이라는 점이다. 이 인연 때문에 덩쉬에쑹 본인이, “어떤 면에서는 한국도 나의 고향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으나,<sup>5)</sup> 정율성과 관련된 일 외에는 한국에서 다른 활동을 펼친 것은 없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로 보면, 그는 해방직후 평양에서 지내면서 1947년부터 1950년까지 중국과 북한 사이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다.<sup>6)</sup> 1950년 중국으로 귀국했지만, 문화대혁명이 끝난 뒤인 1984년에도 전국정협위원의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sup>7)</sup>

그의 전 생애를 통틀어 중요한 이력은 외교관으로서의 활동이다. 1979년 네덜란드에 특명전권대사로 부임했고, 다시 1982년 덴마크와 아이슬란드에서도 대사직을 맡아 활동했다. 대사가 되기 전에도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라는 단체의 부회장으로서 북유럽 다섯 나라를 순회하기도 하였다.<sup>8)</sup> 대사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나서 다시 동남아와 유럽, 중남미 여러 나라에도 민간 외교의 이름으로, 대외우호협회 등을 이끌고 방문했다.<sup>9)</sup> 외교관으로서의 생애는 정율성이 1976년 세상을 떠나고 난 뒤, 개혁개방 이후에 시작되었고, 아시아지역이나 강대국으로 파견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지 “중국 최초의 여성 대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에서는 잘 알려진 편이 아니다.

스물세 살이었던 1937년 공산당에 가입하였고 항일군정대학에서는 촉망받는 여성대장이었다. 널리 알려진 중국의 여성 혁명가들, 허샹닝(1878-1972), 쑹칭링(1893-1981), 차이창(1900-1990), 덩잉차오(1904-1992) 등에 비해서는 어린 세대에 속하여, 신해혁명이 일어난 뒤 태어났고, 오사운동 시기에는 2살로 어린 편이었다. 그가 공산당에 입당하던 시기는 이미 공산당이 국민당과의 군사적 충돌을 경험하고 마오쩌둥의 노선 아래 각지에 혁명 근거지를 만들고 있던,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였다. 즉 그는 앞서 언급한 혁명가들처럼 당을 만들고 성장시키는 과정에 함께했다기보다 이미 공산당이 만들어낸 조직에서 간부로서 훈련받으며 공산당의 중요한 인재로 성장한 쪽이었다.

당시 여성공산당원들은 대개 ‘부녀공작(婦女工作)’이라고 불리는 여성 동원과 여성 권익에 관련된 일에 연관되곤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덩쉬에쑹은 여학생대장이었던 경력과 외에는 여성 관련 활동에는 이력이 없다. 본인 역시 여성해방과 관련된 발언을 하지도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남편이 고초를 겪은 것을 제외하면 복잡한 정치적 사건에 휘말리는 일도 거의 없었다. 평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의 인생은, 당에서 맡겨진 역할이 중앙정치나 국내의 여러 혁명운동보다는 주로 외교 활동에

4) 박부길, 「정율성 선생 妻, 정설송(丁雪松) 여사 타계, 광주시 애도 뜻 전달」, 『광주일등뉴스』, 2011.6.5.(<http://www.igj.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20>).

5) 梁茂春, 「历尽磨难与音乐相伴——《丁雪松谈郑律成》整理后」, 『天津音乐学院学报』2012(02), 20쪽. 이 글은 이하 「整理后」로 적는다.

6) 정설송 엮음, 『중국인민해방군가의 작곡가정률성 ① 그의 삶』, 형상사, 1992, 106-109쪽.

7) 杨德华, 「天涯何处无芳草——访全国政协委员丁雪松」, 『国际人才交流』1990(03), 27쪽.

8) 孟红, 「持节才女女中杰——新中国首位女大使丁雪松外交二三事」, 『福建党史月刊』2011(13), 50쪽.

9) 杨德华, 앞의 글, 28쪽.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모범적인 공산당원이었고, 또한 국제결혼과 외교라는 특징을 지닌 그의 삶은, 중국현대사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비교적 최근까지 살아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덩쉬에쑹에 대한 연구로는, 연구라기보다는 기록물, 기사, 주변인의 인터뷰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덩쉬에쑹 생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국면과 최근 그에 대한 중국 언론의 재현을 함께 보면서 그의 삶이 근현대 중국사와 한중관계사에 던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 2. 민족과 전쟁의 갈등 속에서

덩쉬에쑹은 1938년 봄, 옌안에서 조선 출신의 작곡가 정율성과 처음 만났다. 정율성은 중국항일군정대학 정치부의 음악지도(指導)였고, 항일군정대학 여학생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곤 하면서 덩쉬에쑹과 자주 접촉하게 되었다. 덩쉬에쑹 역시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정율성과 서로 통하는 면이 많았다고 한다. 1938년 가을, 정율성이 먼저 덩쉬에쑹에게 꽃이나 책을 건네는 등의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했고, 둘은 연인관계가 되었다.<sup>10)</sup>

그런데 1939년 여름, 정율성은 정치적으로 의심을 사기 시작했다. 그의 출신이 조선이기 때문에 일본의 스파이로 의심을 받고 있었다.<sup>11)</sup> 덩쉬에쑹은 정율성에 대해 아무런 의심이 없었으나 주변에서는 그들의 연애를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했다. 특히 당 조직의 책임자가 덩쉬에쑹에게 찾아와 “당신은 여동지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공들여 성장시켰고, 당신의 능력은 매우 강한데, 왜 ‘간첩혐의’가 있는 사람과 잘 지내는가? 이것은 당신의 밝은 앞날을 망치게 될 것이다.” 라거나, “너처럼 이렇게 좋은 조건의 사람이 조선인과 사귀다니, 아깝다! 조선인은 정치이력이 복잡하니 조사해도 확실히 밝힐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sup>12)</sup> 이로 인해 두 사람의 연애는 1년 넘게 멈춰있을 수밖에 없었다. 대장정에 참가한 유일한 조선인인 무정(武亭)은 덩쉬에쑹에게 정율성의 일가가 모두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그 형은 중국에서 희생되었으며, 개인적으로 그 형도 잘 알고 있다고 하며 안심시켰다.

1940년 덩쉬에쑹은 산간닝변구(陝甘寧邊區)의 환더(緩德) 선거공작단의 부단장을 맡아 잠시 옌안을 떠나 선거공작을 했다. 1년여 후 옌안에 돌아온 뒤 그는 당시 중앙조직부장인 천원(陳云)에게 정율성이 스파이인지 물었으나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그 자리에서 덩쉬에쑹은 우리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묻자 그가 결혼은 각자의 일이니 조직에서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덩쉬에쑹은 바로 정율성에게 달려가 “우리 결혼합시다!”

10) 정설송 엮음, 앞의 책, 77-80쪽; 梁茂春, 「丁雪松谈郑律成」, 『天津音乐学院学报(天籁)』2012(2), 6쪽.

11) 덩쉬에쑹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소련에서 벌어진 대규모 숙청과 연관되어 있었다. 소련에서 조선인 중 볼셰비키파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베리아에 있는 조선혁명가들을 모두 숙청했다. 이 소식이 옌안까지 전해지자 중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소련에서는 곳곳에서 스파이를 잡아들였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파이들을 검거하게 되었다. 소련 당국은 소련에서 혁명에 참가하는 조선인들을 일본 스파이로 의심했고, 중국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이다(梁茂春, 앞의 글, 6쪽).

12) 梁茂春, 앞의 글, 7쪽.

라고 말했다.<sup>13)</sup>

그들은 1941년 말에 결혼했고, 1943년에 아이를 낳았다. 덩이 눈길을 건다 미끄러지면서 8개월 만에 조산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 때 정율성은 타이항산(太行山)에 가 있었다. 아이는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고, 덩은 조산(早産)으로 젖이 나오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정율성이 예전이 국민당 통치지구에서 연안으로 힘들게 가지고 들어온 바이올린을 팔아 어미양과 아기양을 사와서 그 젖을 딸에게 먹였다. 그 바이올린을 기념하기 위해 딸의 이름을 샤오티(小提, 중국어로 바이올린을 뜻하는 小提琴의 앞 두 글자를 딴 것이다)라고 지었다.

정샤오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덩쉬에송은 예안정풍운동(延安整風運動)에서 고초를 겪었다. 쓰촨 출신의 당원들 중 지하당 출신들이 “국민당 스파이”였다는 의심의 시선을 받게 되었다. 의심받은 쓰촨의 청년 20명이 동굴 하나에서 생활하며 지냈는데, 당시 그의 딸은 태어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감금된 사람들이 함께 딸을 돌보았다. 이 때 정율성은 타이항산에 가서 조선의용군의 일원이자 화북조선혁명군정학교의 교육장(敎育長)으로, 여러 차례 전투에도 직접 참여하면서 일본군과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연안에 있지도 않은 그에 대해서도 루쉰예술학교가 “일본 스파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기까지 했다.<sup>14)</sup> 즉 부부가 모두 스파이로 의심 받은 것이다.

덩쉬에송은 국민당 스파이 혐의를 입은 채로 농촌에서의 혁명 운동을 계속했다.<sup>15)</sup> 임무는 많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1944년 마침 정율성이 전선에서 연안으로 돌아왔다. 덩쉬에송은 이 때부터 딸을 정율성에게 맡기고 본인의 임무에 열중하게 되었다. 딸이 큰 병에 걸렸을 때에도 덩쉬에송은 한 번 보러 갔을 뿐이었고, 정율성이 주사를 놓고 약을 먹여서 살려냈다.<sup>16)</sup> 그런데 정율성의 스파이 혐의는 전선에서 돌아온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었다. 정율성은 루쉰예술대학의 당시 지도자를 찾아가서 본인이 스파이인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고, 스파이인 증거는 없으나 소자산계급 사상이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나 그 혐의를 지워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상급에서 결정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을 뿐이었다.<sup>17)</sup>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한 뒤 두 사람은 조선으로 가기로 결정했고, 조선으로 가기 전, 덩쉬에송은 리웨이한(李維漢)에게 찾아가 그들 부분에게 정치적 결론을 내 달라고 했고, 저우양(周楊)<sup>18)</sup>으로부터 두 사람 모두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게 되었다.<sup>19)</sup>

그런데 이들에 대한 정치적 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조선으로 가서, 조선

13) 梁茂春, 앞의 글, 7쪽.

14) 덩쉬에송 본인이 이러한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梁茂春의 구술 채록에서 이야기했으며(梁茂春, 8쪽), 딸 정샤오티는 이 채록을 보고나서야 연안 시기 부모가 겪은 고초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梁茂春, 「整理后」, 106쪽).

15) 梁茂春, 앞의 글, 8쪽.

16) 정설송 엮음, 앞의 책, 98-101쪽. 정샤오티도 자신은 “아버지 슬하에서 자랐다”고 회고하였다(정소제, 「아버지를 회억하여」, 『중국인민해방군가의 작곡가정률성 ① 그의 삶』, 형상사, 1992, 209쪽).

17) 梁茂春, 「丁雪松谈郑律成」, 『天津音乐学院学报(天籁)』2012(2), 9쪽.

18) 당시 루쉰예술대학학장, 연안대학장.

19) 梁茂春, 앞의 글, 9쪽.

노동당에 가입했고, 김일성으로부터도 신임을 얻어 그의 집에 자주 찾아가기도 했다. 그런데 1947년 덩쉬에쑹이 중국신화사(中國新華社) 주평양분사 사장을 맡게 되자, 김일(金一)<sup>20)</sup>이 정율성을 찾아가 “당신은 이제 군사기밀부문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정율성은 당시 조선인민군구락부 부장으로 조선인민군 오케스트라를 조직하고 단장을 겸임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군을 떠나 음악대학 작곡가로 이전하게 되었다.<sup>21)</sup>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덩쉬에쑹은 폭격을 피해 밤에 원고를 써서 보내고, 낮에 산으로 가서 자는 생활을 반복하다 건강이 나빠지자 저우언라이에게 편지를 보내 정율성과 함께 귀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저우언라이는 허락하고, 덩은 딸 샤오티와 함께 먼저 중국으로 돌아오게 된다.<sup>22)</sup> 보다 근본적으로는 덩과 정은 둘이 함께 조선에 남을지, 중국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이 부부는 함께 중국에 돌아가 일하기로 결정했다. 1950년 7월, 북조선주재 동북행정위원회 상업대표단이 철수할 때 덩쉬에쑹은 저우언라이에게 정율성의 당적을 중국공산당으로 다시 고치고 국적도 중국국적에 넣어달라고 요구하였다.<sup>23)</sup> 이들이 중국으로 귀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도 존재하는데, 즉 저우언라이가 북한에 있는 연안파에 대한 숙청을 염려하여 중국으로 돌아오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덩쉬에쑹의 회고에는 저우언라이 측의 고려 혹은 계산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당시의 정황상 덩쉬에쑹 개인의 필요와 저우언라이의 배려가 동시에 작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으로 돌아온 뒤 정율성은 줄곧 자신이 생각하는 혁명과 군중을 위한 작곡활동에 매진하였는데, 그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사고와 언행으로 분파주의, 우경, 반당 등의 이름을 얻기 일쑤였다. 그 중에는 농촌에서 농민들과 함께 지내며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 임시로 지은 작은 간이 건물을 “자산계급 생활방식”을 하는 “별장”이라고 하는 모함에 가까운 비판도 있었다.<sup>24)</sup>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조반파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는 당시 아무런 관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권파”로 몰리지 않았고, 그래서 얻어맞지도 않았다. 그러나 4인방으로부터 배척당했기 때문에 창작활동을 하더라도 대중에게 선보일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는 이 기간에 자주 덩쉬에쑹에게 “중국인은 나를 조선인으로 보고 조선인들은 나를 중국인으로 본다. 내가 어떻게 해도 다 안 된다. 나중에 대홍안령에 가서 개황하고 씨뿌리며 살면 그만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sup>25)</sup> 정율성의 이 말은 그 부부가 처해있던 곤경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율성은 1950년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하면서 덩에게 “나는 국제주의자로서 조선에서나 중국에서나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사업에 몸 바치려 하오.”라고 말했으나,<sup>26)</sup> 현실은 몇 십 년에 걸쳐 “스파이”라는 누명이 늘 그를 위협하고 있었다.

덩쉬에쑹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에는 정율성과 같은 누명과 고초를 입은 적은 없

20) 조선노동당의 지도자. 1949년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조선인민군정치부주임이 된다.

21) 梁茂春, 앞의 글, 9쪽.

22) 앞의 글, 10쪽.

23) 정설송 엮음, 앞의 책, 109쪽.

24) 梁茂春, 앞의 글, 12쪽.

25) 梁茂春, 앞의 글, 13-14쪽.

26) 정설송 엮음, 앞의 책, 109쪽.

다. 문화대혁명 기간에 잠시 외교사업에 간섭을 당하여 일을 지속하지 못한 기간은 있었으나 저우언라이의 도움을 받아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풍운동시기 스파이라는 의심을 받으면서도 당에서 그에게 부과한 임무를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자신의 딸은 돌보지 못하고 일반 민가에 맡기려고까지 생각했다.<sup>27)</sup> 아이는 정율성에게 맡겨두고 다른 혁명 근거지로 가서 선거와 정권 기초 사업 등에 투신했다.<sup>28)</sup>

이들이 겪은 양국에서의 어려움과 배제는 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사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출신으로 인해 오해나 혐의를 입고 자신들이 투신하고자 했던 혁명의 동료들에게 존중받지 못했다. 이것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서라면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내부의 희생양 만들기였다고 볼 수도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제주의를 표방하던 중국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이 실제로 이들에게 취했던 태도는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설정하고 그 외부에 타자를 설정하여 배척하는 것이었다. 연안이라는 혁명의 성지에서도, 새롭게 건설된 북한 정권 하에서도 국제결혼은 민족 관념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어쩌면 덩쉬에쑹이 평생에 걸쳐 당에 순종적이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곤란함을 겪으면서 체득한 태도가 아니었을까. 재미있는 점은 정율성은 덩쉬에쑹과 달라서 다른 사람의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당의 노선에 대해 독자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정율성에게 ‘우경’이라고 비판하는 덩쉬에쑹에게 ‘노예주의’라고 비판하곤 했던 것이다. 덩쉬에쑹은 정율성이 ‘우경’오류를 범해서 무슨 일을 당할까 걱정했지만, 정은 ‘내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도요’라고 했을 뿐이었다.<sup>29)</sup> 덩쉬에쑹은 정율성에 비해 현실감각이나 정치적 감각이 우선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 3. 대외활동

덩쉬에쑹은 본인의 삶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세 번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 세 번은 모두 중국의 외교와 관련된 일이었다. 첫 번째는 1949년 신중국 성립 전야, 신화사 駐평양 분사 사장으로 임명된 것이었다. 덩은 한 번도 신문 관련 일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갑작스럽다고 느꼈다. 두 번째는 1964년 국무원 외사판사실 비서장을 맡게 된 것이었다. 당시 덩은 외사판공실 비서조 조장이었으나 자신이 비서장이라는 중임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외로 여겼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79년에 대사가 된 일이었다.<sup>30)</sup>

그는 외교사무를 좋아했고, 1945년 이후 조선으로 간 뒤 줄곧 외교 관련 업무를 해 왔

27) 정설송 엮음, 앞의 책, 98쪽.

28) 丁雪松、丁汾、鲁燕, 「在“三三制”抗日民主政权选举中经受锻炼— 回忆女大绥、米选举工作团」, 纪念延安女大五十周年筹委会编, 『延安女大』, 1989, 116-125쪽.

29) 정설송 엮음, 앞의 책, 127쪽; 梁茂春, 「丁雪松谈郑律成」, 12쪽.

30) 方连, 「我国第一位女大使—记丁雪松外交生涯片断」, 『世界知识』1987(05), 23쪽.

다. 1944년에는 중공중앙서북국연구실(中共中央西北局研究室)에서 연구원으로 지내던 덩은 정율성이 화북조선혁명군정학교(華北朝鮮革命軍政學校)의 일을 하던 중, 일본이 패망하자 조선으로 가기로 했다. 1947년 봄 북조선노동당중앙화교사무위원회 비서장을 시작으로 1948년에는 동북행정위원회 주조선 상업대표단 건립에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1948년에는 북조선화교연합총회 위원장이 되었고, 1949년에는 동북행정위원회 주조선 상업대표단 대표가 되었다.<sup>31)</sup> 신화사 주평양분사 사장으로 있을 때에는 전쟁 중의 북한 여성들의 용감한 활약에 대해 중화전국민주부녀연합회의 기관지인 『中國婦女』에 기고하기도 하였다.<sup>32)</sup>

1950년 다시 중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그는 주로 외교 업무를 맡았다. 중앙대외연락부에서부터 국무원 외교사업판사처까지, 왕자샹(王稼祥)부장과 저우언라이와 함께 일했다. 1952년 중공중앙 국제활동 지도위원회판사처 주임으로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거행된 아시아아프리카 여성회의에 참가했다. 1958년과 1960년에는 중국 여성대표단 일원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방문했고,<sup>33)</sup> 1961년에는 당시 전국부련 부주석이었던 쉬광핑(許廣平)이 이끄는 중국 여성대표단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했다.<sup>34)</sup>

1958년 국무원 외교사업판사처가 설치되자 비서실 조장으로 부임하였다.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에서 비서장과 부회장이 되었다. 1970년대에는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대표단을 이끌고 북유럽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방문했고, 국가예술단을 인솔하여 프랑스와 캐나다 등에 방문하기도 했다.<sup>35)</sup> 이러한 ‘민간’<sup>36)</sup>외교 사업을 10년 가까이 하면서 이 일을 매우 좋아했고 중국과 세계 각국인민의 우의와 이해에 공헌하는 데 여생을 바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sup>37)</sup> 그런데 덩의 표현대로라면 생각지도 못하게 대사가 되어 네덜란드에 부임하였다.

딩쉬에쑹이 대사가 된 배경에는 경력이 풍부한 외교가 친자린(秦加林)의 추천이 있었다고 한다.<sup>38)</sup> 그는 1977년 8월 31일 덴마크에 대사로 부임했는데, 그곳에서 여성대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특히 코펜하겐의 대사들 중 영국의 여성대사, 유고슬라비아와 이란의 여성 대사가 유능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

31) 정설송 엮음, 앞의 책, 106쪽; 丁雪松, 倪振, 齊光, 中共中央党史资料征集委员会 中国人民解放军辽沈战役纪念馆建馆委员会 《辽沈决战》编审小组编, 「回忆东北解放战争期间东北局驻朝鲜办事处」, 『遼瀋決戰』上, 발간년도미상, 626쪽.

32) 丁雪松, 「朝鮮婦女在愛國解放戰爭中的偉大貢獻(1951.1.25.)」, 『中國婦女』, 1951.2. 28-30쪽.

33) 孟紅, 「持節才女中杰——新中国首位女大使丁雪松外交二三事」, 49쪽.

34) 范語晨, “机遇使我成为排头兵”——中华人民共和国第一位女大使丁雪松[J]. 传记文学, 2023(03), 15쪽.

35) 孟紅, 앞의 글, 49쪽.

36) 저우언라이의 표현으로,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국가들과 우호협회 등의 이름으로 방문하고, 예술공연을 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에서 파견하는 단체들은 대개 국가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고 덩쉬에쑹 역시 공직이나 다름없는 지위에서 단체를 인솔해 간 것이었다.

37) 方连, 「我国第一位女大使——记丁雪松外交生涯片断」, 23쪽.

38) 친자린은 1962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신문사부사장으로 일했으며 후에는 사장이 되었다가 1977년 덴마크 대사, 1982년 모로코 대사로 일했다(<https://zh.wikipedia.org/wiki/%E7%A7%A6%E5%8A%A0%E6%9E%97>). 그는 덩쉬에쑹과 외교부에서 이미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孟紅, 앞의 글, 50쪽).

부회장이었던 덩쉬에쑹이 대표단을 이끌고 북유럽 5개국을 방문했고, 코펜하겐에서 친자린을 만났다. 친자린은 반은 농담, 반은 진담으로 “여기 여성대사들이 많은데 당신도 여성대사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친자린은 정식으로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여성대사를 선발할 것을 건의하였다. 2년 뒤 덩쉬에쑹은 공푸성(龔普生)과 함께 중국의 첫 번째 여성대사가 되었다.<sup>39)</sup>

처음으로 부임한 곳은 네덜란드이고, 1982년에는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두 개 나라의 대사로 활동하였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덴마크의 칼스버그 맥주공장의 기술을 중국에 들여와 베이징에 대규모의 병맥주 공장을 설립한 것이다. 이외에도 무이자 차관을 들여와 헤이룽장성에 유제품공장을 세워서 분유를 공급하였다. 또한 상하이 조선(造船)공장과 전장(鎮江) 디젤엔진 공장은 1980년대 덴마크의 기술과 중국의 기술자들이 합작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에 덩쉬에쑹의 노력이 담겨있다는 평이다.<sup>40)</sup> 그의 이러한 노력은 인민생활에 대한 관심과 해외 기술 및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했던 중국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실현한 결과였다. 그는 덴마크에서는 “맥주대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그는 대체로 당으로부터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편이었고, 자신의 공로에 대해 겸손하게 표현하였다. 90세가 다 되었을 때 부련에서 그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을 때,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都是应该的)”라고 대답했다고 한다.<sup>41)</sup>

그의 외교활동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중요한 사건은 1996년에 정율성이 가지고 있었던 고전 악보 - <종묘제악(宗廟祭樂)>, <연악(宴樂)> - 와 수집하고 기록한 조선민가악보를 한국에 전달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에 온 것이다.<sup>42)</sup> 그가 왜 북한이 아닌 한국에 정율성의 유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는지는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덩은 스무 살 때부터 오랜 기간 공산당 중앙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어느 곳에서든 충실히 활동해왔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맺고, 몇 년 지나지 않은 시기였고, 정율성과 그의 관계는 한국과 중국의 우호관계의 역사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유품을 한국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의 의도였을까 아니면 본인의 생각이었을까? 양자는 분리할 수 있는 것일까?

1951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보낸 원고에서 남한을 ‘괴뢰통치’라고 표현했던<sup>43)</sup> 그가 이제는 “한국도 어느 정도 나의 고향인 셈이다”라고 말하기까지 어떠한 사고의 전환을 겪었던 것일까?

#### 4. 중국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덩쉬에쑹

39) 孟红, 앞의 글, 50쪽.

40) 孟红, 앞의 글, 50-51쪽.

41) 孟红, 앞의 글, 51쪽.

42) 梁茂春, 「整理后」, 19쪽. 고전악보는 1950년대 초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북한이 서울로 진공했을 때 정율성이 서울의 폐허에서 찾아내 소장하고 있던 것이었다.

43) 丁雪松, 「朝鮮婦女在愛國解放戰爭中的偉大貢獻(1951.1.25.)」, 『中國婦女』, 1951.2. 28쪽.



여기서는 덩쉬에쑹에 관한 짧은 다큐멘터리 세 편과 2002년 개봉된 영화 <태양을 향해(走向太阳)>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큐멘터리는 세 편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4분에서 6분 정도의 짧은 길이로 되어있다. 짧기 때문에 그만큼 메시지도 단순한 편이며, 덩쉬에쑹의 생애도 축약되어 있다.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각각 <丁雪松拿出积蓄用作学校建设, 木洞的教育旧貌换新颜 | 记住乡愁>(중국랴오닝성위성티비공식채널)<sup>44)</sup>, <党的女儿 Ep.60 丁雪松 中国第一位驻外女大使>(MangoTV 영화극장)<sup>45)</sup>, <講巾幗英雄故事: 丁雪松>(CCTV14少兒)<sup>46)</sup>이다. 첫 번째 다큐멘터리는 덩쉬에쑹이 어렸을 때 새로운 문화를 처음 접한, 고향 쓰촨의 木洞을 잊지 않고 있다가 1984년, 고향의 교육 사정이 열악하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를 지어주었다는 내용이다. 덩쉬에쑹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다. 그의 생애에 대해 가장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채널에서 방영된 세 번째 다큐멘터리인데, 어렸을 때 다닌 학교에서부터, 청년기에 항일운동을 했던 것, 조선에 가서 일한 것, 이후 대사로 네덜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에 부임하고 “맥주대사”의 이름을 얻은 일까지 단순히 나열하여 소개하였다. 영상화된 위인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의 딸>이라는 시리즈 중 하나에서 재현된 덩쉬에쑹은 항일전쟁시기의 혁명가의 모습 보다는 대사가 된 뒤의 활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총 6분 25초의 영상에서 2분 8초 이후에는 모두 국제관계에 힘을 쏟은 이야기이다. 특히 치파오를 입고 네덜란드 대사관의 행사에 참석하여, 중국의 문명과 진보적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한다. 덩쉬에쑹의 치파오 차림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기록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시작장면에서부터 치파오를 입혀놓은 마네킹들 사이를 한 여성이 걸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중간중간 중국의 전통적 거리를 치파오 차림의 여성이 걸어가는 모습 등 이미지 영상이 삽입되어 덩쉬에쑹의 이미지를 치파오로 각인시키고자 한다. 또한 덩쉬에쑹이 어떻게 하면 새롭게 흥기하는 중국의 모습을 전세계에 보여줄지 고민한 결과 치파오를 입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도 넣으면서, 새로운 중국의 모습과 중국 여성의 이미지도 연결시킨다. 즉 새로운 중국의 여성은 더 이상 군인들이 입는, 혁명을 상징하는 단조로운 색의 옷을 입지 않으며,<sup>47)</sup> 여성스러움과 중국 문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외모를 가질 것이라는 의미가 드러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쓴 덩쉬에쑹은 가정보다는 직업에 충실한 여성이었다. 그의 딸 정샤오티가 직접 출연해 회고하는 어머니는, 언제나 일하는 어머니여서 1년에 몇 번 만날 수 없었다. 그러나 덴마크에서 딸의 생일에 필요한 물건을 보내주는, 자상함은 지니고 있는 어머니였다.

또한 이 영상 후반부에는 덩쉬에쑹이 덴마크의 선진 맥주 기술을 들여오기 위해 쏟은

44) <https://www.youtube.com/watch?v=f1FMMsI2V3U>, 2022.5.16. 게시.

45) <https://www.youtube.com/watch?v=B4JZCpYSR6g>, 2021.9.24. 게시.

46) [https://www.youtube.com/watch?v=aMPbXwSj\\_gA](https://www.youtube.com/watch?v=aMPbXwSj_gA), 2021.2.20. 게시.

47) 이 표현은 영상에는 없고, 기존연구의 기록에 등장한다. “옛날식의 마오 복장은 섬세한 중국 실크로 대체되었다(老式的毛服被精细的中国丝绸代替了)”(孟红, 「持节才女中杰——新中国首位女大使丁雪松外交二三事」, 『福建党史月刊』2011(13), 50쪽; “구파의 청색과 남색 두 색의 마오식의 복장은 섬세한 중국 실크로 대체되었다(老派的青蓝二色的毛式服装, 被精细的中国丝绸代替了)”(马拉, 「重庆走出的中国第一位女大使」, 『红岩春秋』2019(01), 36쪽 등.

노력을 예로 들면서 외교와 경제부문에 매진한 그의 삶을 높이 평가한다. 2020년대 이후 중국이 인물을 평가할 때 그 혁명성보다도 국제무대에서의 평판과 경제 발전의 측면을 더 중시함을 알 수 있다.

영화 <태양을 향해(走向太阳)> 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총국이 자금을 제공하고, 장춘 영화 촬영소가 장비를 보태 박준희 감독이 촬영하였다.<sup>48)</sup> 2002년 12월 베이징에서 시사회를 개최하였고, 2004년 광주국제영화제에서도 특별상영되었다.<sup>49)</sup> 현재 Youtube에서 볼 수 있다.<sup>50)</sup> 이 영화는 정율성이 주인공이고, 정율성이 어린 시절 항일운동을 하고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는 데에서 출발하여, 중국 연안에 왔다가 <연안송>, <팔로군진행곡> 등을 작곡하고, 덩쉬에쑹과 결혼한 뒤 직접 전투에 참여한 시기까지를 그리고 있다. 시작과 끝에는 현재의 어린이합창단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무대 위에서 정율성이 작곡한 곡을 부르는 모습을 담았다. 덩쉬에쑹은 30분쯤부터 등장하기 시작하고, 정율성과의 교제와 결혼의 내용도 있으나 연안에서 그들이 겪었던 고생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연안은 대폭격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투철한 애국 및 혁명정신의 청년들이 활발하게 만들어낸 낭만적인 장소처럼 그려지며 그 내부의 갈등은 찾아볼 수 없다. 정율성의 작곡가로서의 성장기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영화는, 그의 후반부 인생은 전혀 다루지 않고, 일본의 침략과 조선인의 중국혁명에의 참가, 연안에서의 혁명운동 등을 매우 단순화해서 보여준다.

정율성의 어릴 적 조선에서의 모습을 그리면서 조선 농촌의 가족을 형상화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의 친밀성을 강화한다. 또한 연안에서 공산당원들의 이야기와 혁명 의지가 발현되는 원천은 농민, 노동자나 계급투쟁보다는 항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정치색이 거의 배제된 정율성의 이야기, 그리고 단순한 덩쉬에쑹과의 인연의 묘사는 1990년대 이후 급속히 가까워진 한중 양국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의 냉전적 갈등은 뒤로 하고 애국과 항일로 연결될 수 있는

이처럼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덩쉬에쑹은 외교적 수완을 통해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애쓰고,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발양하며, 가난하고 열악한 고향을 잊지 않는 현대적 사회 지도층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가난한 계층 출신으로 겪었던 괴로움이나, 과거 농민들과 사회혁명을 하고, 국공내전시기 북한을 후방으로 삼고 자원을 조달했던 공산당원으로서의 경력은 중요하지 않다. 게다가 치파오를 입고 중국의 새로운 여성성을 세계에 알리기까지 하면서 덩쉬에쑹은 문화대혁명시기의 남성화된 여성을 탈피해가는 중국 여성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인다.

## 5. 결론을 대신하여

48) <정율성17 - 정율성을 말한다(중국현지 인터뷰)>, 이건상 기자의 자치 & 문화 이야기, <https://blog.naver.com/leegs386/130009420439> (출처 수정 필요)

49) 세계한민족문화대전, 「태양을 향해」 항목, <http://www.okpedia.kr/Contents/ContentsView?contentsId=GC05312150&localCode=krcn> .

50) <https://www.youtube.com/watch?v=U2LCVxRUTRM>, 2022.5.29. 게시.

딩쉬에쑹은 충칭에서 공산당 지하당의 훈련을 받고 성실한 공산당원이 되었고 장년이 된 후에는 중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당의 노선을 충실히 따라서 항일 운동과 조선관련 임무, 외교활동을 지속해온 그의 공간적 이동은 20세기 중국공산당의 활동, 국제관계의 전환과 정확하게 겹친다.

정율성과의 결혼이라는 사건은 그가 처음 외교 업무를 맡게 된 계기로 작동했다고 볼 수도 있다. 결혼을 통한 조선으로의 이주로 평양에서의 화교업무, 신화사 주평양분회의 사장, 동북국조선판사처에서의 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정율성은 더 이상 북한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았으며, 덩의 업무 역시 조선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딩쉬에쑹 자신이 표현한 대로, 신화사 사장이 된 것이나 대사가 된 것은 모두 자신의 의도하거나 원했던 것이 아니었고, 생각지도 못하게 당이 자신에게 부과한 임무였다. 그는 공산당이 자신에게 쥐어준 임무를 잘 해낸 ‘당의 딸’로서 평생을 살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언제나 당이 하는 모든 일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가 정율성을 회고하면서 쓴 글에서는 대약진과 인민공사에 대한 정율성의 비판이나 문화대혁명 기간 그가 저항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을 오히려 자신의 관점보다 옳았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율성은 자신보다도 기층에서 오래 생활하며 대중들의 질곡과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았다.<sup>51)</sup> 더 이후의 회고에서는 혁명 이전의 정율성이 혁명의지가 약해졌다고 하는 평가에 대해 그것이 절대 아니고 창작을 지속했고 문화대혁명시기에도 계속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했음을 강력하게 말하기도 했다.<sup>52)</sup> 대약진이나 문화대혁명은 오늘날 공산당의 입장에서 오류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덩쉬에쑹의 이러한 표현은 당의 노선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덩쉬에쑹은 정율성이 언제나 기층의 사람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의 사회주의 신념이 더욱 강화되고 지속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층 민중과 결합된 삶은 덩쉬에쑹의 외교관으로서의 활동과는 조금 거리가 있으나, 덩쉬에쑹의 어린 시절에 비춰보면 그 자신이 정율성을 옹호할 기반이 충분하다. 덩쉬에쑹 자신이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중학생 시절 가난으로 인해 멀리받아서 학교를 옮기기까지 했다.<sup>53)</sup> 또한 연안시절 그의 농촌혁명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기에 훗날 교육환경이 열악한 고향의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기까지 하였다.

이제 중국에서 덩쉬에쑹은 삶의 전반기에 겪은 계급혁명과 농민혁명의 색깔이 지워지고 우아한 외교관으로서 그려지고, 한국에서는 독립운동 작곡가의 부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 자신이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했는지 알 수 없다. 어쩌면 현재의 한중관계에서는 그들의 삶을 그렇게 조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격동기를 살아낸 그의 삶에서 우리는 보다 많은 역사적 의미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51) 정설송 엮음, 앞의 책, 127-130.

52) 梁茂春, 「丁雪松谈郑律成」, 13-16쪽.

53) 马拉, 「重庆走出的中国第一位女大使」, 33쪽.



## 제4발표



# 남북귀환어부 가족에게 씌어진 굴레와 긴 헤어내기

김아람 (한림대)



# 납북귀환어부 가족에게 씌워진 굴레와 긴 헤어내기<sup>1)</sup>

김아람(한림대)

## 1. 머리말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은 최근에 연이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2022년 피해자 982명에 대해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고, 진실 규명과 함께 국가에 직권 재심을 권고했다. 대검찰청에서는 2023년에 이르러 관할 검찰에 직권 재심을 청구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재심이 이루어지고, 무죄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과거 정부의 잘못된 법적 판단을 바로 잡는 조치이자 납북귀환어부 당사자와 그 가족의 장기적인 피해를 인정, 배상해야 하는 시발점이 된다.

납북귀환어부는 누구이고, 왜 피해자가 되었을까? 납북귀환어부는 동해상과 서해상의 남 북한 접경지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북한 선박(경비정)에 피랍되어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남한으로 돌아온 어부들을 말한다. 1954년부터 1987년까지 납북귀환한 선박은 426척, 어부는 3,200여 명이다. 동해안에서 1,360여 명, 서해안에서 1,860여 명이 있었다(<표 1, 2>). 이들이 북한에 억류된 기간은 짧게는 10여 일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되기도 했는데, 이들의 피해는 남한에 돌아온 후 한국 정부로부터 시작되었다.

1960~70년대의 피해자 사례를 통해 보면, 정부는 어부들에게 반공법 위반(간첩죄)을 적용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 연행 및 구금, 고문 등이 이루어졌다. 분단 후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여러 간첩 조작 사건이 벌어졌고 많은 피해자가 나왔던 것처럼 납북어부도 조작의 대상이 되었다. 어부들은 어업을 하다가 납치된 피해자였지만 북한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간첩 혐의를 받았던 것이다.<sup>2)</sup>

1) 이 글의 구술 내용은 강원민주재단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으니 인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2) 1950년대부터의 조작간첩에 대해서는 김정인, 황병주, 조수룡, 정무용, 홍정완, 홍종욱, 유상수, 이정은, 2020, 『간첩시대- 한국 현대사와 조작간첩』, 책과함께를 참조할 수 있고, 납북귀환어부 사례는 이정은, 「누구를 간첩으로 만들었나 4: 납북귀환어부」의 글에서 다루고 있다.

<표 1. 연대별 납북귀환어부 현황(척/명)><sup>3)</sup>

| 연대별       | 납북선박 및 어부 | 미귀환 선박 및 어부 |
|-----------|-----------|-------------|
| 1954~1960 | 99/675    | 2/35        |
| 1961~1970 | 314/2,236 | 16/241      |
| 1971~1980 | 40/639    | 8/115       |
| 1981~1987 | 6/101     | 1/12        |
| 합계        | 459/3,651 | 27/403      |

※ 납북선박 및 선원 중 5척이 침몰하고 16명이 사망

<표 2. 지역별 납북귀환어부 현황><sup>4)</sup>

| 구분<br>연도   | 납북           |              |              | 귀환           |              |              | 미귀환(누계)   |           |           |
|------------|--------------|--------------|--------------|--------------|--------------|--------------|-----------|-----------|-----------|
|            | 계            | 동해           | 서해           | 계            | 동해           | 서해           | 계         | 동해        | 서해        |
| 계<br>(척/명) | 459<br>3,648 | 165<br>1,527 | 294<br>2,121 | 426<br>3,230 | 155<br>1,364 | 271<br>1,866 | 33<br>418 | 10<br>163 | 23<br>255 |

1960~70년대 씌워진 간첩 혐의로 인한 피해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재심 무죄판결 이전까지 납북귀환어부는 범법자였다. 그 가족에게도 2000년대까지 연좌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납북귀환어부의 여성 가족을 통해 사건이 지닌 복합적, 장기적인 피해와 그 회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피해를 드러내는 작업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분단과 한국전쟁 후 해상분계선의 문제와 남북 체제 경쟁이 어떠한 문제를 초래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해상에서 어업을 하던 어부가 납치되었다가 다시 돌려보내진 배경과 관련된다. 둘째, 간첩죄를 조작하고, 사회적 공포를 조장한 한국 정부의 반인권적, 불법적 행태를 살펴봄으로써 국가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3) 국무조정실 남북협력기획단, 「연도별 해상납북 및 송환통계」, 『피랍관계철 27통진호』 (동진호의 오기, 국가기록원 CA0286791). 이 자료는 1기 진화위에서 납북귀환어부 사건 조사관이었던 변상철이 2009년 8월 6일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하였다. 변상철, 「납북귀환어부의 국가폭력 피해와 현황, 전망」,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진실규명포럼 자료집』 2021.11.26.

4) 치안본부, 「납북귀환 선박 및 어부현황」, 1987(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납북귀환어부 이상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8쪽에서 재인용).



그 시대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셋째, 과거에 벌어진 여러 피해 사건들을 오늘날 어떻게 바로 잡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무엇인지 국가의 책임과 사회적 성찰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아울러 납북귀환어부 피해 가운데에서도 특히 어부의 여성 가족, 아내와 딸의 경험에 주목하는 이유와 그 의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피해의 범위와 내용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직접적인 당사자로 피해를 국한할 수 있는 사건의 성격을 재고하게 한다. 가족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피해는 고문의 정도나 구금 일자 등 제도적 폭력을 근거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서 법적, 제도적 배상이 구금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당사자의 피해에만 제한되는 것의 한계를 발견하게 된다. 또 여성 가족들은 중층적인 폭력 속에 놓이기도 하는데, 당시의 환경에서 가정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주어진 조건을 수용하고자 애를 썼다. 이러한 여성의 경험은 사적인 한탄에 그치지 않으며 마땅히 역사로 서술될 가치가 있다. 끝으로 어부 생존자가 드문 지금 시점에서 아내와 딸의 기억과 말하기는 유일한 기록이자 앞으로를 위한 운동의 원천이 된다. 진상 규명에 나서는 여성들은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남편과 아버지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으며 이어서 스스로의 삶도 재의미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납북귀환어부에 관해서 1기, 2기 진화위의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면서 정부 자료로 파악 가능한 간첩 조작의 지시, 1968년 무장공비 침투 등 안보 위기 상황에서의 변화, 처벌과 이후 지침 등은 대체로 밝혀졌다. 2기 진화위 조사보고에서는 증언을 토대로 가족들의 여러 피해 사실도 기술하였다. 이렇듯 위원회가 진실 규명 결과를 내기까지 2000년대 초반부터 피해자와 연대했던 인물들을 주목해야 한다. 엄경선은 속초 출신으로 설악신문 기사를 하면서 동해안 지역 피해자이자 이웃 어른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왔다.<sup>5)</sup> 그는 지금도 피해자의 거의 모든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변상철은 1기 진화위에서 사건 담당 조사관이었는데, 피해자가 사건을 접수하고 이후 재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1기 진화위 활동 이후에도 사건을 계속해서 알려왔고, 최근에도 여러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였다.<sup>6)</sup>

이 글은 그간의 기록에 힘입으면서도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여성 가족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나는 2021년 여름부터 강원민주재단이 개최하는 포럼에 참여했고,<sup>7)</sup> 2022년 6월 20일에 발족한 강원도 지원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합동추진단’에 들어가게 되었다. 추진단에서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25명의 구술을 진행했고,<sup>8)</sup> 그 기록이 이 글의 근간이 되었다.

5) 엄경선, 2008, 『동해안 납북어부의 삶과 진실』, 설악신문사와 이후 『설악신문』 연재 기사들.

6) 변상철, 「납북귀환어부 이야기」, 『오마이뉴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연재.

7) 강원민주재단, 「제3차 민주주의 포럼- 국가폭력의 상처와 치유,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인권유린, 간첩조작 사건」, 2021.6.25.; 강원민주재단, 강원일보사, 「감춰진 진실-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진실규명 포럼」, 2021.11.26.

8) 김아람이 21명, 임혁(한림대 대학원생)이 4명을 면담했다. 이 글에서는 K를 임혁이 만났다.

<표 3. 인용 구술자 정보>

| 구술자 | 관계 | 생년   | 피해 선박 | 납북 일시       | 귀환 일시      | 구술 시간   |
|-----|----|------|-------|-------------|------------|---------|
| A   | 딸  | 1963 | 대양호   | 1968.11.8.  | 1969.5.28. | 1:56:58 |
| B   | 아들 | 1968 | 제3명성호 | 1971.10.21. | 1972.9.7.  | 1:46:56 |
| C   | 딸  | 1966 | 조사중   | 1968.10.30. | 1969.5.28. | 1:13:24 |
| D   | 딸  | 1961 | 무진호   | 1972.8.30.  | 1972.9.15. | 1:41:03 |
| E   | 딸  | 1955 | 신광호   | 1968.1.6.   | 1968.3.23. | 1:04:04 |
| F   | 아내 | 1951 | 삼창호   | 1972.8.23.  | 1972.9.15. | 1:29:05 |
| G   | 아내 | 1957 | 풍성호   | 1968.11.8.  | 1969.5.28. | 1:41:56 |
| H   | 아들 | 1972 | 용진호   | 1967.3.19.  | 1967.6.3.  | 1:53:17 |
| I   | 아내 | 1937 | 용진호   | 1967.3.19.  | 1967.6.3.  |         |
| J   | 딸  | 1957 | 신광호   | 1968.1.6.   | 1968.4.10. | 1:31:04 |
| K   | 손녀 | 1984 | 영덕호   | 1968.11.8.  | 1969.5.28. | 1:13:46 |
| L   | 본인 | 1953 | 협동호   | 1971.5.13.  | 1972.5.10. | 1:43:26 |

이 글의 2장에서는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배경과 관련하여 정전협정과 당시 어업 상황을 살펴보고 납북이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다룰 것이다. 진화위에서는 정전협정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았고, 어부들의 어로저지선(어업통제선) 월선의 고의성 여부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근본적인 사건 발생 원인은 간과하였다. 3장에서는 여성 가족이 겪은 연좌제의 피해와 중첩된 폭력과 고통의 전이를 살펴볼 것이다. 또 구술을 포함하여 최근의 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 2. 바다와 배 타기

### 1) 모호한 남북 해상 경계와 어업 현실

한국전쟁 정전협정(1953.7.27.)에서는 육지의 군사분계선 설정과 달리 해상분계선 설정이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 유엔군도 해상분계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유엔

군은 정전 당시에 한반도 주변 해역의 제해권을 전적으로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해상분계선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sup>9)</sup>

전쟁이 끝난 후 한국 정부는 어로저지선을 설정했고 이후 잦은 변경이 있었다. 어로저지선은 분단 상황에서 어업의 북방한계선을 정한 것인데, 1950년대에 이 저지선이 북쪽으로 상향되며 북한의 나포가 본격화되었다. 1957년 11월 16일자로 정부가 동해안 어로저지선을 28도 26분에서 38도 35분 45초로 변경했다. 11월 9일에 어선 8척이 납치되었는데, 해군은 명태잡이 구역을 확대하여 동해안 이익을 보호하고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어로저지선을 북상향했다. 이에 북한에서는 남한보다 우수한 해군력으로 최신식 쾌속정을 활용해 남한 어선을 나포했다. 해군 해상 경비 함정이나 경찰 경비선은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sup>10)</sup> 1980년대까지 총 460여 척이 나포된 중 1950년대에 21.6%인 100여 척이 나포된 배경이다.

이 어로저지선은 여러 번 작은 변경이 있었지만, 1968년은 중요한 변동이 있던 때이다. 1967년 1월에 어로저지선을 경비하던 남한 해군함정이 북한의 포격으로 침몰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어로저지선을 넘어가서 조업하던 어선들을 남측으로 돌려오도록 따라가다가 북한 해안동굴 진지의 해안포로부터 포격을 당했다. 사건으로 군사정전위원회가 열렸으나 북한에서는 해군이 휴전선을 넘었고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했다.<sup>11)</sup> 이듬해인 1968년은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었다. 1월 21일에 김신조 등 간첩단이 침투했고, 25에는 미국 해군 첩보함 푸에블로호가 납북되었다. 11월 2일에는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사건이 발생했다. 위기가 가시화되자 한국 정부는 11월에 ‘어로한계선 변경조치’를 실시했다. 동해안이 먼저 5마일을 남하시키고, 1969년에 서해안도 조정했다.<sup>12)</sup>

문제는 어로한계선 위반에 대한 처벌 조처였다. 어로한계선 위반에는 수산업법이 적용되고 있었지만 1968년 11월 24일 대검찰청公安부는 조업 중 두 번 이상 납북되었다가 송환된 어부에 대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하라는 초강경 방침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탈출·잠입죄와 형법의 간첩·간첩미수죄를 적용, 기소하며 유기형을 구형할 때는 자격정지형을 병과 구형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 무조건 상소하라고 했다.<sup>13)</sup>

정부의 이러한 처벌 방침은 납북귀환어부 피해 사건의 출발점이었다. 어부와 어업의 현실과 처벌 조처는 큰 괴리가 있었다. 우선, 현실적으로 당시의 해양 기술과 조업 기술의 한계로 해상에서 어로한계선을 알기는 어렵다. 어부들이 어업한계선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9) 한국전쟁에서의 남북 군사분계선, 해상분계선 설정에 관해서는 김보영, 2016, 『전쟁과 휴전-휴전 회담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한양대학교출판부 참조.

10) 「어로저지선을 전폐」, 『조선일보』 1957.11.16.; 「동해어로 확장해역」, 『동아일보』 1957.11.17.; 변상철, 2019,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실태 보고」,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토론회』, 7~8쪽.

11) 「해군경비함 북괴에 피격침몰」, 『동아일보』 1967.1.19.; 「사건경위 해군발표」, 『동아일보』 1967.1.20.; 「“휴전선 넘어왔기에” 운운」, 『경향신문』 1967.1.21.

12) 「사설-어로한계선 변경과 해안경비 강화」, 『경향신문』 1968.11.26.

1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7,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19쪽; 「두 번 이상 납북어부 사형 구형토록」, 『동아일보』 1968.11.24.(이정은, 앞의 글, 316쪽에서 재인용).

볼 수도 없다. 정부는 어량을 따라 이동한 어부들의 ‘월선’에 미필적 고의를 적용했지만 월선과 월북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또 어부들이 해군 경비 등으로 대략의 어로한계선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업 활동에서 한계선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1967년 1월 포격 사건 당시에도 어로저지선 위쪽으로 넘어가 있는 어선은 200여 척에 달했다.<sup>14)</sup> 게다가 1968년 한계선이 조정되고 초강경 처벌 조치가 적용되는 사실도 어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졌는지 불분명하다.

게다가 어로저지선 월선이 아니었다고 해도 납북되었다가 돌아오면 조사와 처벌을 받았다. 1968년 11월에 강원 고성경찰서에서 어선 7척의 납북 상황을 보고할 때도 4척의 납북 위치는 북위 38°33'으로 당시 어로저지선의 남쪽이었다. 1968년 11월 28일 기준 어로저지선은 38°34'45", 북방한계선은 38°36'45"였다.<sup>15)</sup>

한편, 납북 상황은 정부의 경계 경비 책임이 있다. 해군과 경찰이 해상 경계선 경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었고, 북한과의 군사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대응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들의 구술 중에서는 북방 경계선 안에서 납치가 될 때에도 군 경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나포 상황을 지켜보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부들에게 고의적 월북과 간첩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한다는 일방적인 대검찰청의 지시가 내려졌던 것이다. 어부들이 ‘납치’되는 피해가 ‘탈출’, ‘잠입’으로 전환되었고, 어로한계선 남하로 인한 어부들의 피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축소되었다. 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어부들은 ‘탈출’과 ‘잠입’에 고의성, 목적성을 찾기가 어렵다. 설령 ‘월선’을 했다 하더라도 납북이 피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북한에서는 1968년 전후로 간첩 침투 시도를 늘리고 있었고, 1960년대 전반보다 억류 기간도 늘렸다. 어부들은 어로한계선 조정 후에도 기존의 영역에서 해오던 방식대로 조업을 하고 있다가 북한에 납치가 되었지만, 정부는 모든 책임을 어부들에게 지우고, 처벌만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어부와 가족들은 납치부터 그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졌다.

## 2) 가족의 불안정한 생활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남편이나 아버지가 갑자기 납북이 되었을 때, 가족들은 어디로 갔는지를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I는 남편이 1967년 3월에 납북되었으므로 북한에 납치되었으리라는 예상을 하기 어려웠다. 가족들은 배의 선장이나 선주를 찾아가서 정보를 얻을까 하지만, 그 가족들 역시 배의 행방을 알 수는 없었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안 속에서 어머니나 아내는 점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았다. I가 여러 점집에 가보았을 때 대부분 남편이 사망했다고 했다. 그는 아들과 함께 구술을 하다가 아들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던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점쟁이가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막 울고불고” 덩달

14) 「동해상 전함에 ‘전투비상’」, 『조선일보』 1967.1.21.

1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2, 「건설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2022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2권』, 213~214쪽.

아 그도 함께 울었던 일이 있었다. 어떤 점쟁이는 배가 일본에 갔다가 “파산이 돼서 딱 깨져가지고 물속에서 다 고기밥이 되고 말았다”고도 했다. I의 시어머니도 “100군데 점을 봤”는데 다 죽었다고 했다. 단 “한 군데서 무당이 방울을 흔들면서 방울을 자꾸 뒤로 던”졌더라는 것이다. 북에 갔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가족들은 아들(남편)이 “북한에 갔다는 걸 믿지를 않았”고 “죽었다고 생각”했다.

E는 중학교 1학년 때인 1968년 1월에 아버지가 납북되었다. 젓먹이 동생이 있던 때였는데, I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납북되었던 것은 몰랐다. 그의 어머니도 점을 보러 다녔다. 5남매를 돌보던 어머니는 아버지의 납북 후 충격으로 “너무 많이 아프셨”다. “엄청 고생을 많이 하며” 살다가 “무릎도 못 쓰고 수년을 기어 다니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어린 자녀를 돌보기가 쉽지 않았다. I는 아기들을 친절에 맡겨 두어서 딸 한 명은 “젖도 제대로 못 얻어” 먹었다. 딸이 태어난 지 20일이 안 되어 남편이 납북되어 당시에는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아버지가 없어졌는데 뭐 너, 너쯤이야”하는 생각이 있었다. 이때 딸의 출생은 환영받기는커녕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 딸이 태어났을 때 강“네가 재수가 없다. 네가 재수가 있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됐겠냐”는 말을 주변에서 들었고, I도 그 생각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다. 그 뒤 아버지가 돌아오고 나서는 딸에게 “네가 재수가 있다”고 반전이 일어났다. 제대로 양육 받지 못했던 아기는 아버지의 행방에 따라 ‘재수가 있거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납북되었던 어부는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연행되었다. 동해안에서는 1969년에 강원도경찰청이 합동심문반을 구성하여 귀환어부를 분산 수용했고, 가족 등의 면회를 일체 금지하였다. 합동심문반은 지방경찰서에서 차출한 합동심문요원, 치안국 심문반, 군 및 중앙정보부 수사관으로 구성했고, 단계별 심문계획에 따라 ‘간첩 색출 및 공작여건 개척’을 목표로 심문했다. 강원도경찰국은 간첩을 색출하는 심문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라고 지시했다. 합동심문이 끝나면 선적지 관할 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되어 2차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다. 1968년 11월에 납북되었던 건설호의 피해자들은 몇 개월 동안 귀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구금된 피해자들은 전기고문, 물고문과 각종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sup>16)</sup>

납북되었다가 돌아와서 구금 등 피해를 입은 어부의 모습은 납북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다. F의 남편은 1972년에 3주 가량 억류되었다가 돌아왔고, 남한에서 끌려가서 “한 달 만 인가 나왔”을 때는 “이빨도 빠지고, 얼굴도 초췌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말하지 말라고” 했고 “경찰이 늘 따라댕겼”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무서워 가지고 바깥을 못 나가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F는 가기 전과 비교하면 “신랑이 완전히 바보 멍충이가 됐”다고 했다. 경제 활동도 당연히 할 수 없었고, 가계 생활은 그녀의 몫이었다. E의 아버지도 “당하고 온” 뒤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어머니가 노가리 건조 등의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갔다. E도 어머니를 도와 겨울에 “손이 쫄쫄 얼었”지만

16) 강원도지방경찰청 보안과, 1969, 「단계별 심문계획」, 『납북귀환어부』; 강원도경찰국, 「귀환어부 심문 철저 지시」, 1969.5.30.(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2, 앞의 보고서, 208~212쪽에서 재인용).

덕장에 노가리를 널었다.

아버지의 납북귀환 후 자녀들 역시 생계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교육받기가 어려웠다. A는 여섯 살 때인 1968년 11월에 아버지가 납북되었다가 7개월여 만에 돌아왔다. 기관장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고문과 구타를 많이 받아서 다리를 절었고, 낙인으로 인해 다시 배를 탈 수 없었다. A는 중학교 2학년까지 공부한 자신이 언니들에 비해 고생을 안했다고 하면서 한 언니는 “국민학교 나와서 식모살이 하고, 학교 선생님 애들 낳으면 그 애기 봐주고 밥 얻어먹고” 살았다고 한다.

정부는 납북어부에게 어로저지선, 북방한계선 위반을 근거로 1968년 안보 위기 이후에는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며 귀환 즉시 어부들을 연행, 구금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고문 등 가혹행위를 벌였다. 어부가 북한에 나포, 억류되었다가 귀환하여 구금 생활을 하는 동안 가족들은 막연히 가장을 기다리며 무속신앙에 의지하기도 했고, 돌아온 남편/아버지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아내와 자녀들은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납북귀환어부와 가족들의 삶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 3. 어부의 납북귀환 후 가족의 삶

#### 1) 국가와 공동체의 감시와 낙인, 그리고 연좌제

형사처벌이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진 후, 어부들은 석방된 후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교육’을 받았다. 납북귀환어부평가심사위원회가 ‘위해도’에 따라 납북귀환어부를 세 개 등급으로 구분했고, 1980년대에 들어서 국가안전기획부도 A급 월 2회, B급 월 1회 소재지 및 동향 파악을, C급은 간접동향 수집을 하고, 귀가 후 연 1회 특별소집 및 반공교육을 실시했다. 1980년대 초반에도 대검찰청에서는 납북귀환어선의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을 형사 입건해서 처벌할 때, 3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고, 구형에 맞는 판결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하라고 검찰에 지시하고 있었다.<sup>17)</sup>

납북귀환어부의 가족도 감시와 사찰의 대상이었다. 주소지 소재 각급 경찰서에서는 귀환 당시 수사 담당 검찰청에 가족 실태조사를 보고했다. 실태조사에는 가족사항, 생활수준, 생계유지방법 등이 기재되었고, 선원별로도 등급을 나누고 있었다. 보안사에서는 납북귀환어부 명단을 하급기관에 보내어 사찰에 참고하도록 했다. 건설호의 어부들의 내사결과 보고서에는 귀환후 보고 시점까지의 특이 동향, 장기 출타 사항, 재산증감 사항, 접촉 인물 등을 기재했다.<sup>18)</sup>

‘실태조사’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적인 공간도 침해받는 것이었고,

1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2, 앞의 보고서, 216쪽.

18) 강릉경찰서, 「납북귀환어부 등 가족 실태 조사보고(강정 2061-4839)」, 1977.5.18.의 조사보고에는 1964년부터 1977년 4월 30일까지 141명분의 납북현황 및 납북귀환어부 가족실태조사부 등이 첨부되어 있다고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보고서, 216~217쪽.

어부 당사자는 신고의 불편과 감시에 대한 불안으로 가까운 외출도 꺼리게 만들었다. 또 1980년대까지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사찰이 계속되고 있었다. A와 어머니는 “집을 지키는 남자들”을 의식하고 살았다. 그의 아버지는 51세에 납북되었다가 돌아와서 70이 다 돼가는데도 감시를 받았다. A는 감시하는 경찰한테 “아니, 나이가 칠십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따라다니냐, 지금도 찾아다니시냐”고, 외출했을 때는 “내가 여기에 왔는 걸 당신들 어떻게 아냐”고 물었다. 경찰은 “웃으며 다 안다”고 했다. D의 아버지는, 아들이 서울에서 대통령배 축구경기 결승전에 나갔지만 신고해야 하는 게 싫어서 가지 않았다.

가족에게 피해가 미칠 것을 우려한 납북귀환어부는 가급적 납북과 귀환 후 피해를 알리지 않으려고 했다. 특히 결혼 전에 사건이 벌어졌던 경우,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 G는 아들이 세 살이 되었을 때 알게 되었는데, 이 또한 이웃과 다툼이 있어서 경찰서를 갔을 때 경찰이 말을 해줘서 납북 사실을 알았다. L은 1971년에 납북되었다가 1년여 만에 돌아왔다. 그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한 2022년까지 아내와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 중에는 1980년대에 다시 간첩으로 몰려서 연행,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릴 수밖에 없었다. D는 아버지가 “누구 다른 사람한테도 절대로 아버지 갔다 온 거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 했다. “갔다 오신 분 중에 다른 사람이 또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서였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 모임 대표인 김춘삼도 1983년에 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다. 2013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 외에도 1980년대에 납북귀환어부를 간첩으로 몰아서 다시 복역하게 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고, 그 건에 대해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재심이 있었다.<sup>19)</sup>

추후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지만, 1980년대에 마을 안에서 간첩 신고를 독려하자 이웃 사이에도 정보원 역할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K는 할아버지가 납북귀환어부였는데, 할아버지의 지인 중 “정보원 노릇을 하다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강요받아서 견디지 못해 정신 이상 증세가 온 거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가가 경찰을 동원하여 납북귀환어부와 가족을 감시, 사찰하자 이웃에서의 낙인도 피할 수 없었다. I는 “대놓고는 못하지만 ‘저 집이 이북 갔다 왔어. 저 집이 고기 잡으러 이북 갔다가 이북 들어갔다 왔어.’ 그렇게 찍혀서 살았”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서 동네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며 나아지기도 했지만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아내에게 평생을 말하지 못했던 L은 의식적으로 마을에 봉사를 많이 해왔고, 신망이 높아졌다. 그의 집에는 여러 관공서로부터 받은 표창장도 많았다.

한편, 납북귀환어부의 가족과 친척에게는 2000년대 초반까지 연좌제가 적용되었다. 연좌제는 전근대 사회에서의 법적 처분으로 생각되지만, 한국에서는 분단 상황에서 가족이 북한에 갔거나(납북, 월북) 납북귀환어부처럼 반공법, 국가보안법 처벌을 받은 후에도 제약이 많았다. 현재도 신원조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무원, 군경 등 취업에 제한을 두기도 하지만,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에게는 8촌에 이르기까지 여러 직종에 진입하지 못하게 했다. H

19) 변상철, 「납북귀환어부의 국가폭력 피해와 현황, 전망」, 강원민주재단, 강원일보사, 『「감춰진 진실-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진실규명 포럼 자료집」, 2021.11.26.

는 아버지의 납북귀환 사실 때문에 경찰 면접시험에서 탈락했다. H의 사촌도 ROTC에 갈 수 없었다.

연좌제는 어부들에게 불안과 죄책감을 가지게 했고, 자신의 피해보다도 더 괴로울 때가 있었다. K의 할아버지는 “연좌제 때문에 뭘 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식들이 알게 될까 봐 그 것을 제일 무서워하시고 걱정”했다고 한다. 당시에 주변에서는 “좀 똑똑”했지만 가족의 “납북 이력 때문에 못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사람이 좌절하게 되”는 걸 보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해 아예 좌절의 가능성조차 두지 않으려고 아들을 고등학교에 진학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납북귀환어부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에게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다. 당시에 ‘간첩’ 혐의는 사회적인 공포를 야기하기에 충분했다. 결혼 상태에서 아내에게조차 피해를 숨기기도 했고, 결혼 전에 사건이 있었다면 결혼 후 굳이 말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텐데 ‘범법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괴로웠던 경험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 구술 사례에서처럼 ‘자신으로 인해’ 가족에게 또 다른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는데, 피해 가족들에게는 실제로 일상적으로 감시가 있었고 국가의 통제를 실감하며 살았다. 연좌제는 가족들의 군대, 취업 등을 제한하였고, 이후 삶까지 규정하는 막심한 해를 끼쳤다.

## 2) 고통의 전이와 가정 폭력

납북어부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은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전이되었다. 자신의 피해를 말하지 않았던 G의 남편은 다툼이 있을 때도 “자꾸 말을 하자”고 했다. G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뭐가 불만인지 말을 하라”고 하지만, 남편은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녀는 지나서 회고하기를 아마도 남편이 가슴 속에서 “애통이 터지는 거”였고,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붙잡혀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G가 남편의 피해를 알고 난 뒤에는 남편이 “이렇게 살 바에는 이북에 있었으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라며 한탄을 했다. 남편의 동생은 납북되었다가 돌아오지 못한 상태였는데, 남편이 납북되었을 때 동생을 만났다고 들었다.

납북귀환어부의 실질적인 고통은 북한에서보다 남한에서 더 컸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물리적인 피해를 겪지는 않았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기간에는 통제된 상태에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고, 가족과도 연락이 끊긴 상황이 물론 편안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북한에서의 억류 생활 중에 고문이나 구타는 없었다.

남한에서 처벌을 받고 돌아온 피해자들은 대체로 술에 의지할 때가 많았다. G의 남편도 술을 자주 마셨고, 부부싸움이 이어질 때가 많았다. B의 아버지도 “항상 쫓기는 것 같고, 두려워하고, 밖에 나오는 걸 겁나”했다.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항상 어두운 데 있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아버지와 함께 밖에서 시간을 보낼 형편이 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복역 후 돌아온 “이후부터 술을 엄청” 먹기도 해서 “하루에 (소주) 서너 병은 기본”이었다. D의 아버지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술을 마셔서 응급실에도 꽤 갔다. 그녀는 아버지가



“간이나 위가 다 혈을 정도로” 음주를 하는 “거의 알코올 중독”이었다고 추측했다.

J의 아버지는 그녀가 국민학교 3학년 때 납북되었다가 돌아왔고, 5학년인 1968년에 다시 납북귀환했다. 그의 아버지는 납북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월북했다는 누명을 쓰고 구타와 고문을 심하게 당한 후 실형을 살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고문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아버지가 직접 피해 사실을 말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출소 후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자주 각혈을 하며 자다가도 헛소리를 할 정도로 몸이 망가져 있었다.<sup>20)</sup> “밥을 하면 그 위의 미음을 떠가지고” 아버지 입에 넣어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 J는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아프나”하는 원망의 마음도 있었다고 기억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다툼도 잦았는데 아버지가 “엄마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하며 싸우고, “뭐 죽으라 그러”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아버지는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일체 말을 안”했다. 일을 하지 못하고 가족에게 의지하던 아버지는 “가족이 시련을 당하고 힘들어하니까 너무 너무 힘들어” 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다. 그녀는 지금에 와서 아버지의 고통을 떠올리면 오히려 “가족이랑 안 살고, 차라리 교도소에서 그냥 살았다면 더 힘든 고통을 안 당하지 않았을까, 우리들하고 있으면서 더 많이 힘들어”했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남편이나 아버지의 피해는 고통은 본인을 괴롭힐 뿐만아니라 가족에게는 폭력으로 나타났다. D는 아버지가 “고문 후유증으로 대인기피증이 있었다”고 회고하며 아버지가 전과 달리 “난폭해”졌다고 했다. 아버지의 불안과 변화한 성격에 어머니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외출했다가 예정한 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불안해했고, 어머니는 “많이 희생”하는 모습이었다.

자녀들을 향한 폭력도 있었다. B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원망을 풀었다고 했지만 구술을 하면서 복잡한 심경으로 울음이 계속되었다.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그에게 잊히지 않았다. “아버지가 때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기에 있을 때 맞은 거에 비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때렸던 일화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폭력적 경험이 자녀들에게도 재현되며 가족관계는 어그러졌고, 자녀의 청소년 시절은 방황으로 지나갔다.

납북귀환 피해자였던 아버지를 회고하는 자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당시에는 아버지의 고통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여러 피해 사실들을 알게 되며 과거를 돌아보고 아버지를 깊이 공감해 가는 과정을 겪고 있었다. 극심한 폭력을 겪은 피해자에게 남은 상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 폭력으로 재생산되거나 다른 성격의 장기적인 아픔과 원망을 남기게 되었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 규명에 나선 가족들은 남편과 아버지의 지난 삶의 의미, 명예를 회복하고, 스스로의 삶 또한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 3) 명예 회복과 해원(解冤)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한국전쟁의 피해, 국가

20) J, 「진실규명신청서」, 진실화해위원회 접수, 2021.12.7.

로부터의 폭력과 인권침해 등 한국 현대사의 중대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명예 회복’에서의 ‘명예’는 사전적 정의와는 크게 다르다.<sup>21)</sup> 피해자가 이름이나 권위를 높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납북귀환어부에게는 부당하게 지워진 ‘간첩’, ‘범법자’, ‘빨갱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나 피해 이전의 평범했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숨겨지거나 조작되고, 피해자 스스로도 숨겨왔던 피해 사실을 밝히는, 첫걸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납북귀환어부의 피해자 일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직접 과거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국가기관(진화위)은 사회 변화와 피해자의 용기에 조응하며 ‘진실 규명’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2022년 2월에 2기 진화위가 처음으로 납북귀환어부 피해 사건의 직권조사 결정한 후 강원도 민관합동추진단이 만들어졌고, 조사가 결정된 사건 외에도 많은 피해 사건과 피해자가 있었으므로 2기 진화위에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주로 했다. 2021년 말에 피해자들의 시민모임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동해안의 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 등 지자체에도 협력을 요청하며 다른 피해자들도 진실 규명에 함께 하게 되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진화위나 추진단에 접촉하기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납북귀환어부인 C는 도로에 붙어 있던 플래카드에도 처음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자기 가족의 이야기라는 것도 잘 몰랐다고 한다. “아버지가 절대로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된다”고 한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두렵기도 했다. 그러다가 진화위의 연락을 받았고, “서울에서 왔고, (플래카드) 붙은 거 봐서 얘기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납북귀환어부가 3천 명 이상이었고, 가족들이 수천 명에 달하지만, 그에 비하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히는 피해자는 매우 소수이다. 이들은 추진단의 이 구슬에도 응했고, 그 후 국회에서 열린 포럼이나 다른 피해자의 재판에도 함께 참여한다. 이러한 활동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과거에 부정적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 당시 상황을 이해하게 되어 원망보다 측은함과 안타까움, 미안함이 커졌다. C는 아버지가 “좋은 세상 한 번 못 보”았으며 “이북만 안 갔더라도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과 형제들의 불우했던 생활도 달랐을지 모른다는 회한이 있었다. J는 아버지가 아프신 “외출도 안 하시고 돈도 안 벌”고 어린 오빠가 배를 탔던 때에 “왜 아버지는 저렇게 돈을 안 벌으실까?” 아버지를 너무 너무 많이 원망”했다고 한다. 자신도 “이까(오징어) 다리아를 나르고, 리어카를 밀”어야 했던 사춘기에 죽으려고도 했었다. 그러다가 지금은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얘기를 해줬으면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D는 형제들이 아버지가 난폭했던 것만 기억하고 있자, 최근에 자신이 사건을 알고 나서 형제들에게 공유했다. “이제서야 형제들도 아버지가 왜 그랬나를 이해를 하”게 되었다.

(생존 피해자를 만나니) 어머! 세상에 하나같이도 울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때 처음 가

21) 사전적 정의는 1.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 2. 어떤 사람의 공로나 권위를 높이 기리어 특별히 수여하는 칭호이다. 『표준국어대사전』.

가지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문을 받고 그렇게 그런지도 몰랐어.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엉엉대고 울었어, 나는 아주. 너무 많이 울은 거야. …… 뽀뽀도 해주고, ‘사랑한다’ 한마디도 그런 걸 못 해주고, 이렇게 한 번 아버지 손도 따뜻하게(못해주고),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어. 나는 너무 나를 고생을 많이 시켜가지고, 원망도 했어. 대놓고는 말을 못했지만. ‘아버지 너무 미안해요.’ 근데 혼자서 이제 아버지랑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 J

피해자의 활동은 ‘피해자’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된다. 자녀들은 피해자 모임이나 지원단체를 접하고, 기록을 통해서 아버지가 겪었던 일이 심각한 피해였음을 깨달았다. 피해 사실도 다른 생존 피해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E는 “이번(피해자 모임)에 (북한에) 다녀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고문도 많이 당하고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까지는 사건을 감추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았지만 피해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가해자를 향해 요구도 하는 용기가 생겼다. E도 “여러 사람이 모이고, 위원회에서도 도와준다고 해서 이제는 뭐 떳떳하게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피해자는 과거 국가의 잘못을 바로 잡고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역사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운동을 행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으며 해결을 위한 지난한 과정에도 인내를 가지고 활동에 임한다. B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독립되고 나서 남북이 헤어졌지만 그다음에는, 국민을 책임져서 지킬,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라고 강조했다. 국가가 “자기네 성향에 안 맞는다고 반공으로 몰아가고” 가족들까지 “개인의 인격을 본 게 아니고 물건으로” 보았다고 했다. “필요하면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세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 사람을 물건으로 보았던 국가가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K도 “가해자가 직접 사과를 하면 그게 아마 피해자들한테는 제일 큰 위안이 될 거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가해자는 추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국가를 대리하며 실제로 구타, 고문을 자행하거나 법적 조치를 했던 검사, 판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무죄판결 못지않게 가해 주체의 사과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더라도 피해자가 실질적인 배·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잘못된 사법 판단은 피해자에게 다시 번거로운 재판 절차를 감당하게 하고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만드는 사회적 악이다. 왜 수십 년 동안 피해를 겪었는데도 피해자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다짐으로 “엎어질 때”가 있어도 “다시 시작”(D)하자는 의지를 다져야 하는지 국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가 개별적인 배상 청구 절차를 하지 않고, 중앙 정부나 지자체 등 여러 단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려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특별법은 특별한 대우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반복할 수 없는 과거의 사법적 만행에 대처하여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임이 사회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겠다.

## 4. 맺음말

2023년 6월 28일에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그 취지문에서 “납북귀환어부들을 간첩으로 내몰고 탄압한 국가는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와 피해 회복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해줘야 할 의무”를 짚고 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구제를 신속히 하는 위원회 설치, 직권 재심 청구 권고, 사건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 보상금 지급, 피해자 및 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sup>22)</sup>

납북귀환어부의 피해는 한국전쟁 후 남북의 대립에 연원을 두고 있다. 남한은 정전협정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해상분계선을 어업과 어부에게 적용하고, 북한은 어부들을 체제 선전에 활용하려고 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인 어부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고 폭력을 자행했다. 또한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다. 어부들의 피해는 가족의 피해이기도 했다. 수십 년 동안의 감시와 사찰, 연좌제는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다. 낙인과 연좌제로 인해 친척, 마을 이웃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가족, 특히 여성 피해자들은 생계를 꾸려야 하고 가장과의 갈등과 가정 폭력도 감내해 왔다. 피해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망과 불안 속에 살았지만, 회복을 위해 다시 애를 쓰고 있다.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향한 피해자의 운동에 대해 국가는 과오를 사과하고, 실질적이고 빠른 배·보상으로 응답해야 한다.

한국 현대사의 여러 사건 속에서 여전히 여성들의 피해나 활동은 비본질적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여성의 삶은 사건의 성격을 담고 있고, 그 일상과 의식은 가족을 유지하는 기반이었지만, 이를 서술하지 못하고 있는 역사, 주목하지 않는 사회가 변화의 경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닐까. 역사적 피해 사건의 법적, 제도적 회복은 사회적, 의식적 회복 없이는 또 다른 권력으로의 의존과 폐해를 낳을 수 있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에서도 여성의 이야기는 사회의 정의를 구축하고, 다차원적인 회복으로의 과정을 이끌고 있으며 경계를 이미 넘어섰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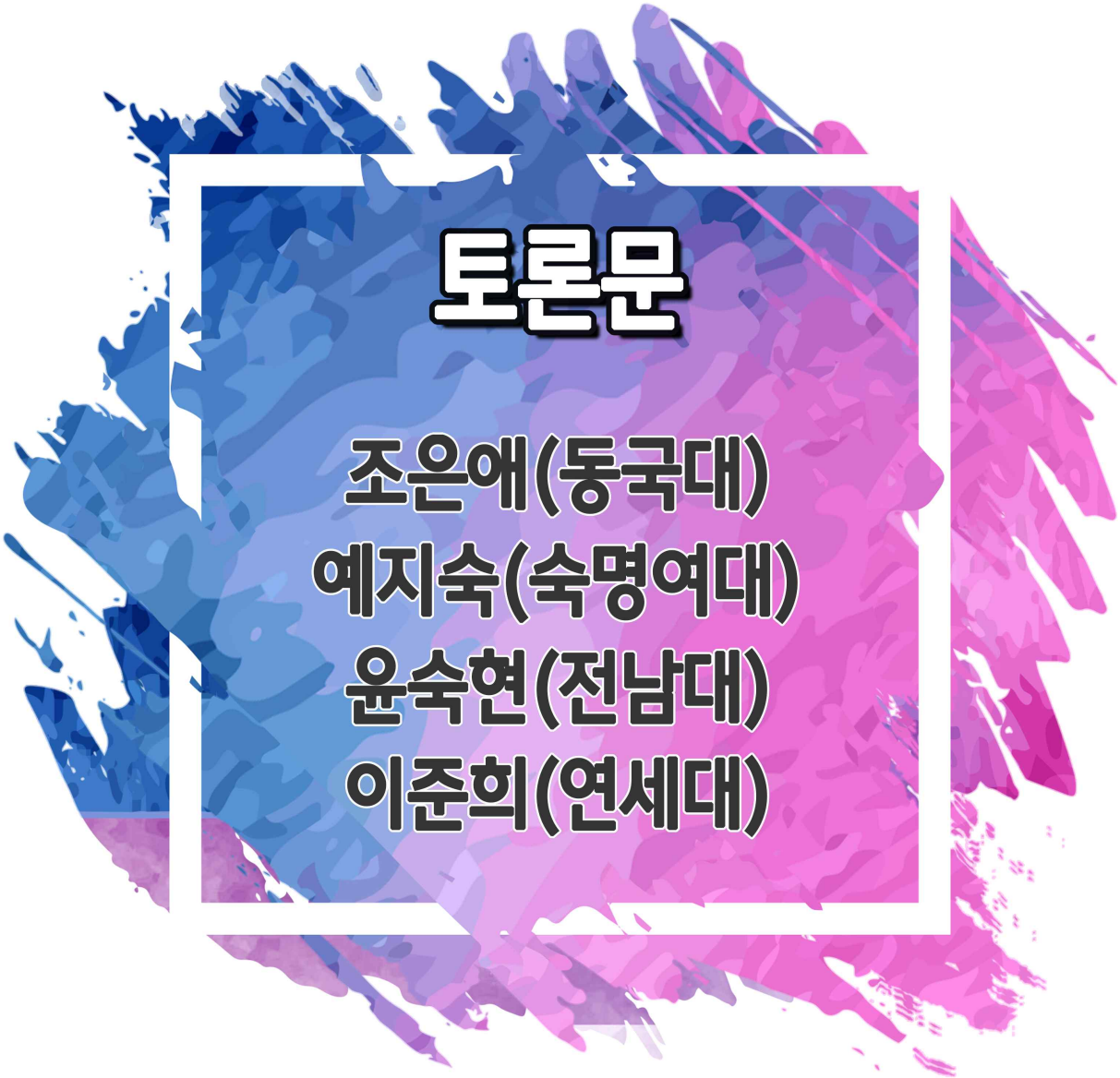
22)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가칭) 추진위원회 출범 취지문」, 2023.6.28.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토론문

조은애(동국대)  
예지숙(숙명여대)  
윤숙현(전남대)  
이준희(연세대)





## 「식민지, 연애 그리고 환대받을 권리 - 전후 재한 일본인 처의 삶과 재현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조은애(동국대)

선생님의 발표문은 식민지 시기 조선인과 결혼한 ‘일본인 처’들이 한국사회와 맺는 관계에 주목하여, 그들의 재현에 작용하는 인식과 시선(frame)의 정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아내는 제국주의 시대 이후 한반도와 일본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가 국민국가 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내셔널 히스토리’에 통합되지 못했으며, 그런 의미에서 ‘비가시적’ 존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내셔널 히스토리의 논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가시화되는 순간이 있었으며, 혹은 그 국가적 서사의 외연을 맴돌며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순간을 남겨놓았습니다. 또한 이를테면 민족적 귀속의식과 이성애라는 감정, 일본에 대한 향수와 조선에서 자라난 자식들에 대한 모성애처럼, 상충하는 감정/의식의 교차에서도 볼 수 있듯, 제국의 붕괴와 국민국가의 재편 과정에서 실상 민족과 젠더의 범주가 모순적이고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었음을 예시한다는 점에서도 귀중한 논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많진 않지만) 한일 양쪽의 선행연구와 접목되면서도 이 연구가 성취한 지점이 명확하기에 개인적으로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언급하자면, 첫째, 일본인 처의 문제를 생각할 때 ‘네이션’과 ‘젠더’ 범주뿐 아니라 ‘계급’ 범주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재한 일본인 처 내부의 차이들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재일조선인 ‘귀국’ 사업으로 북한사회의 일원이 된 ‘북송 일본인 처’의 범주와는 구분되는 ‘재한 일본인 처’를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살피면서, 대중문화의 영역에서부터 문학적 재현, 그리고 수기나 보도 등 다양한 재현의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제국일본의 형성과 붕괴 과정에서 발생한 동아시아 인구이동과 이질적 집단 사이의 관계 형성이라는 시각에서, 사할린이나 대만의 일본인 처 문제와도 관련시켜 접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국가적 서사’의 안/밖이라는 틀 자체를 넘어서 연애와 환대, 그리고 연대와 같은 상호수행적인 실천의 형태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인 처에 관한 연구에 있어 선생님이 열어주신 또 다른 지평에 많은 자극과 시사를 얻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이 글은 한국사회의 미디어 및 한국어 재현에서 재한 일본인 처를 다루는 방식을 논의하면서, 항상 ‘그들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만났는가’, 즉 타자와의 조우라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한 일본인 처’와 ‘북송 일본인 처’가 재현 영역에서 어떻게 맞물리거나 위계화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즉, 한일국교정상화 시기 (마치 흐린 점을 찍듯이) 가시화되었던 일본인 아내들의 형상(박연희의 「피」, 다우치 치즈코/윤학자, 나카마쓰 가즈의 이야기)은 한때 ‘잠행’하다가, 1970년

대 중반 갑자기 일본의 ‘일본인처 자유왕래’ 운동과 함께 “북송 일본인 아내들의 압도적인 비중이 가리워지거나 혹은 동일한 프레임 속에 활용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존재가 포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한국사회에서 이와 같은 ‘북송 일본인 처’의 문제가 포착되었던 사례가 탈냉전 이후 한차례 더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일본인 처들의 ‘자유왕래’가 실현되지 못하고, 2000년대 초에 탈북의 형태로만 일본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탈북으로 일본에 ‘귀국’하게 된 일본인 아내의 사연은 일본에서 또 다시 ‘자유왕래’ 운동에(더 직접적으로는 납북일본인 송환운동에) 불을 붙이는 한편, 한국사회에서는 70년대 맥락에서와는 달리, 한국이 체제경쟁과 경제성장 모두에서 북한에 대한 승리를 확인하는 매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일본인 처가 ‘탈북자’에 대한 관심 속에서 가시화되었던 2000년대 초반, 한국에 남은 일본인 처는 어떤 방식으로 이와 얽혔는지(혹은 무시되었는지, 혹은 별도의 맥락 속에서 다뤄졌는지...)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경주 나자레원이 (희미하게나마) 포착되었던 시점이 있다면, 그것이 북송 일본인 처의 문제와 어떤 식으로든 얽혔을 가능성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일까요?

2. 1960년대 중반 한국사회에서 일본인 아내에 대한 중요한 프레임 중 하나로, “한국 고아에 대한 일본인 아내들의 돌봄과 헌신”에 주목하고, 이를 인정투쟁이라는 사회적 승인의 드라마 속에서 읽고자 하시는 시도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의 ‘속죄의식’과 ‘연대의식’이 ‘인정투쟁’과 정확히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녀들의 헌신 행위에는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에 대한 권리주장을 쉽사리 내세우지 못하는 ‘낙인찍힌 자들’의 “속죄 의식”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국가와 같은 사랑/권리로부터의 부정에 기인하여 또 다른 부정당한 자(고아)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 기반한 “연대”라는 형태의 인정 추구가 있었다는 것으로 읽었는데요. ‘속죄의식’과 ‘연대의식’은 모두 일반적인 승인의 드라마로서의 인정투쟁과 일견 달라 보이지만, 그 역시도 또 다른 형태의 인정 추구의 방식이라는 것일까요?

한편, 오랫동안 나자레원 할머니들을 찍어온, 강제징용 피해자를 아버지로 둔 사진작가에 관한 기사<sup>1)</sup>에서도, 재한 일본인 처의 한국 고아 입양, 무의탁 노인이나 감옥 위문, 봉사활동 같은 한국에서의 ‘돌봄과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이를 “죄책감의 감정을 치우려고 노력했던” 행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사회에서 그녀들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시각을 이루고 있는 듯합니다. 일본인 아내들이 한국사회의 저변에서 보여주었던 돌봄과 헌신(혹은 과잉대속?), 그리고 일본 귀국후 보여주었던 적극적인 항의, 그 사이에서 보여지는 서로 다른 모습의 연대, 서로 다른 모습의 인정투쟁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좀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위에 언급한 BBC 코리아 기사에 따르면, 나자레원을 찍어온 한국인 사진작가는 한국

---

1) <광복절: 강제징용 피해자 아들이 기록한 '재한일본인 처'>, BBC NEWS 코리아, 2019. 8. 15. (<https://www.bbc.com/korean/features-49349623>)

과 일본에서 전시회를 기획해왔지만 여러 차례 거절당했다고 하고, (특히 한국인들로부터) “아니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도 계시는데 왜 일본 할머니들 사진을 전시해”라는 말을 듣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북송 일본인 처’와 ‘재한 일본인 처’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귀국’사업이 한창이었던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든, 이후 아니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시야에 둔 일본의 정치권 또는 시민사회에서든, 북송 일본인 처가 특정 담론의 중심에 놓였던 사례가 분명 있었던 것과 달리, 재한 일본인 처가 중심에 놓였던 담론은 한 차례도, 어떤 집단에 의해서도 없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위의 사진작가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제국주의/식민주의의 ‘피해자’ 이니셔티브라는 문제와도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아직 미완인 결론이지만 ‘위안부 vs 일본인 처’라는 구도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대강의 구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후 일본의 여성노동과 사회적 인식- 다니노 세쓰(谷野 せつ)의 기록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예지숙(숙명여대)

본 발표문에서 김경옥 선생님은 다니노 세쓰의 기록을 중심으로 전후 일본 여성노동의 상황과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2장에서는 여성노동에 영향을 끼친 요인이자 배경으로 첫째로는 부인참정권, 직업과 교육의 균등, 노동기본법 등 노동정책 등의 전후 개혁을, 두 번째로는 패전 후와 한국전쟁특수 등 여성고용을 둘러싼 경제상황의 변화와 여성고용의 특성을 들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에서는 다니노의 기록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의 실태를 조망하고 사회적 인식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서 점령기의 법적, 제도적, 사회적 변화가 여성노동에 미친 영향과 한계를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식민지기 사회사업/자선과 여성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토론자는 발표문을 통해 일본 여성노동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한국 근현대 여성노동자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일본 현대사에 캄캄한 토론자의 한계를 전제하면서 몇 가지 궁금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글은 다니노의 기록을 기본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물과 자료의 위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니노의 행적에 대한 서술(1926년에 내무성에 들어와 잔뼈가 굵은 전전의 유일한 여성감독관)에 더하여 전후 여성노동 담론의 주요한 발화자들은 누구였고(예컨대 노동운동, 여성운동가, 노동 관료, 미국 측)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제시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전반적인 발표문의 구도를 보면 전후 외부로부터 개혁과 내부적인 한계 사이에서 여성노동자의 지위가 정해진 것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노동자는 노동기본법이 보장한 권리조차 활용하지 못하고 주변화 되어 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즉 외부로부터 개혁이 강제되었으나 내부적 조건과 여성 역량의 부족으로, 체제 개혁이 이루어진 전후 10년의 기간을 경유하면서 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의 그림자로 주변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 조건이란 여성을 가정의 영역에 본질화 하려는 오랜 관행과 사회의 인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서술을 보면 다니노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인식에 대한 다니노의 설명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글에서 주로 살피려는 것이 여성노동 관료인 다니노의 인식인지, 당대 사회의 인식인지, 또 양자를 분리하여 다루면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3. 다음으로 다니노가 여성노동자의 주변화를 그 역량의 한계에서 찾는 듯한 서술이 곳

곳에 보입니다. 전전(戰前)에도 다니노는 여성 노동자의 조직 역량을 그리 높게 보지 않았으며 이러한 인식은 전후에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전에는 공장법에도 불구하고, 전후에는 노동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전전에는 법이 닿지 않는 영역(가내노동, ??인 이하의 사업장)이나 법제도가 해결하는 못하는 곳에 대한 처방으로 사회사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sup>1)</sup> 한 때 사회사업을 지망했던 내무성 관료의 시각과 입장이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닐지 등 다니노의 문제 인식도 다소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후에 여성노동 문제와 사회사업을 어떻게 연관 짓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사회적 한계, 관행’이라는 평가에 더하여 당대 사회의 역동을 살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문을 통해서 전후 신헌법 체제 하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변동이 일어났으며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진출과 조직화도 상당히 진척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대에 나타난 여성노동자를 ‘보호’ 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기고 가정적 존재로 본 질화 한 ‘사회적 인식’은 외부로부터 충격에 대한 또 여성의 사회적 · 정치적 진출에 대한 반발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경계를 넘나드는 여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한쪽으로 썩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들과 선을 넘는 여성들의 모습을 살짝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1) 김경옥, 「일본의 근대화와 여성노동자 ‘보호’다니노 세쓰(谷野世つ)의 기록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56, 2022

## 「납북귀환어부 가족에게 씌워진 굴레와 긴 헤어내기」에 대한 토론문

이준희(연세대)

이 글은 납북귀환어부 당사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분단과 한국현대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논의가 대체로 당사자를 중심으로 논의된 기왕의 서사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서사는 민중사, 여성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저자도 밝히고 있듯이 한국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여성에 대한 충분한 존중이 없었음을 감안한다면(2쪽) 이 글은 여성의 관점에서 분단과 경계의 지점을 새로운 관점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보충했으면 하는 부분을 제안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 1. 지역적 특수성

이 글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지역은 강원도 동해안 일대의 어부들이다. 납북귀환어부는 서해와 동해에 넓게 분포하고 있고 시대별, 지역별 차이가 있다. 사실 NLL의 경계가 모호한 서해에서<sup>1)</sup> 어부들의 납북이 동해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은 표1, 표2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38선과 휴전선, NLL 등 해방과 전쟁 등으로 모호해진 경계가 만들어진 산물이기도 하다. 굳이 서해와 동해를 구분하자면 것은 아니지만 이 지역들에 대한 특수성이 설명되어야 한다. 서해는 해안선 최전방, 동해도 해안선 최전방이면서도 수복지구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김종군에<sup>2)</sup> 의해 속초를 중심으로 논의된 바 있다. 국가(정부)가 수복지구 주민(원주민, 잔재 공산주의자)<sup>3)</sup>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생계를 꾸려가는 어부로서가 아닌 ‘간첩’의 의심을 받고 있는 존재 또는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기본적인 설명이 보완된다면 국가폭력의 연원, 간첩 혐의에 대한 역사적 맥락이 보완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KLO부대, 남북한 간첩의 특징)

### 2. 한일협정과 어부의 실상

납북귀환어부들의 어로 활동이 모호한 경계선에서 촉발했다고 하지만 1960년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1965년 한일협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sup>4)</sup> 한일협정 이후 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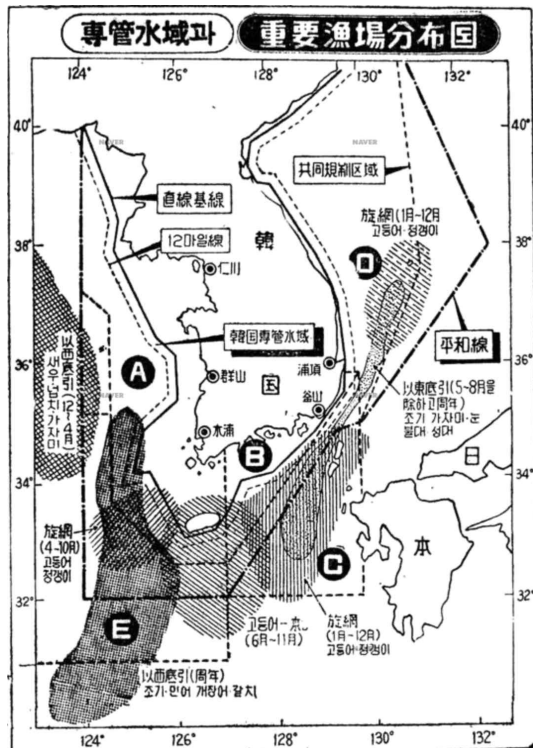
1) 예대열, 「북한의 ‘서해5도 수역’ 인식 변화와 평화 정착의 가능성」, 『동북아법연구』 vol. 16, No. 3, 2022; 「서해 5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 -관할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4, 2022.

2) 김종군, 「분단체제 속 국가폭력과 분단 트라우마의 흔적- 속초지역의 사례」, 『통일인문학』, 74,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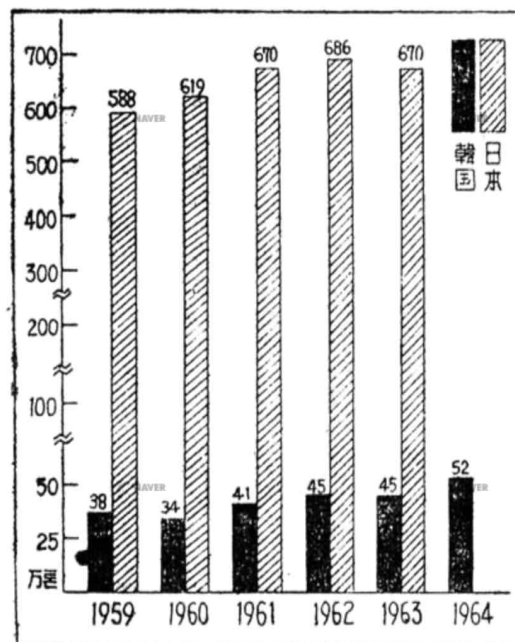
3) 김종군, 위의 글, 19쪽.

4) 「水産關係者 座談會 漁業漁場 韓·日修交후—어떻게 變했나」, 『경향신문』, 1966. 1. 10. 2쪽 그림 참조; 「남조선강원도에만도 5만 7천여명의 어민들이 절량,《어장에서는 일본배들이 독판》치고 있다」, 『평양신문』, 1967. 10. 8.

어업협정이 체결되면서 일본 어선과 무한경쟁에 내몰린 한국 어민들은 낙후한 어선과 장비로 경쟁에서 버텨낼 수 없었다. 결국 한일어업협정 이후 일본 어선과의 경쟁은 한국 어민들이 북으로 올라갈 수 없는 조건을 형성했다. 북쪽은 경계와 동남쪽에 형성된 모호한 수역에 대한 경계에서 어민들의 선택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어민들의 조업 조건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이 투영되어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일협정의 성격과 동해안 어민들과의 관계, 남북귀환어부들에 대한 대응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남북귀환어부들이 가지고 있던 ‘경계’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圖表로比較한 韓·日年間漁獲量



### 3. 왜 돌려보냈나?

남북귀환어부들은 북한에 억류당한 이후 귀환하였다. 귀환 이후 이들의 삶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국가에 의해 개인, 가정이 파괴당한채로 평생을 살아야만 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의 경험, 북한에서는 왜 돌려보냈나?에 대한 지점이 적절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의 경험<sup>5)</sup> 이들의 간첩혐의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5) “공화국정부와 북반부인민들은 남반부어민들을 뜨거운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환대하였으며 아무런 생활상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의복,신발은 물론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고 극진히 돌보아주었다. 남반부어민들은 그동안 평양시를 비롯하여 각지의 공장,기업소들과 농촌,교육,문화,보건기관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가는곳마다에서 북반부인민들이 사회주의조국의 융성발전과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의 자주,자립,자위의 로선을 받들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달성하고있는 거대한 성과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모습을 보고 크게 감탄하



한편으로는 북한 정부는 왜 돌려보냈는가?에 대한 부분도 설명 되어야 할 것이다. ‘돌아온’ 어부들을 옥죄는 혐의가 간첩<sup>6)</sup>이라는 점은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해방 이후~1970년대 초까지 남북한의 경제적 지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납북귀환어부의 귀환은 북한 정부의 자신감일 수도, 돌아온 이들을 의심하는 한국정부의 자격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

였으며 더욱 큰 힘을 얻었다. 특히 그들은 자기들이 체류하고있는 짧은기간에나마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비롯한 도시와 농촌들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공화국 북반부령역에 들어왔던 남조선어민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냄과 관련하여」, 『평양신문』, 1968. 2. 28;

- 6) 남북한 모두 어민들을 간첩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동해의 우리측 령해에 불법침입하였다가 구속된 남조선어선들속에 잠입하였던 적간첩들과 적들에게 리용당했던 선원들 원쑤들의 범죄적행책을 폭로」, 『평양신문』, 1967. 11. 11.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